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1호



2018. 7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1호

2018. 7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 차

##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 I 디지털경제의 소득세 과세 관련 국제기구 논의

- 1. 논의 배경 ..... 1
- 2. 국제기구 논의 및 입법 동향 ..... 2
  - 가. 디지털경제의 조세 쟁점 ..... 2
  - 나.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동향 ..... 3
- 3. 요약 ..... 9

### II Taxing Wages 2018

- 1. 서론 ..... 10
- 2.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 12
  - 가. 2017년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 현황 ..... 12
  - 나. 2017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20
- 3. 요약 ..... 31

##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 I 미국/캐나다

- 1. 미국 ..... 35
  - 가. 해외 유보소득의 일회성 과세(transition tax)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35

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안 승인	37
다. 특정국가보안업체의 국가별보고서 작성 지침 발표	38
라. 혼합 세율 적용 지침 발표	40
마. 일회성 전환세(transition tax) 미납부자 가산세 면제 발표	41
바. 중국 수입품에 25% 세율의 추가 관세 부과안 발표	42
2. 캐나다	44
가. 대마초 과세 및 세수배분 관련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 발표	44
나. 2018년 예산안 발표	45
다. 디지털상품 과세 도입 권고	49

## II

### 유럽

1. 그리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의회 통과	51
2. 네덜란드	53
가.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패키지 발표	53
나. 연결납세제도 적용 부인 거래 관련 법안 발표	55
3. 노르웨이 - 2018년 수정 예산안 발의	56
4. 덴마크	58
가.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58
나. 법인세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	59
5. 룩셈부르크 - 2018 세법개정안 발효	61
가. 법인세	61
나. 개인소득세	62
6. 벨기에	63
가.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 최종 승인	63
나. 증권계좌세(securities account tax) 도입안 의회 승인	66
다. 공정세 과세 위헌 판결 및 폐지	67
라. 선납세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납부요율 인상	68

# 목 차

7. 스웨덴 .....	70
가.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 발행 .....	70
나. 항공세 과세 예정 .....	71
다. 이자비용 및 법인세율 관련 세법개정안 발의 .....	72
8. 스페인 .....	73
가. 직·간접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 확정 .....	73
나. 2018년 예산안 발의 .....	76
9. 아일랜드 .....	78
가. 애플 조세혜택금액 환수절차 진행 .....	78
나. 설탕세 과세 승인 .....	79
10. 아이슬란드 -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시행시기 연기 .....	80
11. 영국 .....	81
가. 세무대리인 준수 의무에 대한 지침 발행 .....	81
나.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과세당국 지침 발행 .....	83
다. 해외 이익분할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정책안 발표 .....	85
라. 2016/17 조세격차(Tax Gap) 보고서 발간 .....	87
12. 오스트리아 .....	90
가. 부가가치세 일부 경감 및 유자녀 세액공제 법안 발의 .....	90
나. 2018 세법개정안(Annual Tax Act 2018) 발의 .....	92
13. 이탈리아 - 2018 예산법 발표 .....	94
가. 개인소득세 .....	94
나. 법인세 .....	95
다. 부가가치세 .....	96
라. 기타 세목 .....	97
14. 프랑스 .....	98
가. 홍콩과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체결 .....	98
나. 조세 포탈 방지를 위한 법안 발표 .....	98

## CONTENTS

15. 핀란드 .....	99
가. 납세의무 이행 절차 법규 개정 .....	99
나.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신규 지침 발행 .....	101
다. 디지털 고정사업장 관련 법령 발의 .....	102
16. EU .....	103
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한 조세피난처 지정 철회 .....	103
나.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 리스트 업데이트 .....	105
다.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EU 지침 제안서 발표 .....	105
라. “2018 EU의 조세 추이” 보고서 발간 .....	106
마. 강제보고의무 관련 지침 채택 .....	108
17. OECD .....	110
가. Action 14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	110
나. 2017 OECD 모델조세조약 공개 .....	111
다. BEPS프로젝트 Action 15 다자간협약 추가 서명 .....	113
라. BEPS프로젝트 국가별보고서 이행 관련 추가 지침 발표 .....	114
마.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경과보고서 업데이트 .....	115
바.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결과보고서 발표 .....	116
사. 공통보고기준(CRS) 관련 모델 강제보고규정 발표 .....	117
아. BEPS프로젝트 Action 1 관련 중간보고서 발표 .....	118
자. BEPS프로젝트 Action 7 관련 추가 지침 발표 .....	121
차. BEPS프로젝트 Action 15 다자협약 발효 .....	121
카. Taxing Wages 2018 보고서 출간 .....	122
타.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검토결과 발표 .....	124
파.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 BEPS프로젝트 추가 참여 .....	125
하. 국가별보고서 관련 제1차 상호검토 결과 발표 .....	125

# 목 차

## III

### 아시아/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	127
가. 소액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발표 .....	127
나. 가상화폐 세무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	128
2. 대만 - 세법개정안 확정 .....	129
3. 싱가포르 .....	131
가. 2018년 예산안 발표 .....	131
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고시 .....	132
4. 인도 .....	133
가. 도메인 등록비용 로열티소득으로 판결 .....	133
나. 「2018년 재정법」 승인 .....	134
다. 균등세 세수입 발표 .....	136
5. 인도네시아 - 과소자본세제 규정 도입 .....	137
6. 일본 .....	137
가. 「2018년 세제개정대강」 각의결정 .....	137
나.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 간소화 지침 발표 .....	144
7. 중국 .....	145
가.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 .....	145
나. 석유제품 소비세칙 개정 .....	146
다. 조세조약에 대한 해설 지침 발표 .....	146
라. 2018년 조세부문 정책방향 .....	148
마.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 시행 .....	150
바. 보복관세 대상 품목 확정 및 부과 예정일 발표 .....	151
8. 호주 .....	153
가. 중소기업 자본이득세 감면에 대한 개정 초안 발표 .....	153
나. 2018/19년의 예산안 발표 .....	154

## CONTENTS

9. 홍콩 .....	159
가. 2018/19 예산안 발표 .....	159
나. 법인세율 인하 .....	161

## IV

### 기타

1. 이스라엘 -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지침 마련 .....	163
2. 아시아·태평양 국가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 .....	164

# 표 목 차

## 제1부

〈표 II-1〉 조세격차 산식(Tax Wedge) .....	11
〈표 II-2〉 2017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	13
〈표 II-3〉 2017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	15
〈표 II-4〉 2017년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한국 vs. OECD 평균 (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	17
〈표 II-5〉 2017년 OECD 회원국의 개인평균세율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	18
〈표 II-6〉 2017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22
〈표 II-7〉 OECD 회원국의 독신·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 (100% 임금수준, 2000~2017년) .....	27
〈표 II-8〉 OECD 회원국 기혼·2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년) .....	28
〈표 II-9〉 OECD 회원국 기혼·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년) .....	30

## 제2부

〈표 I-1〉 혼합세율 적용 예시 .....	40
〈표 I-2〉 캐나다의 개인용 대마초 과세방안 .....	49
〈표 II-1〉 맥주 물품세율 개정안 .....	58
〈표 II-2〉 근로소득 소득공제 비율 및 공제가능 한도 .....	61
〈표 II-3〉 현행 벨기에의 기업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	65
〈표 II-4〉 선납시점별 공제율 .....	69

## CONTENTS

〈표 II-5〉 현행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액 .....	77
〈표 II-6〉 개정안의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액 .....	77
〈표 II-7〉 설당세율 .....	80
〈표 II-8〉 조세격차 연도별 추이 .....	88
〈표 II-9〉 주요 세목별 조세격차 규모 및 조세채무 대비 비율 .....	89
〈표 II-10〉 주요 귀속주체별 조세격차 규모 .....	89
〈표 II-11〉 EU 회원국의 GDP 대비 총조세부담 .....	107
〈표 II-12〉 EU 회원국의 주요 세목별 세수 비중 추이(주요 세목의 상대적 비중) .....	108
〈표 II-13〉 EU 회원국의 주요 세목별 최고세율 추이(주요 세목의 상대적 비중) .....	108
〈표 III-1〉 일본의 급여소득공제 개정 .....	138
〈표 III-2〉 일본의 기초공제 개정 .....	139
〈표 III-3〉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 개정 .....	140
〈표 III-4〉 일본의 궤련담배 세율 개정 .....	143
〈표 III-5〉 호주의 저소득 및 중산층 세액공제 .....	155
〈표 III-6〉 호주의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	155
〈표 III-7〉 호주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개정안(2천만호주달러 초과 기업) .....	157
〈표 III-8〉 홍콩의 개인소득세율 .....	160

# 그림목차

## 제1부

[그림 II-1] 2017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	16
[그림 II-2] 2017년 OECD 회원국의 개인평균세율 현황 (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총임금소득 대비 %) .....	19
[그림 II-3] 우리나라와 OECD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2017년) .....	23
[그림 II-4] 주요국의 독신·무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2017년) .....	24
[그림 II-5] 주요국의 기혼·무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2017년) .....	25
[그림 II-6] 주요국의 기혼·2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2017년) .....	25
[그림 II-7]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독신·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 (100% 임금수준, 2000~2017년) .....	28
[그림 II-8] OECD와 우리나라의 기혼·2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년) .....	29
[그림 II-9]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혼·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년)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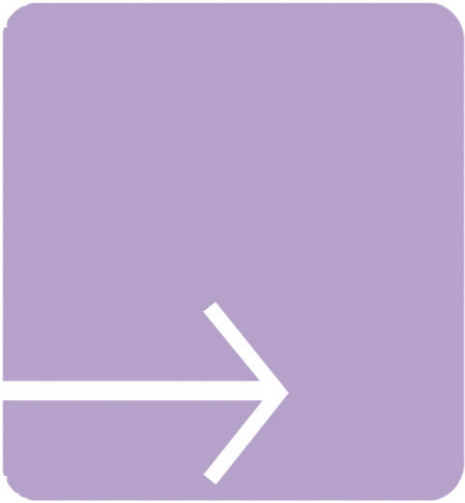
## 제2부

[그림 I-1] 수동자산 보유금액별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 기준금액 .....	46
[그림 I-2] 캐나다의 근로장려금 인상안(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신고자 기준) .....	47
[그림 I-3] 캐나다의 근로장려금 인상안(가장, 부부합산신고자 기준) .....	48





#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 I 디지털경제의 소득세 과세 관련 국제기구 논의

### 1 논의 배경

- 디지털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으나, 현행 국제조세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사업활동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디지털거래는 전통적인 사업활동과는 달리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원천지국에서 물리적 장소 없이도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물리적 장소인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현행 국제조세제도하에서는 법인세 과세가 어려움
- 이러한 디지털경제에서 조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1998년<sup>1)</sup>부터 2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과세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 OECD/G20 BEPS 방지 프로젝트("BEPS프로젝트")의 15개 실행과제 중 하나로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sup>2)</sup>"을 논의하면서 기존 고정사업장에 근거한 과세방법에서 벗어난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8년 3월 16일 발표한 OECD의 중간 보고서도 뚜렷한 결론은 제시하지 않음
- 유럽연합(EU)과 일부 국가는 OECD보다 디지털상거래 기업의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EU를 포함한 이들 국가의 입법 논의와 입법 사례를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함

1) OECD는 1998년 디지털경제가 기존 세법에 따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Challenges of Electronic Commerce"를 주제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과 소득세 측면에서는 기존 과세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함

2)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 2 국제기구 논의 및 입법 동향

### 가. 디지털경제의 조세 쟁점

- 디지털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디지털상거래 다국적기업이 국내기업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세금을 적게 부담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된 세목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개인 및 법인 소득세임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소비된 장소에서 과세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두고 적절한 과세 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2015년 OECD<sup>3)</sup>가 제안한 과세방안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도입하면서 주요 디지털상거래에 과세하기 시작함

  - ▶ 특히 문제가 되었던 해외사업자와 국내 개인소비자 간 B2C(Business to Customer) 거래 중 일부는 과세할 수 있었음<sup>4)</sup>
- 소득세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 고정된 사업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법의 과세 원칙부터 검토해야 하며 과세 원칙이 마련되더라도 여러 국가의 합의가 필요하여, 부가가치세보다 소득세 관련 대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 현행 조세체계<sup>5)</sup> 하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기업이 매출을 위한 공장, 사무소, 판매점 등 해당 국가에 물리적으로 고정된 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만 과세할 수 있음
  - ▶ 디지털상거래 기업은 특정 국가에 물리적으로 고정된 사업 장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활동을 할 수 있어 현행 규정으로 이러한 디지털상거래 기업의 소득을 과세하지 못함

3) OECD(2015)

4) 우리나라도 2014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여 디지털상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외국사업자가 직접 우리나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우리나라가 B2C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OECD 권고와 유사하나 과세대상을 일부 디지털 상품만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실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세대상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는 있음

5) 각 국가의 법인세 규정과 양자 간 및 다자 간 조세협약을 의미함

- 디지털상거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데이터가 존재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등 상당 수준의 디지털 실재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일부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 OECD는 2015년 디지털상거래 소득의 과세를 위해 과세 연계점(nexus)을 고정사업장에서 매출, 디지털, 이용자와 기타 요인으로 변경하는 과세방안을 검토하였고<sup>6)</sup>, 2020년 뚜렷한 과세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검토작업을 진행 중임

## 나.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동향

### 1) OECD

#### 가) 기존 논의

- OECD는 2015년 10월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최종 보고서(“OECD 보고서”<sup>7)</sup>)를 통해 디지털경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방안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함
- 2015년 보고서는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징수모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대한 고정사업장 예외규정 수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 2015년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OECD는 디지털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하여 2017년 부가가치세지침<sup>8)</sup> 개정 및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sup>9)</sup> 발표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수행한 바 있음
  - ▶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과 관련해서는 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적·보조적 활동 등 고정사업장 적용 예외 규정을 수정함

6) OECD(2015) paragraph 276

7) OECD(2015)

8)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OECD Publishing, Paris, 2017.

9) OECD,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17.

나) 최근 소득세 과세방안 논의: 2018년 Action 1 중간보고서

-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2015년 보고서는 2020년까지 국제 차원의 합의된 접근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OECD는 2018년 3월 16일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sup>10)</sup>를 발표함

  - ▶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은 BEPS프로젝트의 모든 참여국(BEPS Inclusive Framework)의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관련하여 2019년에 경과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
- 이번 2018년 중간보고서의 핵심은 개별 국가가 도입한 제도를 소개하고 한시적 과세방안 마련 시 고려할 과세원칙을 소개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 ▶ 중간보고서는 디지털경제의 가치창출과 사업모델의 특징과 조세 쟁점을 논의하고, 디지털경제에 대한 여러 국가의 법인세 과세방안의 개발 현황, 최종 합의방안 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과 후속과제 등을 소개함
- OECD BEPS Action 1 중간보고서는 여러 국가가 취하고 있는 관련 대응 정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제도를 소개함<sup>11)</sup>

  - ▶ 네 가지 과세방안은 고정사업장 기준 수정(alternative applications of the PE threshold), 원천징수 적용 강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매출액 기준 과세(turnover tax), 대규모 다국적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안임
- 첫째, 고정사업장 기준 수정은 고정된 사업장소와 같은 물리적 실체가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내국세법과 조세조약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변경한 경우임

  - ▶ 이스라엘, 인도,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디지털사업장(digital presence)이나 서비스 고정사업장(service PE)의 개념을 도입함
- 둘째, 원천징수는 특정 디지털거래에서 발생한 배당, 이자, 사용료와 같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임

10)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8;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에서 재인용

11) OECD(2018), pp. 133~159.

- ▶ 그리스, 영국, 태국 등의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함
- 셋째, 매출액 기준 과세는 특정 디지털상거래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방법으로 OECD BEPS Action 1 보고서 발표 직후 EU가 제시한 과세방안 중 하나도 매출액 기준 과세였음
  - ▶ 이미 인도, 이탈리아가 유사한 과세제도를 시행 중임
- 넷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제도를 마련한 국가는 영국과 호주이며, 이 두 국가 모두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한 다국적기업에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를 부과함
  - ▶ 다만, 우회이익세는 디지털상거래 소득의 과세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니며, 다른 사업 유형에도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디지털상거래 소득의 과세를 위한 목적에서 우회이익세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OECD는 2020년 국제적 합의에 따른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전 한시적으로 디지털 상거래 기업이 국내에서 얻는 소득을 과세하기 원하는 국가가 고려하여야 하는 여섯 가지 정책 설계 원칙을 제시함<sup>12)</sup>
  - ▶ 조세조약, WTO 규정과 EU 지침 등 기존의 국제조세규범에 부합할 것
  - ▶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추후 국제차원에서 합의될 제도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 ▶ 디지털 비즈니스 중 다수의 국가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논의 중인 사업모델로 온라인 광고나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중개서비스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적용할 것
  - ▶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할 때 지나친 조세부과를 지양할 것
  - ▶ 적용기준(threshold)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에 과도한 납세협력부담을 주지 않을 것
  - ▶ 납세행정비용 및 제도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것
- OECD는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2019년 경과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

12) OECD가 디지털경제 과세를 위한 각 국가의 독자적이고 한시적 과세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음

- ▶ 2020년 최종보고서에는 과세 연계점(nexus)과 소득배분(profit allocation)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이 제시될 것임
  - 고정사업장의 물리적 실체가 아닌 이용자, 디지털 요인이나 매출 등의 중요한 디지털 실질을 과세 연계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과세 기준이 되는 요인을 과세 연계점이라 함

## 2) EU

- EU는 디지털경제 관련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으며, 특히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해서도 EU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함
  - ▶ EU는 2015년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전략(Strategy for the EU Digital Single Market)<sup>13)</sup>”을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행과제(Action Plan on VAT)<sup>14)</sup>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 ▶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사업자가 개인에게 디지털재화 공급 시 B2C 과세를 위해 외국 사업자 등록제도를 최초 제안하고 도입한 것도 EU였음
- 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EU에 균등세(equalization tax)를 도입하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시적 과세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함<sup>15)</sup>
  - ▶ 회의에 참석한 17개 국가 중 3개국 재무장관은 균등세 부과에 회의적이었으며, 나머지 국가의 재무장관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OECD나 G20에서 보다 근본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 OECD가 디지털경제 소득세 관련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3월 21일 디지털경제에 대한 EU 차원의 법인세 부과를 위해 근본적 과세방안과 한시적인 과세방안에 관한 두 개의 EU 지침 제안서를 공개함<sup>16)</sup>

13)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shaping-digital-single-market>, 검색일자: 2018. 5. 9.)

14)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action-plan-vat\\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action-plan-vat_en), 검색일자: 2018. 5. 9.)

15) TAX NOTES INTERNATIONAL, “Estonian Presidency Warns Against ‘Quick Fixes’ to Tax Digital Economy, 2017. 9. 11, p. 1057.

- ▶ EU는 거대 디지털상거래 기업이 다른 업종의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행 조세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정한 과세(fair tax)를 위한 새로운 과세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힘
  - ▶ 두 제안서는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며, EU 위원회에서 채택될 경우 EU 회원국은 2019년 말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종료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다만, 아일랜드 등을 중심으로 EU가 OECD 논의와 별도로 디지털상거래 기업이 EU 회원국에서 얻는 소득이나 일부 디지털거래에 과세하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국가가 존재하여 실제 입법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첫 제안서는 “디지털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관련 지침으로 EU가 제시하는 근본적 과세방안이며,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만족한 경우 디지털사업장(또는 가상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제안함
- ▶ 특정 요건이란 특정 EU 회원국에서의 연간 매출액이 700만유로를 초과, 특정 EU 회원국에서 해당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가 연간 10만명을 초과하거나 특정 EU 회원에서 디지털 기업이 체결하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사업계약이 연간 3천건을 초과한 경우임
  - ▶ EU 회원국 사이의 과세배분 기준을 온라인 광고의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한 횟수,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에 참여한 사용자 수 등 사용 횟수나 방문 횟수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디지털사업장” 관련 지침은 EU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소득세 과세방안이나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 합의에 의한 소득세 과세방식 결정이 2020년에 계획되어 있어 그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과세방안이 필요함
- ▶ 현재 일반 기업의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은 23.2%인 반면, 디지털기업의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은 9.5%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sup>17)</sup> 국제적 합의를 통한 조세 조약 개정 등 디지털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과세방안 이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16)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fair-taxation-digital-economy\\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fair-taxation-digital-economy_en), 검색일자: 2018. 5. 9.);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에서 재인용

17) European Commission,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March, 2018, p. 4.

것을 고려하여, EU는 EU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한시적 법인세 과세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함<sup>18)</sup>

■ 이에 따라, 두 번째 제안서는 특정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법인세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제안함

- ▶ 디지털서비스세란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온라인 광고, 유저 데이터 판매, P2P 플랫폼 서비스 등)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법인세로, 본 제안서는 과세대상 기업과 과세대상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 ▶ 과세대상 디지털서비스로 ① 사용자(user) 데이터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와 ② 사용자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P2P 플랫폼) 등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안함
- ▶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고 EU 내 매출액이 연간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 ▶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시 EU 회원국의 추가적인 법인세 수입을 연간 50억유로로 추정함

■ EU는 디지털서비스세는 EU 또는 WTO의 무차별(non-discrimination) 조항을 위배<sup>19)</sup>하지 않으며, 이중과세 문제도 소득공제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임<sup>20)</sup>

- ▶ 디지털서비스세는 EU 회원국 및 비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로 EU 및 WTO의 무차별조항을 위배하지 않음
- ▶ 디지털서비스세는 소득공제(비용 손금) 등의 형태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공제 형태는 각 나라에서 별도 규정할 수 있음

18)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factsheet\\_digital\\_taxation\\_21032018\\_en.pdf](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factsheet_digital_taxation_21032018_en.pdf), (검색일자: 2018. 5. 9.)

19) EU의 디지털서비스세와 다르게 인도의 균등세는 외국기업이 내국기업으로부터 받는 대가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내·외국인에 대한 WTO의 비차별대우 규정(non-discrimination)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비차별대우 규정에 위배될 위험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도입 예정인 디지털서비스세의 적용 대상에 디지털거래를 제공하는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내국법인도 포함하였음

20) European Commission([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8-2141\\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8-2141_en.htm), 검색일자: 2018. 5. 9.)

### 3 요약

- OECD가 2015년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EU와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상거래 소득세 과세에 대한 논의와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경제의 소득세 과세방안으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매출액 기준 과세(turnover tax)와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안적 기준 적용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 매출액 기반 과세제도를 도입한 국가로는 인도와 이탈리아 등이 있으며, EU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과세방안으로 관련 지침을 제안하여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하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 국가로는 이스라엘, 인도, 슬로바키아 등이 있으며, EU도 관련 지침을 제안하고 입법절차를 진행 중임
- 다만, 상기 두 가지 과세방안은 모두 기존 조세조약체계하에서는 그 적용이 어렵다는 점,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 조세조약 및 WTO 등 무역협정 상 무차별 조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 적용의 한계가 존재함

  - ▶ 매출액 기준 과세 중 EU 지침과 같이 법인세 형태로 과세하는 경우 기존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어 그 적용이 제한적이며, 인도와 같이 외국법인만을 대상으로 거래세 형태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와 무차별 조항 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고정사업장의 대안적 기준 적용방안 역시 관련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조항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OECD 차원에서의 디지털 고정사업장과 같은 과세 연계점(nexus)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2020년 최종 합의될 과세방안에 따라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II Taxing Wages 2018

### 1 서론

- OECD는 2018년 4월 26일 OECD 35개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8* 보고서를 출간함<sup>21)</sup>

  - ▶ 동 보고서는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써,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 및 임금소득 과세가 개별 가구의 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함
  -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산출 목적으로 근로자<sup>22)</sup>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와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정부보조금(cash benefit)과 더불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sup>23)</sup> 등을 모두 고려함
  
- 본 보고서에서는 *Taxing Wages 2018*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 구체적으로, 2017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개인 근로자의 조세격차(tax wedge) 및 조세격차 구성 비중과 개인평균세율(average personal tax rate) 현황을 정리함
  - ▶ 또한, 2017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가구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격차 현황 및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가구형태별 조세부담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본고에서는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주로 조세격차를 사용함

21)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ctp/tax-policy/taxing-wages-20725124.htm>, 검색일자: 2018. 5. 11.)

22) '성인 정규 근로자(adult full-time worker)'가 그 대상이며, 육체노동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등 비육체 노동근로자도 포함함

23)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 등 일부 국가의 통계에 포함됨

- ▶ 조세격차는 고용주의 노동사용비용(labour costs)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됨
- 즉, 조세격차는 고용주의 노동사용비용(labour costs)과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net take-home pay)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음

〈표 II-1〉 조세격차 산식(Tax Wedge)

$$Tax\ Wedge(\%) = \frac{T + SSC_{ee} - FCB + PT + SSC_{er}}{In + PT + SSC_{er}} \times 100$$

주: 상기 산식에 사용된 용어는 아래와 같음

- T(personal income tax): 근로자 부담 개인소득세
- SSC<sub>ee</sub>(social security borne by employee):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 SSC<sub>er</sub>(social security borne by employer):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 FCB(family cash benefits): 근로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 PT(payroll tax): 고용주 부담 지불급여세
- In(income): 근로자의 임금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5년 제1호, p. 4.

- 또한,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인평균세율을 이용하기도 함
  - ▶ 개인평균세율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총임금소득(gross wage earnings)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개인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계산함

## 2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 가. 2017년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 현황

#### 1) 조세격차

##### 가) 조세격차 현황

- 2017년 현재 OECD 회원국들의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조세격차는 35.9%로, 최대 53.7%(벨기에)에서 최소 7.0%(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 (〈표 II-2〉 참조)

  - ▶ 조세격차가 OECD 평균인 35.9%를 상회하는 국가는 총 21개국이며, OECD 평균보다 조세격차가 작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4개국임
- OECD 평균 조세격차가 전년대비 평균 0.13%p 감소한 가운데, 전년대비 조세격차가 증가한 국가는 18개국, 감소한 국가는 16개국이며, 칠레의 경우 조세격차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OECD 회원국들에서 조세격차가 감소한 주된 요인은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소(-0.17%p)였으며, 소득세는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0.04%p)한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2017년 조세격차는 22.6%로 전년대비 0.24%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임

  - ▶ 상승 원인은 전년대비 개인소득세(0.24%p)의 조세격차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조세격차는 변동이 없었음
  -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중 30위로 세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
  - ▶ 우리나라보다 낮은 조세격차를 보인 국가로는 이스라엘(22.1%), 스위스(21.8%), 멕시코(20.4%), 뉴질랜드(18.1%), 칠레(7.0%) 등 5개국이 있음

〈표 11-2〉 2017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단위: %)

국가	조세격차	전년대비 증감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sup>1)</sup>
벨기에	53.7	-0.24	-0.14	0.02	-0.12
독일	49.7	0.12	-0.02	0.07	0.07
이탈리아	47.7	-0.09	0.06	0.02	-0.17
프랑스	47.6	-0.44	0.19	0.15	-0.78
오스트리아	47.4	0.08	0.28	0.04	-0.24
헝가리	46.2	-2.10	0.47	0.58	-3.15
체코	43.4	0.36	0.36	0.00	0.00
슬로베니아	42.9	0.25	0.25	0.00	0.00
핀란드	42.9	-1.18	-0.69	0.54	-1.02
스웨덴	42.9	0.08	0.07	0.00	0.00
라트비아	42.9	0.29	0.30	0.00	0.00
슬로바키아	41.6	0.09	0.21	0.02	-0.15
포르투갈	41.4	-0.22	-0.22	0.00	0.00
그리스	40.8	0.31	0.03	0.15	0.13
스페인	39.3	-0.13	-0.13	0.00	0.00
에스토니아	39.0	-0.01	-0.01	0.00	0.00
터키	38.7	0.41	0.41	0.00	0.00
네덜란드	37.5	0.22	0.63	-0.49	0.07
룩셈부르크	36.7	-1.76	-1.31	-0.45	0.00
덴마크	36.3	-0.05	-0.05	0.00	-0.01
노르웨이	35.9	-0.31	-0.31	0.00	0.00
폴란드	35.6	0.05	0.05	0.00	0.00
아이슬란드	33.2	-0.74	-0.29	-0.01	-0.44
일본	32.6	0.11	0.04	0.03	0.05
미국	31.7	0.12	0.18	0.00	-0.06
영국	30.9	-0.01	-0.09	0.03	0.05
캐나다	30.9	-0.50	0.13	-0.21	-0.41
호주	28.6	0.06	0.06	0.00	0.00
아일랜드	27.2	0.24	0.24	0.00	0.00
한국	22.6	0.24	0.24	0.00	0.00
이스라엘	22.1	-0.23	-0.27	0.02	0.01
스위스	21.8	-0.03	-0.03	0.00	0.00
멕시코	20.4	0.34	0.41	0.01	-0.07
뉴질랜드	18.1	0.24	0.24	0.00	0.00
칠레	7.0	0.00	0.00	0.00	0.00
OECD 평균	35.9	-0.13	0.04	0.01	-0.18

주: 1) 지불급여세(payroll tax)가 있는 국가의 경우 지불급여세 포함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6.

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 조세격차 구성요소에는 개인소득세,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의 지불급여세 포함)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그 구성 비중에 차이를 보임(〈표 II-3〉 및 [그림 II-1] 참조)
- 2017년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총노동사용비용<sup>24)</sup>은 51,047미국달러이며, 노동사용비용 중 소득세 비중은 13.5%,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지불급여세 포함) 비중은 22.4%임

  - ▶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부담 비중은 평균 14.2%, 근로자 부담 비중은 평균 8.2%로 고용주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의 노동사용비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57,945미국달러이며(15위), 노동사용비용 대비 소득세 비중은 5.5%,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17.0%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임

  - ▶ 소득세의 경우 OECD 평균인 13.5% 보다 8.0%p 낮으며, 칠레(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음
  - ▶ 사회보장기여금의 근로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상대적 차이를 감안하면 근로자 부담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35개국 중 19위인 7.6%로 OECD 평균인 8.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평균인 14.2%보다 4.8%p 낮은 9.4%로, 35개국 중 28위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함
  - ▶ 사회보장기여금의 근로자 부담액(8.2%)과 고용주 부담액(14.2%)의 OECD 평균 차이는 6.0%p인 반면, 우리나라는 1.8%p로 사회보장기여금의 근로자 부담액과 고용주 부담액 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 구성요소별 OECD 회원국 내 순위는 모든 항목에 걸쳐 낮은 편임(〈표 II-4〉 참조)

  - ▶ 노동사용비용은 OECD 35개국 중 15위로, OECD 평균보다 6,898미국달러 높음

24) 구매력 기준 미국달러(US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로 표시

- ▶ 조세격차는 OECD 회원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OECD 평균보다 13.4%p 낮음
- ▶ 개인소득세는 칠레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34위로, OECD 평균보다 8.0%p 낮음

〈표 11-3〉 2017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독신가구 · 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국가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SSC	고용주SSC <sup>1)</sup>	노동사용비용 <sup>2)</sup>
독 일	49.7	16.0	17.4	16.3	75,896
스 위 스	21.8	10.0	5.9	5.9	75,245
벨 기 에	53.7	20.7	10.9	22.2	75,220
오 스트리아	47.4	11.2	14.0	22.2	73,996
룩셈부르크	36.7	14.9	11.0	10.8	73,707
네 덜 란 드	37.5	15.5	11.8	10.1	70,094
아이슬란드	33.2	26.5	0.3	6.4	68,021
프 랑 스	47.6	11.0	10.6	26.0	65,316
노 르 웨 이	35.9	17.2	7.3	11.5	63,733
스 웨 덴	42.9	13.7	5.3	23.9	62,631
일 본	32.6	6.9	12.5	13.2	60,989
영 국	30.9	12.6	8.5	9.8	60,213
핀 란 드	42.9	17.1	7.6	18.2	59,947
호 주	28.6	23.0	0.0	5.6	58,387
한 국	22.6	5.5	7.6	9.4	57,945
미 국	31.7	16.9	7.1	7.7	57,407
이 탈 리 아	47.7	16.5	7.2	24.0	56,980
덴 마 크	36.3	35.8	0.0	0.8	56,651
스 페 인	39.3	11.3	4.9	23.0	52,546
아 일 랜 드	27.2	13.9	3.6	9.7	49,941
캐 나 다	30.9	13.8	6.6	10.4	45,746
그 리 스	40.8	8.0	12.8	20.0	43,977
이 스 라 엘	22.1	9.2	7.6	5.3	41,409
뉴 질 랜 드	18.1	18.1	0.0	0.0	39,826
포 르 투 갈	41.4	13.3	8.9	19.2	38,224
체 코	43.4	9.8	8.2	25.4	36,898
슬로베니아	42.9	10.0	19.0	13.9	36,475
에스토니아	39.0	12.5	1.2	25.3	35,853
터 키	38.7	11.0	12.8	14.9	34,384
폴 란 드	35.6	6.2	15.3	14.1	32,384
헝 가 리	46.2	12.1	15.0	19.0	32,125
슬로바키아	41.6	7.7	10.2	23.6	30,752

〈표 II-3〉 의 계속

(단위: %, USD)

국가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SSC	고용주SSC <sup>1)</sup>	노동사용비용 <sup>2)</sup>
라 트 비 아	42.9	15.3	8.5	19.1	26,896
칠 레	7.0	0.0	7.0	0.0	22,616
멕 시 코	20.4	8.8	1.2	10.4	14,209
OECD 평균	35.9	13.5	8.2	14.2	51,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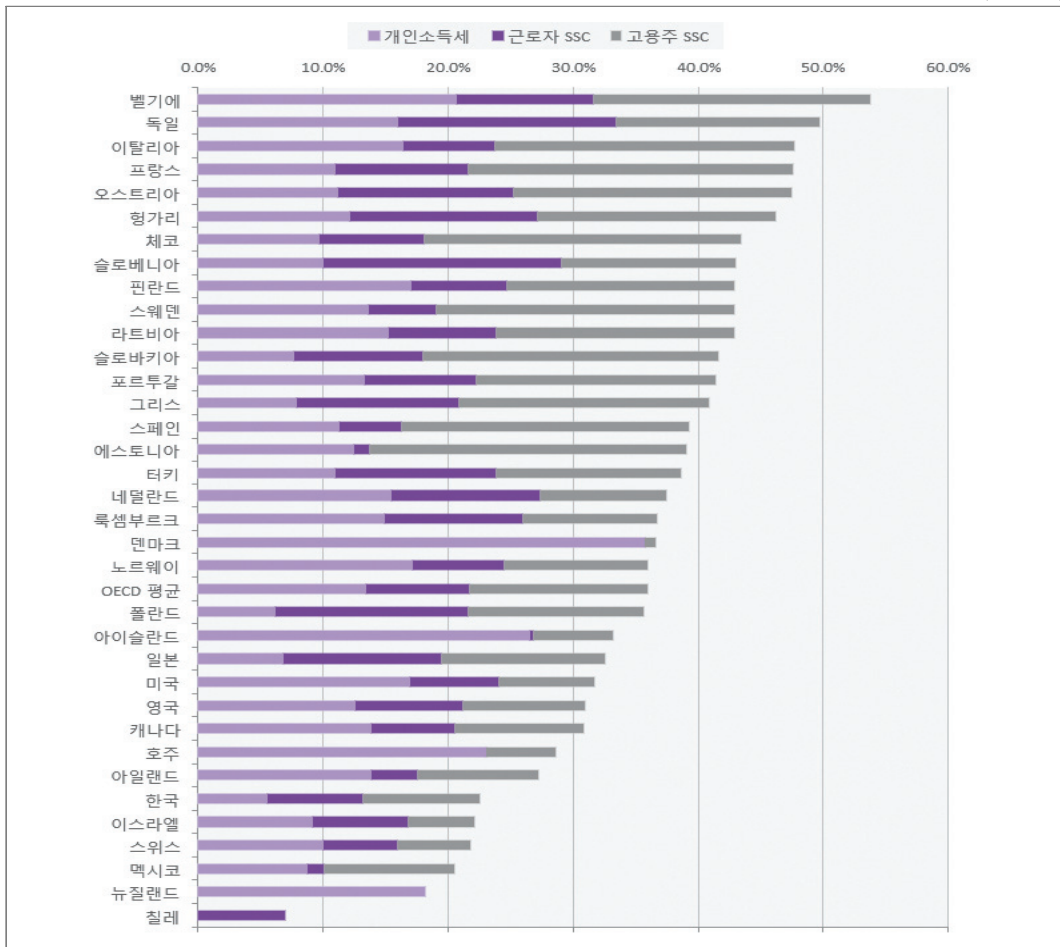
주: 1) 지불급여세 payroll taxes가 있는 국가의 경우 지불급여세 포함

2) 구매력 기준 미국달러(US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8.

[그림 II-1] 2017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독신가구 · 평균임금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9.

〈표 II-4〉 2017년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한국 vs. OECD 평균(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구분	조세격차	개인 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노동 사용비용
한국(A)	22.6	5.5	7.6	9.4	57,945
OECD 평균(B)	35.9	13.5	8.2	14.2	51,047
한국과 OECD 평균 격차(B-A)	13.4	8.0	0.6	4.8	-6,898
OECD 회원국 중 순위	30	34	19	27	15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개인평균세율

- 개인평균세율(personal average tax rates)은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가 근로자의 총임금소득(gross wage earnings)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 2017년 현재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총임금소득은 43,791미국달러이며, 개인평균세율은 25.5%로, 최고 40.5%(벨기에)에서부터 최저 7.0%(칠레)로 폭넓게 분포함(〈표 II-5〉 및 [그림 II-2] 참조)
- OECD 35개 회원국들 중 23개국에서 소득세 비중(평균 15.7%)이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중(평균 9.8%)보다 개인평균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독일, 일본, 그리스, 슬로베니아, 터키, 슬로바키아, 칠레 등 12개국에서는 소득세보다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남
  - ▶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체코, 이스라엘, 터키의 6개국에서는 개인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이 유사한 수준으로 3%p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의 총임금소득은 52,505미국달러<sup>25)</sup>로, OECD 평균보다 높은 14위를 기록한 가운데, 총임금소득 대비 개인평균세율은 OECD 평균보다 11.0%p 낮은 14.5%로, 칠레(7.0%)와 멕시코(10.8%)에 이어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남
  - ▶ 개인소득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9.6%p 낮은 6.1%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기록한 국가는 칠레(0%)가 유일함
  - ▶ 반면,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8.4%로 OECD 평균과 큰 차이(-1.4%p)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25) 구매력 기준 미국달러(US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로 표시

- ▶ OECD 회원국에서는 소득세(15.7%) 비중이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9.8%)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여금이 개인평균세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5〉 2017년 OECD 회원국의 개인평균세율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국가	근로자 조세부담	개인소득세	근로자SSC	총임금소득 <sup>1)</sup>
스 위 스	16.9	10.7	6.2	70,835
룩셈부르크	29.1	16.7	12.3	65,716
아이슬란드	28.7	28.3	0.3	63,661
독일	39.9	19.1	20.8	63,551
네덜란드	30.4	17.3	13.1	62,981
벨기에	40.5	26.5	14.0	58,545
오스트리아	32.4	14.4	18.0	57,581
노르웨이	27.6	19.4	8.2	56,401
덴마크	36.1	36.1	0.0	56,211
호주	24.4	24.4	0.0	55,099
영국	23.4	14.0	9.4	54,319
미국	26.0	18.4	7.7	52,988
일본	22.3	7.9	14.4	52,946
한국	14.5	6.1	8.4	52,505
핀란드	30.2	20.9	9.3	49,013
프랑스	29.2	14.8	14.4	48,339
스웨덴	25.0	18.0	7.0	47,658
아일랜드	19.4	15.4	4.0	45,093
이탈리아	31.2	21.7	9.5	43,304
캐나다	22.8	15.4	7.4	40,983
스페인	21.1	14.7	6.4	40,451
뉴질랜드	18.1	18.1	0.0	39,826
이스라엘	17.7	9.7	8.0	39,215
그리스	26.0	10.0	16.0	35,165
슬로베니아	33.7	11.6	22.1	31,417
포르투갈	27.5	16.5	11.0	30,888
터키	27.9	12.9	15.0	29,263
폴란드	25.1	7.2	17.8	27,816
체코	24.1	13.1	11.0	27,536
에스토니아	18.4	16.8	1.6	26,796

〈표 11-5〉 의 계속

(단위: %,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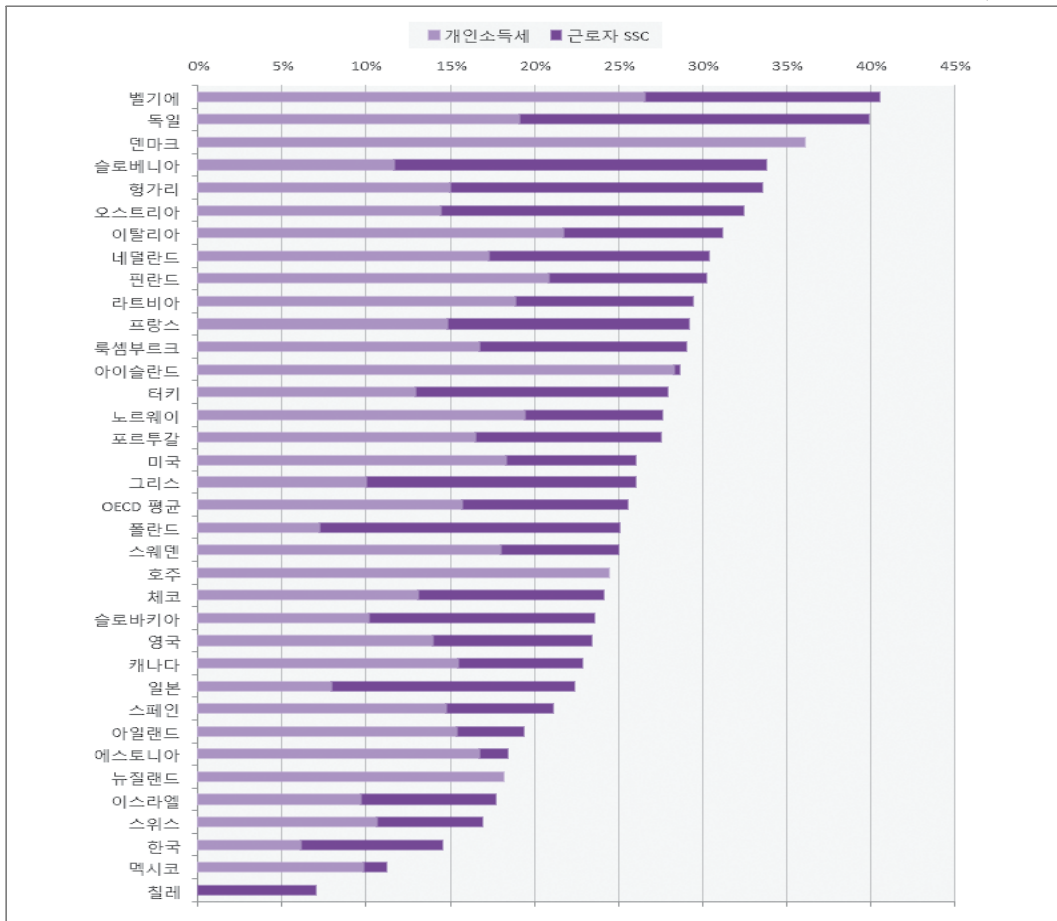
국가	근로자 조세부담	개인소득세	근로자SSC	총임금소득 <sup>1)</sup>
헝가리	33.5	15.0	18.5	26,012
슬로바키아	23.5	10.1	13.4	23,484
칠레	7.0	0.0	7.0	22,616
라트비아	29.4	18.9	10.5	21,755
멕시코	11.2	9.8	1.4	12,730
OECD 평균	25.5	15.7	9.8	43,791

주: 1) 구매력 기준 미국달러(US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20.

〈그림 11-2〉 2017년 OECD 회원국의 개인평균세율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총임금소득 대비 %)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21.

## 나. 2017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1)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OECD는 가구형태와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다음의 여덟 가지 대표적 유형의 가구형태를 설정하고,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에 따른 조세격차 수준을 비교함

- ① 독신·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임금의 67% 수준
- ② 독신·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임금의 100% 수준
- ③ 독신·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임금의 167% 수준
- ④ 독신·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임금의 67% 수준
- ⑤ 기혼·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임금의 100% 수준(외벌이)
- ⑥ 기혼·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임금의 133% 수준(맞벌이-1차 근로자 100%, 2차 근로자 33% 임금수준)
- ⑦ 기혼·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임금의 167% 임금수준(맞벌이-1차 근로자 100%, 2차 근로자 67% 임금수준)
- ⑧ 기혼·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임금의 133% 임금수준(맞벌이-1차 근로자 100%, 2차 근로자 33% 임금수준)

■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II-6〉 참조)

- ▶ 평균 임금수준의 “기혼(외벌이)·2자녀 가구”가 “독신·무자녀 가구” 보다 세부담이 더 낮으며, 소득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세부담이 더 낮은 경향을 보임
  - 평균 임금수준인 “독신·무자녀 가구”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35.9%, “기혼(외벌이)·2자녀 가구”는 26.1%임
  - 임금수준이 133%인 “기혼·무자녀 가구”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32.8%, “기혼·2자녀 가구”는 28%임
- ▶ 이는 부양가족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과 정부에서 부양가족에 지급하는 보조금(cash benefits) 등의 요인에 기인함<sup>26)</sup>

26) OECD, *Taxing Wages 2016-2017*, 2018, p. 55.

-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대부분의 가구형태에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가구형태 중 “독신·무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OECD 평균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독신 가구”의 OECD 평균과 조세격차 차이 범위는 약 12~15%p이며, “기혼 가구”의 경우 약 5~10%p의 범위 내에서 차이가 발생함
  - ▶ 가장 취약계층인 임금수준이 낮은 한부모 가정(“독신·2자녀 가구”)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세부담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수준이 67%인 독신·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OECD 평균은 15.3%인 반면 우리나라는 17.3%임
  
- 주요국과 비교 시 대부분의 가구형태에서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의 조세격차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함

  - ▶ 임금수준이 낮은 한부모 가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17.3%로 캐나다(-15.2%), 영국(8.9%), 미국(12.7%)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미국, 캐나다는 대부분 가구형태에서 우리나라보다 세부담이 높으나 “독신·2자녀 가구” 및 “기혼(외벌이)·2자녀 가구”의 세부담은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및 주요국 모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부담은 낮아지나, 우리나라의 부양가족에 따른 세부담 차이는 OECD 평균 및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133%인 “맞벌이·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20%, 소득수준이 동일한 “맞벌이·무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21.2%로 약 1.2%p의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 OECD 회원국은 평균 4.8%p의 차이가 발생함
  - ▶ 또한, 임금수준이 평균인 “독신·무자녀 가구”와 “기혼·2자녀”의 조세격차 차이는 우리나라는 2.2%p인 반면 OECD 회원국은 평균 9.8%p의 차이가 발생함

〈표 II-6〉 2017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단위: %)

국가	독신 무자녀 67% 임금수준	독신 무자녀 100% 임금수준	독신 무자녀 167% 임금수준	독신 2자녀 67% 임금수준	기혼 2자녀 100% 임금수준 <sup>1)</sup>	기혼 2자녀 100~33% 임금수준 <sup>2)</sup>	기혼 2자녀 100~67% 임금수준 <sup>3)</sup>	기혼 무자녀 100~33% 임금수준 <sup>4)</sup>
호 주	23.7	28.6	34.1	0.8	20.8	24.5	26.6	24.5
오스트리아	43.1	47.4	50.8	27.7	37.0	36.6	40.0	43.5
벨 기 에	47.2	53.7	59.6	33.3	38.3	38.4	46.2	44.9
캐 나 다	26.0	30.9	32.3	-15.2	11.5	20.1	24.3	27.7
칠 레	7.0	7.0	8.3	6.2	7.0	4.9	6.7	7.0
체 코	40.8	43.4	45.5	22.5	25.9	31.7	35.0	40.9
덴 마 크	34.1	36.3	42.1	6.0	25.8	29.7	31.7	34.3
에스토니아	37.9	39.0	39.9	22.6	28.9	32.2	33.8	38.1
핀 란 드	36.9	42.9	49.1	26.4	38.4	35.4	37.7	38.8
프 랑 스	42.8	47.6	54.4	24.6	39.4	36.9	42.2	42.1
독 일	45.5	49.7	51.4	31.5	34.5	39.1	42.7	45.4
그 리 스	36.8	40.8	46.4	32.5	39.0	38.3	39.0	39.4
헝 가 리	46.2	46.2	46.2	22.0	30.8	34.6	37.0	46.2
아이슬란드	30.1	33.2	38.3	22.0	23.8	29.3	32.0	30.0
아일랜드	21.0	27.2	37.9	-17.1	10.8	13.5	19.0	19.8
이스라엘	15.1	22.1	31.3	1.8	19.5	16.4	15.8	18.3
이탈리아	40.7	47.7	53.8	25.3	38.6	38.3	41.5	42.7
일본	31.1	32.6	35.0	25.1	27.4	28.7	29.6	31.7
한국	19.3	22.6	25.0	17.3	20.4	20.0	20.2	21.2
라트비아	41.9	42.9	43.5	26.7	32.7	34.3	36.4	41.9
룩셈부르크	29.0	36.7	44.0	5.2	15.3	19.1	24.7	27.9
멕시코	16.2	20.4	23.4	16.2	20.4	18.3	18.7	18.3
네덜란드	30.5	37.5	42.1	7.0	32.3	27.9	29.7	32.8
뉴질랜드	13.7	18.1	23.8	-13.5	6.4	13.5	16.9	16.7
노르웨이	32.9	35.9	41.7	22.1	31.4	30.5	32.6	33.2
폴란드	35.0	35.6	36.2	-20.6	10.0	24.2	26.8	34.9
포르투갈	36.6	41.4	46.7	22.0	28.8	30.2	36.3	36.5
슬로바키아	39.2	41.6	43.5	28.5	29.6	32.2	36.3	37.7
슬로베니아	40.0	42.9	46.3	12.7	24.5	34.3	35.1	43.2
스페인	35.8	39.3	43.7	24.2	33.7	35.4	36.2	36.4
스웨덴	40.9	42.9	51.6	33.9	38.2	37.7	39.3	41.2
스위스	19.0	21.8	26.4	3.9	9.1	12.2	15.3	19.6
터키	33.2	38.7	42.3	31.6	37.0	34.2	35.9	35.0
영국	26.1	30.9	37.3	8.9	26.1	22.8	26.5	26.0
미국	29.2	31.7	36.5	12.7	20.8	24.5	26.5	29.2
OECD 평균	32.1	35.9	40.3	15.3	26.1	28.0	30.7	32.8

주: 1) 외벌이 가정

2) 1차 근로자 임금수준 100%, 2차 근로자 임금수준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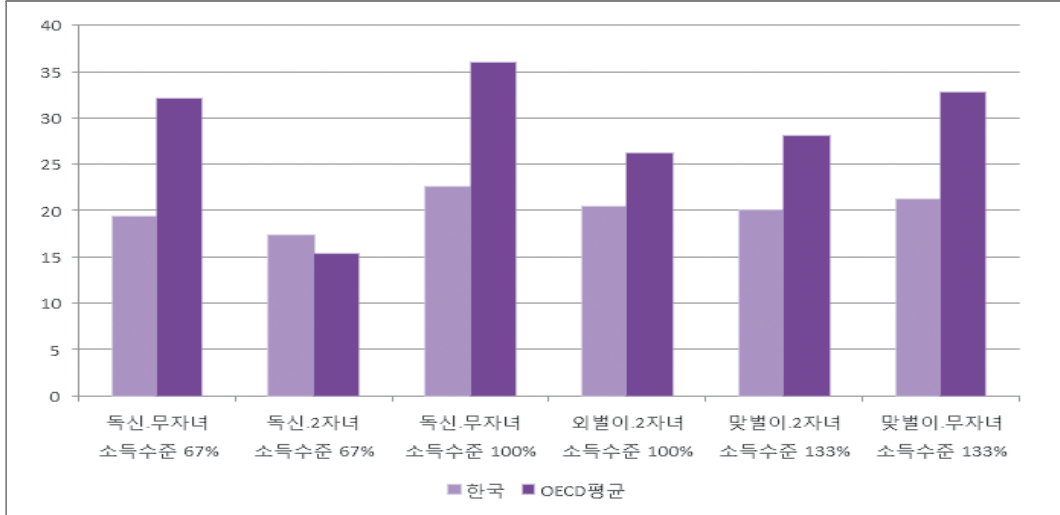
3) 1차 근로자 임금수준 100%, 2차 근로자 임금수준 67%

4) 1차 근로자 임금수준 100%, 2차 근로자 임금수준 33%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55.

[그림 II-3] 우리나라와 OECD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2017년)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5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격차 현황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구형태 및 소득구간에서 세부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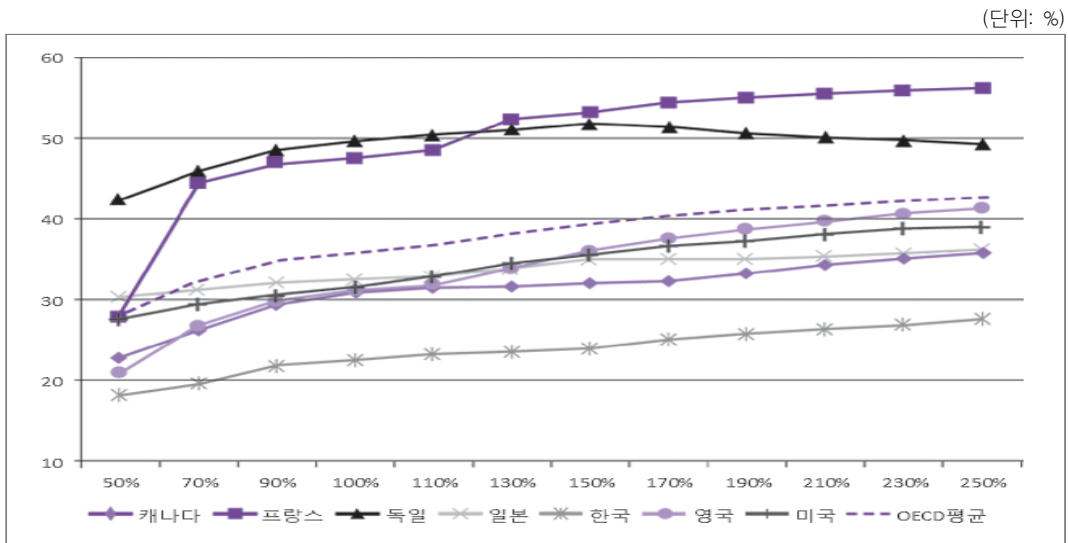
- ▶ “독신·무자녀 가구”의 경우 모든 소득구간에 걸쳐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II-4) 참고)
- ▶ “기혼·무자녀 가구”의 경우 저소득 구간을 제외한 모든 소득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II-5) 참고)
- ▶ “기혼·2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저소득 구간을 제외한 모든 소득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주요국 중 가장 낮으나, OECD 평균과 조세격차 차이는 “기혼·무자녀 가구”에 비해 다소 감소함(그림 II-6) 참고)

□ “기혼·무자녀 가구” 및 “기혼·2자녀 가구”의 저소득(평균 임금수준의 50~70%) 구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OECD 평균 및 주요국 중 캐나다, 미국, 영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OECD 회원국 및 주요국은 평균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 또한, 우리나라는 가족수당 등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정부의 가계현금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존재함<sup>27)</sup>
- ▣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나, 소득세 부담의 누진성은 OECD 평균 및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 저소득 구간의 소득세 누진성은 OECD 평균 및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OECD 평균과 조세격차 차이가 증가함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및 OECD 평균 모두 저소득 구간의 누진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누진성이 약해지는 특징을 보이며, 우리나라는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이 크지 않음
    - 특히, “기혼·2자녀 가구”에서 소득세 누진성 차이가 더 커짐
  - ▶ OECD 회원국에서 저소득 구간에 누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OECD국은 보편적 지원보다 가족수당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sup>28)</sup>

[그림 11-4] 주요국의 독신·무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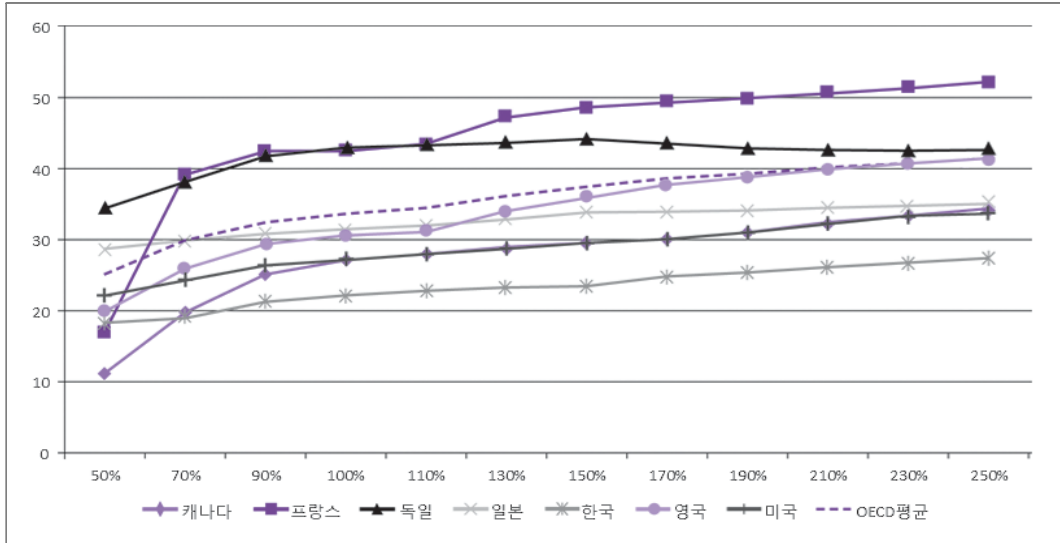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wedge decomposition(<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 검색일자: 2018. 5. 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7) 안종석,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4, p. 44.

28) Ibid, p. 45.

[그림 11-5] 주요국의 기혼·무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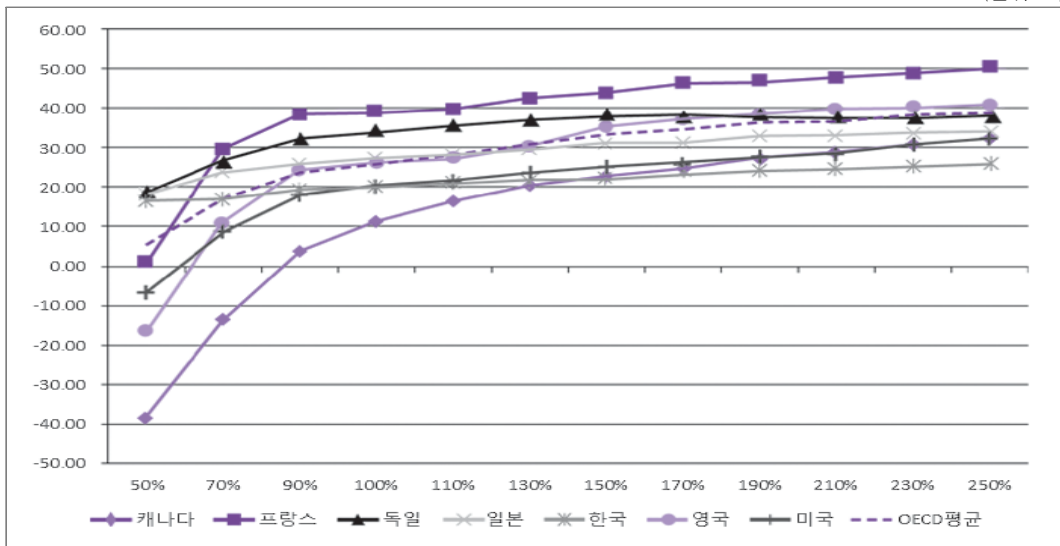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wedge decomposition(<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 검색일자: 2018. 5. 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11-6] 주요국의 기혼·2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2017년)

(단위: %)



자료: OECD, Tax wedge decomposition(<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 검색일자: 2018. 5. 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추이

-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가구형태별 세부담 추이를 보면 OECD는 2000년 대비 2017년 조세격차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각 가구형태별로 1~2%p 감소함(〈표 II- 7, 8, 9〉 및 [그림 II-7, 8, 9] 참조)

  - ▶ “독신·무자녀 가구”의 2000년 대비 2017년 조세격차는 1.1%p 감소, “기혼·무자녀 가구”의 경우 1.5%p 감소, “기혼·2자녀 가구”는 2%p 감소하여 가구형태 중 가장 많이 감소함
  - ▶ 또한, 모든 가구형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2011년에 다소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조세격차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2000년 이후 조세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비 2017년 조세격차는 각 가구형태별로 5~6%p 증가함(〈표 II-7, 8, 9 참조〉)

  - ▶ “독신·무자녀 가구”의 경우 조세격차가 2000년에 비해 6.2%p 증가하였으며, 멕시코 7.8%p 다음으로 상승폭이 높음
  - ▶ “기혼·2자녀 가구”의 경우 조세격차가 2000년에 비해 4.7%p 증가하였으며, 아이슬란드 9.1%p, 멕시코 8.6%p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 “기혼·무자녀 가구”의 경우 2000년에 비해 조세격차가 5.4%p 증가하였으며, 멕시코 8.6%p, 아이슬란드 6.3%p 다음으로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ECD국 중 모든 가구형태에서 조세격차 비중이 2000년 대비 3%p 이상 증가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멕시코이며, 멕시코는 OECD 평균보다 조세격차가 현저히 낮음

  - ▶ 아이슬란드는 조세격차가 꾸준히 증가하여 “기혼·2자녀 가구”는 2015년부터 OECD 평균보다 높아졌으며, “독신·무자녀 및 기혼·무자녀 가구”는 OECD 평균과 비슷해짐
  - ▶ 이외에 포르투갈은 “독신·무자녀 가구”, 룩셈부르크는 “기혼·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가 2000년 대비 3%p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룩셈부르크는 조세격차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

〈표 II-7〉 OECD 회원국의 독신·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00% 임금수준, 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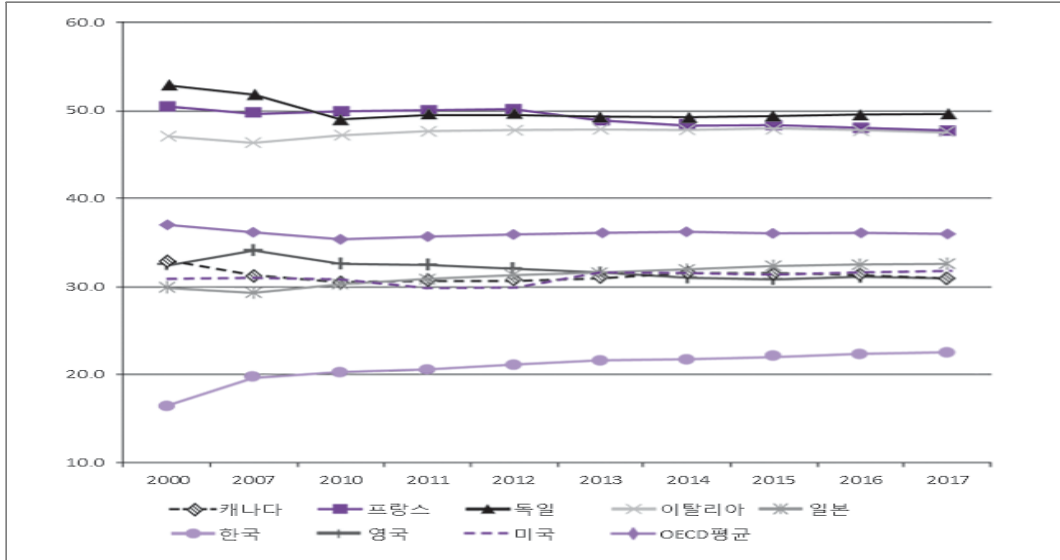
(단위: %)

국가	2000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 주	31.0	27.7	26.8	26.7	27.3	27.4	27.7	28.4	28.6	28.6
오스트리아	47.3	48.8	48.2	48.5	48.8	49.2	49.4	49.6	47.3	47.4
벨 기 에	57.1	55.6	55.9	56.1	56.0	55.7	55.6	55.3	53.9	53.7
캐 나 다	32.9	31.3	30.4	30.6	30.8	31.0	31.6	31.5	31.4	30.9
칠 레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체 코	42.6	42.9	42.1	42.6	42.5	42.4	42.6	42.8	43.0	43.4
덴 마 크	42.1	39.1	36.4	36.6	36.7	36.4	36.3	36.4	36.4	36.3
에스토니아	41.3	39.0	40.1	40.3	40.4	39.9	40.0	39.0	39.0	39.0
핀 란 드	47.5	43.9	42.3	42.3	42.5	43.1	43.6	43.5	44.1	42.9
프 랑 스	50.4	49.7	49.9	50.0	50.1	48.8	48.4	48.4	48.0	47.6
독 일	52.9	51.8	49.0	49.7	49.7	49.3	49.3	49.4	49.5	49.7
그 리 스	38.8	42.1	40.1	43.0	42.9	41.3	40.4	39.1	40.5	40.8
헝 가 리	54.7	54.5	46.6	49.5	49.5	49.0	49.0	49.0	48.2	46.2
아이슬란드	28.8	30.5	33.4	34.1	33.8	34.1	33.9	34.3	34.0	33.2
아 일 랜 드	28.9	22.2	25.8	25.8	26.9	27.6	27.9	27.3	27.0	27.2
이 스 라 엘	29.6	24.9	20.7	20.8	20.4	20.4	21.1	21.8	22.3	22.1
이 탈 리 아	47.1	46.4	47.2	47.6	47.7	47.8	47.8	47.8	47.8	47.7
일 본	29.8	29.3	30.2	30.8	31.3	31.6	32.0	32.3	32.5	32.6
한 국	16.4	19.7	20.1	20.5	21.0	21.5	21.7	22.0	22.3	22.6
라 트 비 아	43.2	42.2	44.0	44.2	44.3	43.7	43.0	42.5	42.6	42.9
룩셈부르크	35.8	35.0	34.3	36.3	36.0	37.2	37.6	38.4	38.5	36.7
멕 시 코	12.7	15.9	16.0	18.7	19.0	19.3	19.5	19.8	20.1	20.4
네 덜 란 드	40.0	38.7	38.1	38.0	38.6	40.6	39.0	37.0	37.2	37.5
뉴 질 랜 드	19.4	21.1	17.0	15.9	16.4	16.9	17.2	17.6	17.9	18.1
노 르 웨 이	38.6	37.5	37.3	37.6	37.4	37.4	36.9	36.8	36.3	35.9
폴 란 드	38.2	38.2	34.2	34.3	35.5	35.6	35.7	35.7	35.6	35.6
포 르 투 갈	37.3	37.3	37.1	38.0	37.6	41.4	41.2	42.1	41.6	41.4
슬로바키아	41.9	38.4	37.9	38.8	39.6	41.1	41.3	41.4	41.5	41.6
슬로베니아	46.3	43.3	42.5	42.6	42.5	42.4	42.5	42.6	42.7	42.9
스 페 인	38.6	39.0	39.7	40.0	40.6	40.7	40.7	39.4	39.4	39.3
스 웨 덴	50.1	45.3	42.8	42.8	42.9	43.0	42.5	42.6	42.8	42.9
스 위 스	22.9	22.4	22.1	22.3	22.1	22.2	21.9	21.8	21.8	21.8
터 키	40.4	42.2	37.0	37.0	37.1	37.4	38.1	38.2	38.2	38.7
영 국	32.6	34.1	32.6	32.5	32.1	31.4	31.0	30.8	30.9	30.9
미 국	30.8	30.9	30.7	29.9	29.8	31.5	31.6	31.4	31.6	31.7
OECD 평균	37.0	36.2	35.3	35.8	35.9	36.1	36.1	36.1	36.0	35.9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44.

[그림 11-7]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독신·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00% 임금수준, 2000~2017년)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6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1-8] OECD 회원국 기혼·2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7년)

(단위: %)

국가	2000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 주	24.6	19.6	18.0	17.9	18.8	19.9	20.9	22.7	24.4	24.5
오스트리아	36.3	38.3	36.7	37.4	37.8	38.3	38.5	38.5	36.5	36.6
벨기에	44.3	41.2	42.2	42.4	42.4	41.9	41.7	41.3	38.7	38.4
캐나다	26.9	24.0	23.1	23.4	23.6	24.0	24.2	19.9	20.4	20.1
칠레	5.4	5.5	5.1	5.1	5.1	5.0	5.0	5.0	4.9	4.9
체코	31.0	29.4	30.3	33.2	32.6	32.5	32.9	32.8	31.4	31.7
덴마크	33.1	31.5	29.5	29.9	30.1	29.8	29.5	29.8	29.7	29.7
에스토니아	35.6	32.5	34.1	34.5	35.0	34.8	35.2	31.7	31.7	32.2
핀란드	39.3	36.4	35.0	35.0	34.9	35.6	36.1	35.9	36.4	35.4
프랑스	40.5	40.0	40.6	40.7	41.0	39.4	37.5	37.8	37.5	36.9
독일	41.2	40.6	37.7	38.6	38.8	38.4	38.6	38.7	38.9	39.1
그리스	39.0	40.4	38.9	41.9	41.9	39.9	38.9	37.1	38.0	38.3
헝가리	44.8	42.8	36.4	34.4	35.4	36.2	38.3	38.7	37.4	34.6
아이슬란드	20.2	25.1	26.2	27.7	26.9	28.0	28.3	29.1	29.4	29.3
아일랜드	20.3	7.2	10.6	12.3	13.4	14.4	14.6	13.9	13.3	13.5
이스라엘	21.7	18.3	14.9	13.5	13.0	13.2	15.8	16.1	16.5	16.4
이탈리아	41.1	37.8	39.6	40.2	40.5	40.3	38.9	38.4	38.4	38.3
일본	27.7	25.0	24.0	25.1	27.2	27.5	28.0	28.4	28.6	28.7
한국	15.3	17.3	17.8	18.0	18.6	19.0	19.2	19.5	19.7	20.0

〈표 11-8〉 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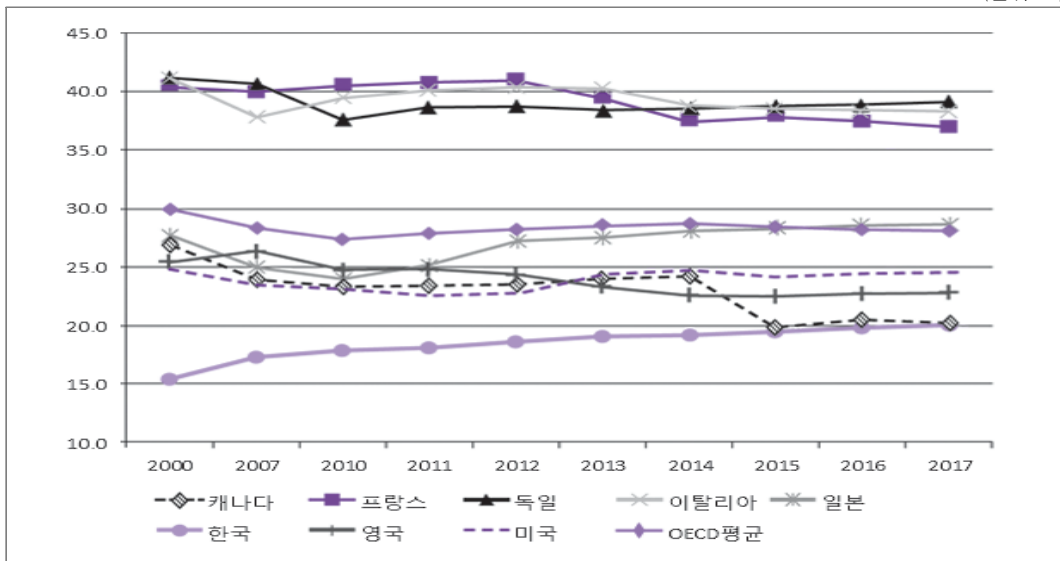
(단위: %)

국가	2000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라 트 비 아	32.8	35.0	36.3	36.3	36.6	36.3	33.7	33.3	33.5	34.3
룩셈부르크	15.8	15.6	15.9	18.0	17.9	19.0	19.6	20.5	20.6	19.1
멕 시 코	9.8	13.7	14.1	16.3	16.7	17.0	17.3	17.6	18.0	18.3
네 덜 란 드	34.3	29.6	29.5	29.5	29.6	31.7	30.1	28.5	27.7	27.9
뉴 질 란 드	18.5	9.7	7.4	7.0	8.6	10.0	11.1	12.0	12.8	13.5
노 르 웨 이	30.8	31.4	31.6	32.0	31.8	31.7	31.3	31.3	30.8	30.5
폴 란 드	34.6	32.5	29.3	29.7	31.1	31.3	31.7	31.9	25.8	24.2
포 르 투 갈	30.6	28.8	28.2	28.4	28.9	31.2	30.8	31.2	30.1	30.2
슬로바키아	35.1	29.0	27.2	29.4	30.3	33.0	33.4	31.7	32.0	32.2
슬로베니아	33.7	32.1	30.4	30.6	30.6	30.5	33.9	34.1	34.1	34.3
스 페 인	35.0	35.1	35.7	35.9	36.4	36.4	36.5	35.5	35.5	35.4
스 웨 덴	44.7	39.1	36.8	36.9	37.1	37.4	36.9	37.1	37.5	37.7
스 위 스	14.6	14.1	13.3	13.2	13.1	12.9	12.3	12.3	12.2	12.2
터 키	39.7	41.9	34.3	34.4	34.4	34.7	35.4	35.5	33.8	34.2
영 국	25.5	26.4	24.7	24.8	24.4	23.3	22.6	22.4	22.7	22.8
미 국	25.0	23.5	23.0	22.6	22.7	24.3	24.6	24.3	24.4	24.5
OECD 평균	30.0	28.3	27.4	27.9	28.2	28.5	28.7	28.4	28.1	28.0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56.

〔그림 11-8〕 OECD와 우리나라의 기혼·2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7년)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5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1-9〉 OECD 회원국 기혼·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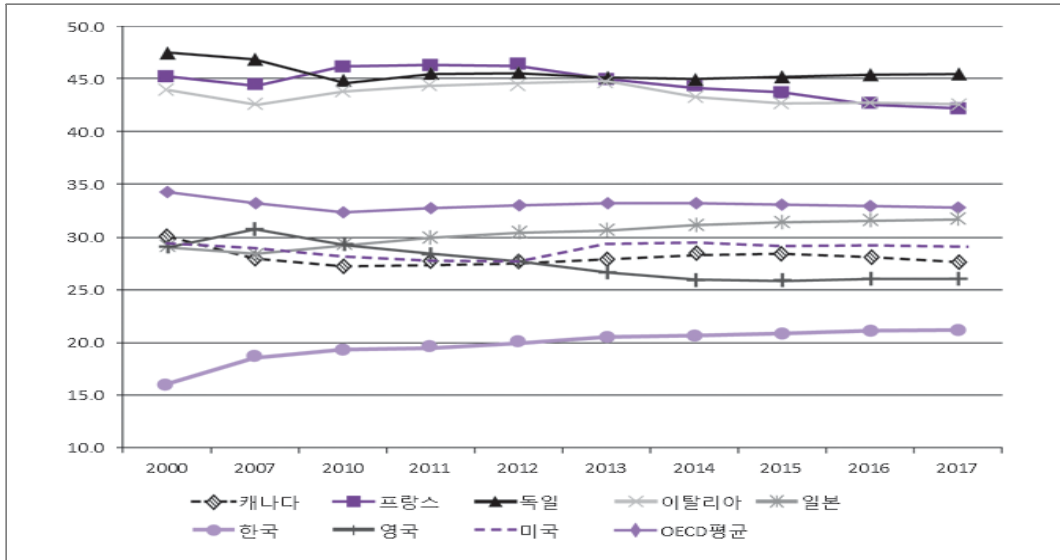
(단위: %)

국가	2000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 주	27.4	24.1	23.1	22.9	23.5	23.2	23.5	24.2	24.4	24.5
오스트리아	44.7	45.6	44.5	44.8	45.1	45.3	45.5	45.5	43.5	43.5
벨기에	51.2	47.8	48.5	48.7	48.7	48.2	48.1	47.6	45.2	44.9
캐나다	30.0	28.0	27.2	27.5	27.6	27.9	28.4	28.4	28.2	27.7
칠레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체코	41.3	41.3	40.0	40.4	40.3	40.2	40.4	40.5	40.7	40.9
덴마크	38.1	36.3	34.4	34.6	34.8	34.5	34.3	34.5	34.4	34.3
에스토니아	39.8	37.6	38.8	39.0	39.2	38.8	38.9	38.0	37.9	38.1
핀란드	44.7	40.7	38.9	38.9	38.8	39.4	39.9	39.6	40.0	38.8
프랑스	45.3	44.4	46.1	46.2	46.4	44.9	44.4	43.6	42.7	42.1
독일	47.5	46.9	44.8	45.5	45.5	45.1	45.1	45.2	45.3	45.4
그리스	38.7	40.9	39.4	42.1	42.1	40.7	39.7	38.0	39.1	39.4
헝가리	52.7	50.7	43.8	46.8	47.4	47.7	49.0	49.0	48.2	46.2
아이슬란드	23.7	27.0	28.6	29.6	29.4	29.9	29.9	30.4	30.5	30.0
아일랜드	23.5	15.5	18.2	19.4	20.2	20.7	20.9	20.2	19.8	19.8
이스라엘	24.8	20.6	17.4	17.3	17.0	17.0	17.6	18.1	18.5	18.3
이탈리아	44.0	42.7	43.9	44.4	44.6	44.8	43.3	42.8	42.8	42.7
일본	29.1	28.4	29.4	30.0	30.4	30.7	31.1	31.5	31.6	31.7
한국	15.8	18.6	19.2	19.6	20.0	20.4	20.5	20.8	21.0	21.2
라트비아	41.7	40.9	43.2	43.2	43.3	42.8	42.0	41.6	41.8	41.9
룩셈부르크	27.4	26.8	26.2	27.9	27.6	28.4	28.8	29.5	29.6	27.9
멕시코	9.8	13.7	14.1	16.3	16.7	17.0	17.3	17.6	18.0	18.3
네덜란드	38.0	34.2	34.2	34.1	34.5	36.5	34.8	33.1	32.7	32.8
뉴질랜드	18.5	20.1	15.9	14.8	15.2	15.7	16.0	16.2	16.5	16.7
노르웨이	36.0	35.1	34.8	35.1	34.8	34.7	34.2	34.1	33.5	33.2
폴란드	37.0	37.1	33.3	33.4	34.7	34.7	34.9	35.0	34.9	34.9
포르투갈	33.8	32.4	32.2	32.2	32.6	35.0	34.7	36.2	36.4	36.5
슬로바키아	40.7	35.4	33.6	35.7	36.6	39.1	39.3	37.6	37.7	37.7
슬로베니아	44.5	41.4	40.1	40.2	40.1	40.0	42.9	43.0	43.0	43.2
스페인	36.1	36.3	36.8	37.0	37.5	37.5	37.5	36.5	36.5	36.4
스웨덴	49.1	43.5	41.0	41.0	41.1	41.3	40.7	40.9	41.1	41.2
스위스	20.8	20.4	19.8	20.1	19.9	20.0	19.7	19.7	19.6	19.6
터키	39.7	41.9	35.0	35.1	35.1	35.4	36.1	36.2	34.6	35.0
영국	29.1	30.8	29.3	28.4	27.8	26.7	26.1	25.9	26.0	26.0
미국	29.5	29.0	28.3	27.8	27.7	29.3	29.5	29.1	29.2	29.2
OECD 평균	34.3	33.2	32.3	32.8	32.9	33.2	33.2	33.1	32.9	32.8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62.

[그림 11-9]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혼·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7년)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6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요약

-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임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0.13%p)한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의 소폭 상승(+0.24%p)으로 조세격차가 증가하였으나, 조세격차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OECD 35개국 중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해당함
  -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2015년 기준 4.3%로 OECD 평균인 8.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sup>29)</sup>
  - ▶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기준 17.6%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sup>30)</sup>

29)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tax/tax-on-personal-income.htm#indicator-chart>(검색일자: 2018. 5. 11.)

30)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tax/tax-on-personal-income.htm#indicator-chart>(검색일자: 2018. 5. 11.)

- 가구형태별 평균 조세격차를 보면, 대부분의 가구형태에서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OECD 평균보다 낮으며, 부양가족에 따른 세부담 차이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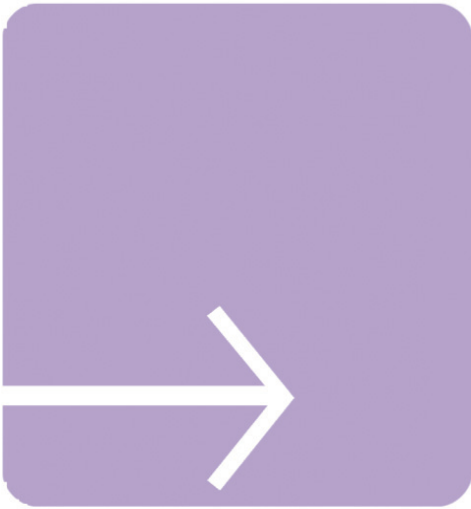
  - ▶ “임금수준 67%인 독신·2자녀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형태에서 세부담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임
  - ▶ 임금수준이 평균인 “독신·무자녀 가구”와 “기혼·2자녀 가구” 간 조세격차 차이는 우리나라는 2.2%p로 OECD 평균 9.8%p와 차이가 크게 발생함
    - 또한, 소득수준이 동일한 맞벌이 가구의 자녀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는 우리나라가 1.2%p로 OECD 평균 4.8%p에 비해 차이가 적게 나타남
  
-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 조세격차를 보면, OECD국은 저소득 구간에서 세부담 누진성이 강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누진성이 약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임금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담 누진성이 약하게 나타남

  - ▶ OECD 회원국은 대체적으로 보편적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누진성이 강한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함
  - ▶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OECD 평균과 조세격차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OECD 평균 조세격차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다소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조세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 같은 기간 조세격차 상승폭이 큰 국가로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아이슬란드가 있으며, 멕시코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조세격차 수준을 나타내나 아이슬란드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 I 미국/캐나다

## 1 미국

### 가. 해외 유보소득의 일회성 과세(transition tax)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18-02호]

- 미국 국세청은 2018년 1월 19일 누적된 해외 유보소득에 일회성 과세하는 규정(sec. 965)의 가이드라인(Notice 2018-13)을 발표함<sup>31)</sup>

  - ▶ 미국은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해외소득에 비과세함에 따라 이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해외 유보소득에 대해 현금 보유분은 15.5%의 세율로, 자산 보유분은 8%로 과세하도록 개정함
  - ▶ 미 국세청은 2017년 12월 29일 위 규정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Notice 2018-07)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발표한 것임
-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과세대상 소득 계산 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과세대상 현금소득의 명확한 정의 등을 새로 포함하고 있음

  -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은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향후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의견수렴 과정 이후 시행령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 과세대상 소득 계산 시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대체소득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함

  - ▶ 해외 유보소득에 대한 일회성 과세는 1986년 이후부터 2017년 11월 2일 또는 12월

31) Tax notes, "Practitioners Welcome Transition Tax Guidance, Request More," 2018. 1. 29.

31일까지 누적된 세무상 배당이익(earnings & profit)<sup>32)</sup> 중 큰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함<sup>33)</sup>

- ▶ 이때, 2017년 11월 2일은 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소득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가 일할계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임
- ▶ 미 국세청과 재무부가 제안한 내용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계산한 세무상 배당이익에 2일간의 일별 평균 세무상 배당이익(당해연도 기준)을 가산하는 것임

**〈사례〉**

- \* 해외기업의 1986년 이후 2017년 10월 31일까지 누적된 세무상 배당이익 = 10,000달러
- \* 201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무상 배당이익 = 3,040달러
- \* 당해연도 일별 세무상 배당이익 = 10달러(3,040달러 / 304일)
- \* 2017년 11월 2일까지 총세무상 배당이익 = 10,020달러(10,000달러 + 20달러)

자료: 미국 국세청 공지(Notice 2018-2013), pp. 14~15.

▣ 과세대상 소득 중 현금보유분 계산 시 외상매출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기채권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함

- ▶ 현금보유액은 현금, 순외상매출금(net account receivable), 기타 현금자산의 공정가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sup>34)</sup>
- ▶ 기타현금 자산으로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개인용 자산, 상업어음(commercial paper), 양도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연방·주 정부 및 해외 정부의 채권, 외화통화, 1년 이내의 단기채권이 있음
-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순외상매출금은 사업목적으로 판매한 자산과 관련한 순 외상매출금<sup>35)</sup>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채권자 요구 시 상환해야 하는 채권도 단기채권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과세대상 소득을 미국 달러로 환산 시, 2017년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환산하는 안을 발표함

32) 미국세법 Sec. 964(a)와 986 규정에 따라 '1986년 이후 세무상 배당이익(post-1986 earnings and profits)'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출처: Sec. 965(d)(3))

33) 미국세법(IRC) Sec. 965(a)

34) 미국세법(IRC) Sec. 965(c)(3)(B)

35) 미국세법 제1221조에 따른 외상매출금으로써 사업목적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발생한 미수금에서 사업목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발생한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임

- ▶ 현행 규정에서 2017년 11월 2일과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하며, 두 측정일 사이에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어느 일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 ▶ 미 국세청과 재무부는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환율 환산일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안을 제안함
- 1986년 이후 누적된 해외 결손금(deficit)을 주주 지분율에 따라 귀속시킬 때, 보통주에 결손금을 우선 귀속시키는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임
- ▶ 미국 주주의 과세대상 누적 해외소득 계산 시 1986년 이후 누적된 해외 유보소득에서 결손금(deficit)을 차감함
  - ▶ 여러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소득 귀속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은 존재하는 반면 결손금에 대한 시행령은 없어 이를 제정하는 것임

#### 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안 승인

[조세동향 18-03호]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8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최종 서명함<sup>36)</sup>
- ▶ 이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무역적자 해소 및 국가안보 증진 목적으로 높은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도입하는 것임<sup>37)</sup>
    - 군함, 군용기, 군사시설 등의 제작 시 철강, 알루미늄이 사용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무역적자 발생으로 미국 철강산업의 침체 및 일자리 감소의 부작용도 존재함
  - ▶ 위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는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됨

36)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ert-us-president-trump-imposes-tariffs-on-steel-and-aluminum-products--mexico-and-canada-excluded>, (검색일자: 2018. 3. 30.)

37) 미국 산업통상국(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8/02/secretary-ross-releases-steel-and-aluminum-232-reports-coordination>, (검색일자: 2018. 4. 1.)

- 철강의 경우 수입가격의 25%만큼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며, 알루미늄의 경우 수입 가격의 10%만큼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함

  - ▶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은 탄소합금 판재류(Carbon and Alloy Flat Product), 탄소합금 원형강류(Carbon and Alloy Long Products), 탄소합금 파이프 및 튜브(Carbon and Alloy Pipe and Tube Products), 탄소합금 반제품(Carbon and Alloy Semi-finished Products), 스테인레스(Stainless Products)임<sup>38)</sup>
  - ▶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알루미늄은 가공되지 않은 알루미늄(unwrought aluminum), 알루미늄봉(aluminum bars, rods, and profiles), 알루미늄 선(aluminum wire), 알루미늄 판(aluminum plate, sheet, strip), 알루미늄호일(aluminum foil (flat rolled products))임<sup>39)</sup>
  
-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25%의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 면제국에 대해 수입쿼터를 제한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함<sup>40)</sup>

  - ▶ 우리나라 외에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EU국이 철강에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제외됨
    - 이 중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독일,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 수입량이 많은 국가이며, 미국의 전체 철강수입량 중 50% 이상이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음
  - ▶ 이번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 발표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다. 특정국가보안업체의 국가별보고서 작성 지침 발표**

[조세동향 18-04호]

- 미국 국세청은 2018년 3월 30일 국방부와의 후속협의를 통하여 특정국가보안업체 (specified national security contractor)의 국가별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Notice 2018-31)을 발표함<sup>41)</sup>

38)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proclamation-adjusting-imports-steel-united-states-2/>, (검색일자: 2018. 3. 30.)

39) Ibid.

40) Ibid.

41) Tax Notes, "Treasury Reverses Course on Security Exception to CbC Reporting," TAX NOTES INTERNATIONAL,

- ▶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이 8억 5천만달러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이 요구됨
- ▶ 국가별보고서가 협약 체결국가 간 교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6월 공표된 기존 국가별보고서 최종규정(T.D. 9773) 전문에 따르면 특정국가보안업체에 대하여 보고 예외 사항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됨
  - 미국은 다자간정보교환협약(MCAA)이 아닌 독자적인 협약을 통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19일 기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총 32개국임<sup>42)</sup>
- 미국회계기준에 따른 연간 수익의 50% 이상이 미 국방부, 미 정보국 또는 보안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인은 특정국가보안업체에 해당함
- 특정국가보안업체는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 다음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서식(Form 8975) 작성 시 부가정보 기입란(Part II) 상단에 특정국가보안업체임을 기재함
  - ▶ 원칙적으로 부표(Schedule A)는 다국적기업의 종속회사가 소재한 과세관할권(Tax Jurisdiction)별로 작성하여야 하나, 특정국가보안업체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 과세관할권 정보란(Part I)에 미국을 과세관할권으로 하여 다국적기업의 통합된 재무 정보 및 임직원 정보를 기재한 하나의 부표를 작성하고, 부표의 종속회사 정보란(Part II) 작성 시 최상위모회사에 대한 것만을 기재함
    - 과세관할권 정보란(Part I)에 무국적("Stateless")으로 기재하고 금액란은 0으로 기재한 하나의 부표를 작성하고, 종속회사 정보란(Part II) 작성 시 최상위모회사에 대한 것만을 기재함
  - ▶ 상기 외의 추가적인 정보는 필요하지 않음
- 기 제출한 서식은 특정국가보안업체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18년 6월에 자동으로 교환됨

Vol. 90, No. 3, 2018. 4. 9, pp. 368~369.

42)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businesses/country-by-country-reporting-jurisdiction-status-table>, (검색일자: 2018. 4. 23.)

- ▶ 원칙적으로 국가별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으로 사업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회사의 경우 3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 기존에 제출한 보고서가 자동으로 교환되지 않도록 하려면 서면 제출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함

**라. 혼합 세율 적용 지침 발표**

[조세동향 18-04호]

□ 미국 국세청은 최근 개정세법으로 법인세율 인하 및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폐지에 따라 과세연도가 개정세법의 시행시점에 걸쳐있는 경우에 대한 혼합세율(Blended Tax Rates) 적용 지침(Notice 2018-38)을 발표함<sup>43)</sup>

- ▶ 상기 지침은 최근 개정세법으로 기존의 15~35%의 법인세 4단계 누진세율을 2018년부터 21% 단일세율로 개정하고 최저한세(최저한세 과세소득의 20%)를 폐지하는 등 급격한 법인세 변동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한 것임

□ 상기 지침에 따르면 법인세액 계산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과세표준에 대하여 개정 전후 세율을 각각 적용한 금액을 해당일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최저한세 계산 시에는 개정 후 기간의 최저한세율이 0%인 것으로 하여 산출함

**〈표 1-1〉 혼합세율 적용 예시**

(단위: USD, 일)

법인세액 산출 예시		최저한세 산출 예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A. 과세표준	1,000,000	A. 최저한세 과세소득	2,000,000
B. 개정 전 세율 적용세액	340,000	B. 개정 전 최저한세	400,000
C. 개정시점까지의 일수	184일	C. 개정시점까지의 일수	184일
D. 개정 전 세액의 적수(BXC)	62,560,000	D. 개정 전 최저한세의 적수(BXC)	73,600,000
E. 개정 후 세율을 적용한 세액	210,000	E. 개정 전 세율 적용 최저한세(D/365)	201,644

43)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forms-pubs/2017-fiscal-tax-year-filers-must-use-blended-corporate-tax-rates>, (검색일자: 2018. 4. 23.)

〈표 1-1〉 의 계속

법인세액 산출 예시		최저한세 산출 예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F. 개정시점 이후의 일수	181일	(*) 산출세액은 \$275,534이고 최저한세는 \$201,644 이므로 최저한세로 인한 추가납부액은 발생하지 아니함	
G. 개정 전 세액의 적수(EXF)	38,010,000		
H. 개정 전 세율 적용 세(D/365)	171,397		
I. 개정 후 세율 적용 세(H/365)	104,137		
J. 산출세액(H + I)	275,534		

주: 과세연도가 2017. 7. 1. ~ 2018. 6. 30인 일반법인으로 과세표준이 100만달러이고,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200만달러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및 최저한세는 상기와 같이 계산됨  
 자료: 미국 국세청 지침(Notice 2018-2038), pp. 5-6.

■ 상기 지침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됨

**마. 일회성 전환세(transition tax) 미납부자 가산세 면제 발표**

[조세동향 18-06호]

■ 미 국세청은 2018년 6월 4일 일회성 전환세(transition tax) 도입에 따른 분할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2019년 4월 15일까지 납부 시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것을 발표함<sup>44)</sup>

- ▶ 일회성 전환세는 미국이 2017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향후 미국 주주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소득에 비과세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 과세되지 않은 누적된 해외소득에 일회성 과세하는 것임<sup>45)</sup>
- ▶ 일회성 과세제도 도입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은 납세자 신청 시 8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였으며,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첫 번째 세액 납부기한은 2018년 4월 15일이었음

44)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newsroom/irs-offers-penalty-filing-relief-to-many-subject-to-new-transition-tax-on-foreign-earnings>, (검색일자: 2018. 6. 28.)

4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17-12호), 2018. 1. 5.

- 가산세가 면제되는 자는 해외 누적소득 일회성 과세에 따른 총납부세액이 1백만달러 이하이고, 현재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개인 주주에 한해 적용됨

  - ▶ 미국 세법상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할 의무를 가짐<sup>46)</sup>
  
- 또한, 2017년 해외 누적된 소득의 일회성 과세액 신고 시 납부세액의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2017년 ‘개인소득세 수정신고서(Form 1040X)’를 2018년 10월 1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 시 분할납부를 허용할 것이라 발표함

**바. 중국 수입품에 25% 세율의 추가 관세 부과안 발표**

[조세동향 18-06호]

- 미국 무역 대표부(USTR)<sup>47)</sup>는 2018년 6월 15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세율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함<sup>48)</sup>

  -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미 무역 대표부에 중국 수입품 중 추가 관세 부과할 항목을 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미 무역 대표부는 2018년 4월 3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물품을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음
  - ▶ 이후 공청회를 거쳐 2018년 6월 15일 최종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 수입품을 선정하여 발표함
  
- 이번에 추가 관세 부과대상으로 선정된 수입품은 총 1,102개 품목으로 주로 첨단 및 로봇 기술 관련 제품, 산업용 기계, 신소재, 자동차임

  - ▶ 이는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기술유출 등 불공정한 관행으로 첨단, 혁신 기술 등의 산업에서 무역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임

46)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검색일자: 2018. 6. 28.)

47)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48) 미 무역 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une/ustr-issues-tariffs-chinese-products>, (검색일자: 2018. 6. 27.)

- ‘미국 통상법 제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으로 판단되는 경우 무역 상대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추가 관세 부과대상으로 선정된 중국 수입품은 ‘Made in china 2025’에서 중국이 향후 중점산업으로 정한 산업에 속하는 물품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통해 첨단, 혁신 기술분야에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함
  - 미국 무역 대표부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제재가 필요함을 언급함
-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수입품 총 1,102개의 품목 중 818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6일부터 과세하며, 나머지 284개의 품목은 추가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 추가 관세가 우선적으로 부과되는 818개 품목의 수입규모는 340억달러이며, 향후 검토를 거친 후 추가 관세를 부과할 284개 품목의 수입규모는 160억달러임
-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세율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함<sup>49)</sup>
- ▶ 중국 재무부는 2018년 6월 15일 동일한 규모로 미국 수입품에 대해 500억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추가 관세 부과대상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자동차 등임
  -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2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대상 중국 수입품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체제를 개선하지 않거나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안을 입법할 것임을 언급함

49)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president-regarding-trade-china/>, (검색일자: 2018. 6. 27.)

## 2 캐나다

### 가. 대마초 과세 및 세수배분 관련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 발표

[조세동향 18-01호]

- 캐나다 재무부는 2017년 12월 11일 개인용 대마초(recreational cannabis)에 대한 소비세 과세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소비세수액 배분에 대해 주·지방정부와 합의하였음을 발표함<sup>50)</sup>

  - ▶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2018년 7월부터 개인용 대마초가 합법화됨에 따라 2017년 10월 3일 대마초 과세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sup>51)</sup>
  - ▶ 이번에 합의한 소비세 과세 규정과 소비세수액 배분 규정은 과세 시행 시기인 2018년 7월부터 2년 동안만 적용됨
  
-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비세를 합해서 1g당 1캐나다달러 또는 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총소비세 한도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며,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각자의 구체적인 과세율은 확정되지 않음
  - ▶ 이번 발표 시 납세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는 소비세 과세 표준을 동일하게 하며, 주·지방정부의 소비세율은 연방정부 세율의 고정비율로 한다는 기본 방침도 함께 발표함
  
- 대마초 소비세 과세로 발생하는 총세수 중 75%는 주·지방정부에, 25%는 연방정부에 배분됨

  - ▶ 연방정부가 분배받는 소비세수액은 연간 10억캐나다달러로 제한하고, 초과되는 세수액은 주·지방정부에 배분할 것임을 발표함

50) 캐나다 재무부,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17/12/backgrounder\\_federal-provincial-territorialagreementoncannabista.html](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17/12/backgrounder_federal-provincial-territorialagreementoncannabista.html), (검색일자: 2018. 1. 31.)

51)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17-10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이는 대마초 합법화 시행으로 각 주정부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임<sup>52)</sup>

## 나. 2018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8-03호]

- 캐나다 재무장관은 2018년 2월 27일 과세 형평성 제고, 경제성장, 중산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부터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함<sup>53)</sup>
  - ▶ 캐나다는 수년간 중산층 강화 및 캐나다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를 지속해옴
  - ▶ 각 세법개정 항목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1) 법인세

- 법인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규모법인의 경감세율 인하, 소규모법인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혜택 제한, 클린에너지 지원을 위한 가속상각 확대 등을 제안함
- 소규모법인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2018년부터 10%로, 2019년부터 9%로 인하함
  - ▶ 소규모법인은 연간 사업소득이 50만캐나다달러 미만인 법인으로,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은 15%인 반면 소규모법인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은 10.5%임
- 소규모법인은 사업소득의 50만캐나다달러까지 경감세율이 적용되나, 수동소득에 따라 경감세율 적용구간을 축소할 것을 제안함
  - ▶ 이는 고소득 개인 납세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수동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5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인하되며, 수동소득이 15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52) Reuters(<https://ca.reuters.com/article/domesticNews/idCAKBN1E52LT-OCADN>, 검색일자: 2018. 1. 26.)

53) 캐나다 재무부, <https://www.budget.gc.ca/2018/docs/download-telecharger/index-en.html>, (검색일자: 2018. 3. 16.)

- 예로, 연간 수익률을 2%로 가정 시 수동자산 보유액이 7,500만캐나다달러인 경우, 연간 수익률을 5%로 가정 시 수동자산 보유액이 3천만캐나다달러인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그림 1-1] 수동자산 보유금액별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 기준금액

(단위: CAD)

Business Income	Passive Assets							
	1,000,000 <sup>1)</sup> / 2,500,000 <sup>2)</sup>	1,500,000 <sup>1)</sup> / 3,750,000 <sup>2)</sup>	2,000,000 <sup>1)</sup> / 5,000,000 <sup>2)</sup>	2,500,000 <sup>1)</sup> / 6,250,000 <sup>2)</sup>	3,000,000 <sup>1)</sup> / 7,500,000 <sup>2)</sup>			
50,000	NOT AFFECTED				0			
75,000					0			
100,000					0			
200,000					125,000	0		
300,000					250,000	125,000	0	
400,000					375,000	250,000	125,000	0
500,000					375,000	250,000	125,000	0

주: Assumes that the corporation has less than \$10 million of taxable capital

1) Assuming a five-per-cent rate of return

2) Assuming a two-per-cent rate of return

자료: 캐나다 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Table 3, 2018, 2, 27.

■ 가속상각이 허용되는 클린에너지 장비 구입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함

- ▶ 현행 규정에서는 2020년까지 클린에너지 생성 및 전환을 위한 장비 투자 시, 구입연도에 투자금액의 50% 비용상각을 허용함

## 2) 개인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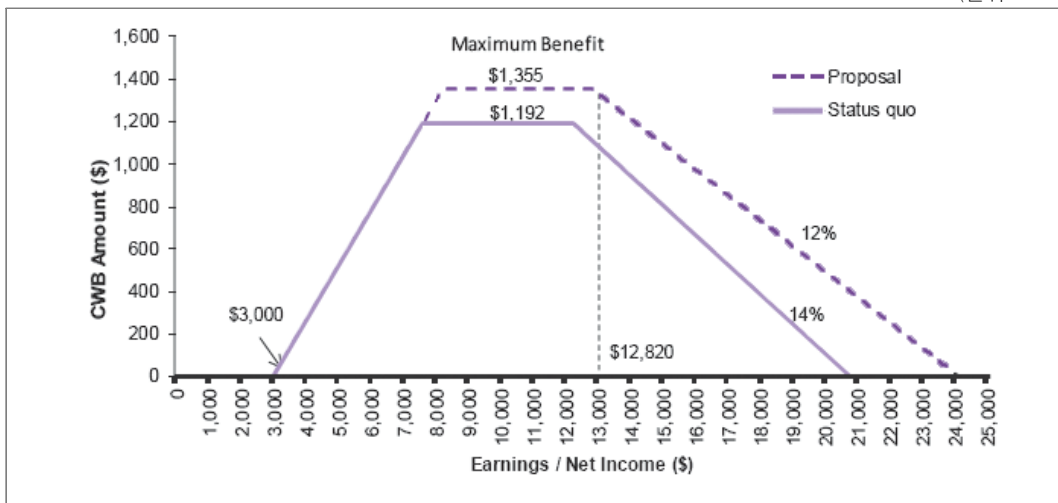
■ 개인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반려동물 관련 비용 확대, 신탁의 신고의무 부여 등을 제안함

■ 근로장려금(Working Income Tax Benefit)의 최대 수령가능금액 및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을 확대함

- ▶ 캐나다 재무부는 2017년 가을 경제성명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추가적으로 5억캐나다 달러의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 ▶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수령가능금액을 기존 1,192캐나다달러에서 1,355캐나다달러로 인상하였으며,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소득기준 금액을 12,820캐나다달러로 상향할 것을 제안함<sup>54)</sup>
- ▶ 또한, 기존에는 소득금액이 2만천캐나다달러인 납세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 2만4천캐나다달러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짐<sup>55)</sup>
- ▶ 근로장려금 인상안은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그림 1-2] 캐나다의 근로장려금 인상안(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신고자 기준)

(단위: C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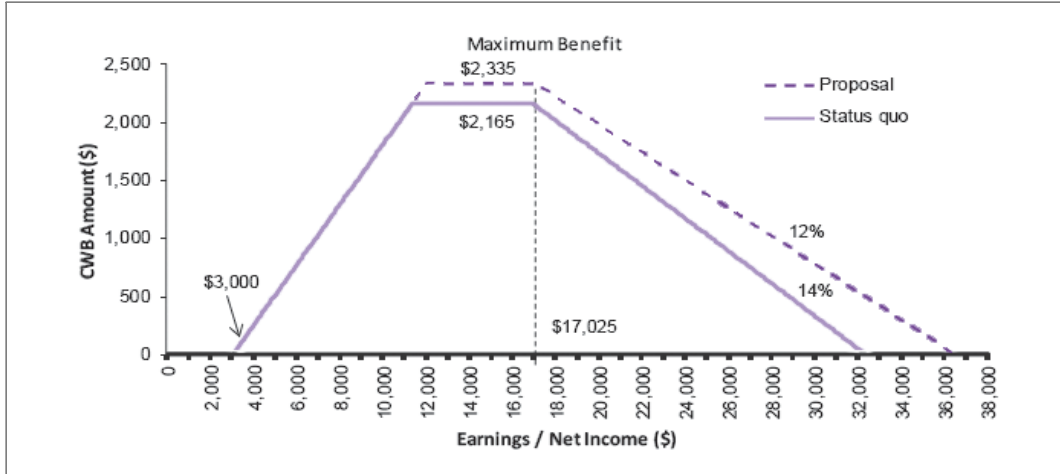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Chart 1, 2018, 2, 27.

54)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신고자 기준이며, 부부합산신고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신고자의 경우 기존 2,165캐나다달러에서 2,355캐나다달러로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가능금액을 상향함

55)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신고자 기준이며, 부부합산신고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신고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지는 소득금액 기준은 기존 3만2천캐나다달러에서 3만6천캐나다달러로 인상됨

[그림 1-3] 캐나다의 근로장려금 인상안(가장, 부부합산신고자 기준)

(단위: CAD)



자료: 캐나다 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Chart 2, 2018. 2. 27.

-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반려동물의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 트라우마, 야경증과 같은 정신장애가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히 훈련된 동물만 해당됨
  - ▶ 단순한 심신안정을 위한 반려동물 비용 및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신탁의 경우 2021년부터 신탁인 정보, 신탁 수익자, 신탁 설계인의 정보를 매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
  - ▶ 신탁 수익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현행 규정에서는 신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나 신탁 수익자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음
  - ▶ 단, 신탁이 설립된지 3개월 미만이거나 총자산이 5만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등 특정신탁의 경우 신탁 수익자 관련 정보 보고 의무가 면제됨

### 3) 소비세

- 소비세 개정안으로 투자유한회사에 파트너가 제공한 관리 및 행정서비스는 공정가치에 따라 판매세(GST/HST)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 캐나다 정부는 2017년 9월 8일 투자유한회사에 제공한 관리 및 행정 서비스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공정가치에 따라 판매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규정함
-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은 5년마다 물가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던 것을 매년 인상하고, 담배 200개비당 추가 1캐나다달러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개인사용 목적의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는 종량세 및 종가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율 및 주정부와 세수배분안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을 대부분 차용함<sup>56)</sup>
- ▶ 2017년 12월 발표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는 1g당 1캐나다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총세수 중 75%는 주·지방정부에, 25%는 연방정부에 배분할 것을 발표함

〈표 1-2〉 캐나다의 개인용 대마초 과세방안

(단위: CAD)

	연방세율 (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		주·지방정부의 추가 세율 (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	
	연방단일세율	종가세	연방단일세율	종가세
Flower	0.25/gram	제품 가격의 2.5%	0.75/gram	제품가격의 7.5%
Trim	0.075/gram		0.225/gram	
Seed	0.25/seed		0.75/seed	
Seeding	0.25/seeding		0.75/seeding	

자료: 캐나다 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Table 5, 2018. 2. 27.

**다. 디지털상품 과세 도입 권고**

[조세동향 18-05호]

-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상임위원회(The Canadian Parliament'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는 연방정부에 외국판매자가 캐나다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상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함<sup>57)58)</sup>

56) 2017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 캐나다 대마초 과세 및 세수배분 관련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 발표』, 2018. 2. 15에 기술되어 있음

- ▶ 지난 4월 26일 국제무역상임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한 정책 보고서<sup>59)</sup>를 발표함
    - 동 보고서의 권고사항에는 해외 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하여 캐나다 내에서 디지털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 상기 보고서에서는 OECD의 BEPS프로젝트 Action 1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온라인 판매의 경우 소득을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재화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 ▶ 또한 국내외 판매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무형의 재화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함
    - 참고로 퀘벡 주정부 차원에서는 해외 업체가 판매하는 디지털서비스 재화에 대한 소비세 과세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국제무역상임위원회는 오는 9월 17일 가을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재무부에 디지털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등 공식적인 대응책을 요청함
- ▶ 재무부 대변인은 시한까지 OECD의 BEPS프로젝트 Action 1에 부합하는 과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힘

57) Tax Notes, "Lawmakers Push Government to Tax Digital Goods," TAX NOTES INTERNATIONAL, Vol. 90, No. 7, 2018. 5. 7, pp. 774~775.

58) Thomson Reuters, <https://tax.thomsonreuters.com/blog/canada-releases-recommendations-on-taxation-of-digital-economy>, (검색 일자: 2018. 5. 25.)

59) The 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Certain Trade-Related Priorities of Canada's Firms," 2018. 4. 26.

## II 유럽

### 1 그리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의회 통과

[조세동향 18-06호]

- 그리스 의회는 2018년 6월 13일에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018년 6월 14일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sup>60)</sup>
  -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임

#### 1) 소득세

-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1) 거주지 판단기준 해석 규정의 명확화, 2) 저소득 일용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 영구화, 3) 비과세된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폐지, 4) 그리스 국채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특별 연대 기여금 과세대상에서 제외, 5)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또는 관광안내원의 근로소득은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있음<sup>61)</sup>
- 거주지 판단기준이 되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여부”의 해석을 기존의 “개인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서 “개인적·경제적·사회적 관계가 모두 있는 경우”로 개정함
  - ▶ 그리스 세법에서는 그리스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며, 이번 개정은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해석규정을 OECD 소득 및 자본 모델 협약

60) Greece - Draft law amending Income Tax Code, Tax Procedural Code and VAT Code, as well as including other provisions - gazetted(21 June 2018), News IBFD.

61) Greece - Draft law amending various provisions of Income Tax Code(part A) - submitted to parliament (11 June 2018), News IBFD.  
Greece - Draft law amending various provisions of Income Tax Code(part B) - submitted to parliament (12 June 2018), News IBFD.

및 해설(2017)에 따라 개정된 것임

- 저소득 일용 근로자의 일용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과세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규정을 일시적 규정에서 영구적 규정으로 변경함

  - ▶ 일용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 세액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리스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과세소득이 2만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1,900~2,100유로의 세액공제를 허용함<sup>62)</sup>
  - ▶ 이 세제혜택은 일용 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6천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간주 소득이 9,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용됨
    - 간주 소득은 납세자가 생활비 또는 자산 취득 등으로 소비한 금액을 기반으로 소득을 추정한 금액임<sup>63)</sup>
  
- 경영참여 면제제도 조항에 따라 EU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면제되는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함
  
- 이외에 그리스 국채 교환으로 발생한 이익은 특별 연대 기여금(special solidarity contribution)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기간이 최대 1년 이하인 근로자 및 관광안 내인에게 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개정함

  - ▶ 특별 연대 기여금은 연간 순소득이 1만 2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따라 추가 0~1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 2) 부가가치세

- 특수관계인 간 재화 및 용역 공급 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액을 제한하도록 개정함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고정자산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 법상 영세사업자 판단을 위한 매출액 계산 시 제외함<sup>64)</sup>

62) C. Kypris, Greece - Individual Taxation sec. 1.8.3, Country Analyses IBFD(accessed 28 June 2018).

63) EY,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5~2016, p. 496.

64) Greece - Draft law amending various provisions of Tax Procedural and VAT codes - submitted to parliament(11 June 2018), News IBFD.

- ▶ 현행 규정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연간 거래금액이 1만유로 이하인 경우 영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sup>65)</sup>

### 3) 법인세

- 기업의 주식 지분을 또는 의결권이 33% 이상 변동 시, 최소 50%의 매출액 변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해당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함
  - ▶ 현행 규정에서는 기업의 주식 지분을 또는 의결권이 33% 이상 변동된 경우, 사업목적으로 지분이 변동된 것이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33% 이상 지분 변동 시 매출액도 함께 변동되어야 사업목적에 따라 지분이 변동한 것으로 보고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함
  - ▶ 이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전일제 근로자 고용촉진 목적으로 신규 고용된 전일제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기업 부담분 중 50%를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 2 네덜란드

### 가.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패키지 발표

[조세동향 18-03호]

- 네덜란드는 2018년 2월 23일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패키지를 발표함<sup>66)</sup>
  - ▶ 이번 조치는 EU 조세회피 방지 지침(Anti-Avoidance Directive)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65) S. Papahimonas, Greece - Value Added Tax, Section 12., Topical Analyses IBFD(검색일자: 2018. 6. 28.)

66) Netherlands; European Union; OECD - Council of Ministers agrees on package to combat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28 Feb. 2018), News IBFD.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의 합의를 거쳐 발표되었으며, 2018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계획임

- 이번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패키지에는 이자비용공제제한, CFC제도, 혼성불일치 해소, 조세조약 등 세법 남용 방지, 지주회사의 실질 요건, 이전가격 규정 등이 포함됨
- 이자비용 공제제한(earning stripping rule)과 관련해서는 EU 지침에 따라 EBIDTA<sup>67)</sup>의 30%를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함
  - ▶ EU 지침에 따라 공제가능한 이자비용의 한도를 EBIDTA의 30%로 제한하는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외는 허용하지 않음
  - ▶ EU 지침에서는 3백만유로 이하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네덜란드는 공제 허용 금액을 1백만유로로 함
  - ▶ 2020년에는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 요건을 도입할 계획임
- EU 지침에 따라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규정을 도입하기로 함
  - ▶ CFC규정이 적용되는 해외 자회사는 ① 네덜란드 거주자에 의해 해당 회사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소유되고, ② 해당 해외 자회사의 적용 세율이 네덜란드 적용 세율보다 낮아야 함
  - ▶ 다만 위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실질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연간 지급 총급여액이 1십만유로 이상이며 최소 24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보유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해소와 관련해서는 EU 지침을 따르되, 2018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임
  - ▶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조세조약에 계약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약상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임
- 조세조약 및 내국세법 남용과 관련해서는 조세피난처 등으로의 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와 조세조약상 남용방지규정 도입 등의 조치를 계획함

67)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s and amortizations

- ▶ 직간접적으로 저세율국가 또는 조세피난처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2021년부터 보다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은 2019년 발의할 예정임
- ▶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에 남용방지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관련 방안을 2018년 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 지주회사의 실질요건과 관련해서는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을 더욱 강화하여 적용하고 해외에 소재한 지주회사 중 실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방안을 계획함
  - ▶ 지주회사의 실질요건 중 일부는 상기 CFC규정에서 논의한 급여와 사무실 요건 등을 포함할 예정임
  - ▶ 또한, 해외 지주에 대한 사전예규(advance ruling) 발급과 경영참가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적용요건도 보다 강화할 계획임
- 이전가격과 관련해서는 2017년 OECD 이전가격지침을 준용하여 현행 네덜란드 이전가격규정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임

#### 나. 연결납세제도 적용 부인 거래 관련 법안 발표

[조세동향 18-06호]

- 네덜란드 정부는 2018년 6월 2일 연결납세대상 관계사 간 거래 중 일부 거래에 대해서 연결납세적용을 부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함<sup>68)</sup>
  - ▶ 본 개정안은 2017년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조치로, 네덜란드 하원 결의를 위해 제출됨
  - ▶ 입법이 완료되면, 2017년 10월 25일 거래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본 개정안은 연결납세대상 회사 간 거래 중 연결납세적용을 부인하는 거래로 (i) 세원 잠식(base erosion) 거래와 (ii) 경영참여를 위한 과도한 차입(excessive participation debt) 거래 등을 제시함

68) Netherlands - Legislative proposal to amend fiscal unity regime published(06 June 2018), News IBFD.

- ▶ 원칙적으로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연결납세대상 관계사 간 거래의 손익은 상계되어 납부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연결납세적용이 부인되는 거래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세원잠식 거래란 배당지급, 증자, 지분 취득 등 특정 거래(tainted transaction)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사로부터 차입하는 거래로, 동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다만, 상기 이자비용 중 연간 10만유로 이하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을 허용함
- 경영참여(participation exemption)<sup>69)</sup>를 위한 과도한 차입거래란 자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를 위해 차입하는 거래로, 동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다만, 상기 이자비용 중 연간 75만유로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을 허용하며, 자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가 아닌 자회사 사업운영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은 부인 대상에서 제외함

### 3 노르웨이 - 2018년 수정 예산안 발의

[조세동향 18-05호]

- 노르웨이 정부는 2018년 5월 18일자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담은 수정 예산안(Revised 2018 Budget)을 의회에 제출함<sup>70)</sup>
  -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및 외국인근로자 과세제도 개정,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일부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인세) OECD 지침을 반영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제출 의무자의 범위를 수정함

69) 네덜란드의 경영참여면제제도는 적격 지분 소유에 대해서는 지분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지분 양도 소득 등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70)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5-17\\_no\\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5-17_no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5. 28.)  
 노르웨이 정부, <https://www.statsbudsjettet.no/Revidert-budsjett-2018/>, (검색일자: 2018. 5. 28.)

- ▶ 현행법에서는 노르웨이 법인의 모회사가 자동적 정보교환 협정 미체결 국가에 소재한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가함
  - ▶ OECD BEPS Action 13에서는 그러한 부가적 제출 의무는 해당 모회사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방침임
    - 노르웨이의 현행 규정은 OECD 지침과 비교할 때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함
  - ▶ 동 개정안에서는 OECD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일부 축소함
    - 노르웨이 법인은 그 모회사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할 경우에만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개정
    -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소득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과세 제도를 간편화함
- ▶ 단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25%의 단일세율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이 경우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총소득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 2019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가능함
- (부가가치세) 전자출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확대함
- ▶ 노르웨이는 2016년 3월부터 전자출판물 중 전자신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음
    - 종이출판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어 왔음
  - ▶ 본 개정안에서는 전자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물품세)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에 대한 물품세(excise duty)를 일부 경감함
- ▶ 연간 맥주 제조량 50만리터 이하인 소규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일반 맥주에 대하여 물품세를 경감함
    - 알콜 도수 3.7~4.7% 사이의 맥주에 적용 가능함

- ▶ 현행 물품세율은 1리터당 22.07크로네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량에 따라 단계별로 경감률에 차등을 두어 아래와 같이 물품세율을 적용함

〈표 II-1〉 맥주 물품세율 개정안

(단위: 리터, 크로네, %)

생산량(리터)	변경 물품세율(1리터당 크로네)	경감률
~ 50,000	17.66	20
50,000 이상 100,000 미만인 경우	18.76	15
100,000 이상 150,000 미만인 경우	19.86	10
10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경우	20.97	5

## 4 덴마크

### 가.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조세동향 18-02호]

- 덴마크 과세당국은 2018년 2월 2일자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함<sup>71)</sup>
  - ▶ 의회 각 정당들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연구개발 및 전기난방 등과 관련한 조세지원 방안에 합의함
  - ▶ 지식산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 확대, 신규 고용 증대 등을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됨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에서 110%로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71) Tax Notes International, Vol. 89, No. 7, February 12, 2018, p. 644.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2-12\\_dk\\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2-12_dk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2. 26.)

- ▶ 현재 법인세 목적상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대하여 10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 개정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할 것이며, 이러한 세제 지원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약 7천만덴마크크로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101.5%(2019년) → 103%(2020년) → 105%(2021년) → 108%(2025년) → 110%(2026년)
- 이외에도 난방용 전기(electricity for heating)에 부과되는 세율을 2018년 5월 1일부터 일부 인하할 계획임
  - ▶ 덴마크는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에너지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 2018년 5월 1일부터 1kwh당 0.15덴마크크로네에 해당하는 만큼 난방용 전기세를 인하할 계획임
  - ▶ 세율 인하로 인해 평균적인 일반 가정당 연간 약 650덴마크크로네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 나. 법인세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

[조세동향 18-06호]

- 2018년 6월 9일자로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일부 개정 법안(Law No. 722, 724, 725)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됨<sup>72)</sup>
  - ▶ 투자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관련 법인세 혜택 확대, 비거주 투자자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 완화 및 개인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한 개정법안이 포함됨
- (법인세 소득공제) 기업들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6년 110%까지 단계별로 인상함

72)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6-13\\_dk\\_3.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6-13_dk_3.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6. 20.)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6-13\\_dk\\_2.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6-13_dk_2.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6. 20.)

덴마크 국세청(<https://skat.dk/SKAT.aspx?oid=2245165>, 검색일자: 2018. 6. 28.)

- ▶ 지식산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 확대, 신규 고용 증대 등을 위하여 2018년도 2월에 정부가 입안하였으며 큰 변화 없이 의회 통과됨
  - ▶ 현재 법인세 목적상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10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 개정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됨
    - 101.5%(2018년 및 2019년) → 103%(2020년) → 105%(2021년 및 2022년) → 108%(2023년-2025년) → 110%(2026년)
- (법인세 고정사업장) 덴마크 투자펀드를 통해 수동적 투자활동을 하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특칙을 도입함
- ▶ 기존 법령에서는 비거주자가 덴마크 투자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 만약 당해 펀드가 덴마크에 사업장 또는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었음
  - ▶ 개정 법령에서는 비거주자가 도관체(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하는 덴마크 투자펀드를 통해 취득하는 수동소득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 과세를 배제하는 특칙을 적용함
    - 외국 투자자의 덴마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임
  - ▶ 다만 당해 비거주자는 수동적 소득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동 비거주자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
    - 동 비거주자 또는 그 관계회사는 당해 펀드의 투자와 관련된 사업을 덴마크 내에서 수행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개인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2018년 9.5%에서 2022년 10.6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
- ▶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비율 및 최대 공제가능 한도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함

〈표 11-2〉 근로소득 소득공제 비율 및 공제가능 한도

(단위: %, 크로네)

연도	소득공제 비율	공제가능 한도
2018	9.50	33,300
2019	10.10	35,400
2020	10.50	36,700
2021	10.60	37,000
2022	10.65	37,400

## 5 룩셈부르크 - 2018 세법개정안 발효

[조세동향 18-01호]

- 룩셈부르크의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2017년 12월 20일자로 확정, 공포됨<sup>73)</sup>
  - ▶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개인의 납세 유연성 증대, 친환경 자동차 관련 지원 등의 조치가 포함됨

### 가. 법인세

- 법인이 외부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 취득원가의 일정 비율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 기업의 디지털 변혁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
  - ▶ 기업이 외부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73)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0-12\\_lu\\_1.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7-10-12\\_lu\\_1](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0-12_lu_1.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7-10-12_lu_1), 검색일자: 2018. 1. 26.)  
 PwC(<https://www.pwc.lu/en/tax-consulting/docs/pwc-tax-151217.pdf>, 검색일자: 2018. 1. 26.)

- 15만유로까지는 취득원가의 8%,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 해당 세액공제금액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탄소배출량이 없는 9인승 이하 신규 승용차의 취득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
- ▶ 일반적으로 자동차 취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개정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승용차 취득에 대해서는 관련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해짐
- 9인승 이하의 승용차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
- 전기 또는 수소전지에 의해 운행하며 탄소배출이 없는(zero emissions) 차량

## 나. 개인소득세

- 기혼 납세자는 배우자 합산 과세 대신 개별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연도 종료 이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
- ▶ 기존 2016년 말 세법개정에 의해 기혼 납세자(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해당)는 2018년도부터 개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 금번 개정세법에서는 개별과세 신청 요건 및 기한 등을 명시함
- 개별과세 신청은 두 배우자가 각각 제출해야 함
- 적용대상 과세연도 말 이후 3월 이내(예: 2018년도의 경우 2019년 3월 말까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비거주자에 대해 룩셈부르크 거주자와 같은 과세취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 ▶ 기존 법령상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신청에 따라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즉,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 기혼 부부로서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전 세계 소득 중 90% 이상이 룩셈부르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 개정 법령에서는 소득 요건 및 배우자 요건을 완화하여 비거주자의 신청 가능성을 확대함
- ▶ 소득 비중 90%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에서 근로를 시작한 후 최초 50일 동안의 소득은 룩셈부르크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
  - 동 소득 비중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연간 국외소득이 1만 3천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정 요건하에 신청 가능
- 탄소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개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제공함
  - ▶ 2017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하는 저탄소배출 차량 구입에 대해 2,500유로의 세금환급(tax rebate) 혜택을 제공
    - 탄소배출량이 50gmCO2/km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적용 가능<sup>74)</sup>

## 6 벨기에

### 가.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 최종 승인

[조세동향 18-01호]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sup>75)</sup>
  - ▶ 벨기에 정부는 2017년 10월 27일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을 승인함<sup>76)</sup>
  - ▶ 법인세 개정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됨

74) 참고로, 전적으로 전기 또는 수소 배터리에 의해 운행하는 승용차로서 탄소배출이 없는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5,000유로의 세금환급 혜택을 시행하고 있음

75) KPMG(<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12/tmf-belgium-corporate-tax-reform.html>, 검색일자: 2018. 1. 26.)

76)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17-1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

- 2018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경감세율 인하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영참가소득 비과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R&D 인력 대상 확대, 대기업의 자본이득 과세 폐지가 있음
- 법인세율은 2020년까지 현행 33%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며, 2018년에는 29%로 인하함

  - ▶ 또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율도 3%에서 2%로 인하하여, 부가세율 합산 시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33.99%에서 29.58%로 인하됨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경감세율도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20%로 인상함

  - ▶ 현행 규정상 과세표준이 10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수익은 전액 비과세함

  - ▶ 개정 이전 규정에서는 해당 배당수익에 대해 95%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 ▶ 법인이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최소 2천5백만유로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에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봄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연구개발 인력(과학분야) 대상에 학사학위자를 포함함

  - ▶ 현행 규정에서는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과학분야 연구개발 인력(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원천징수세 중 80%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 ▶ 이번 개정으로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학사학위자로 확대한 것이며, 학사학위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의 40%만 면제가 가능함
  - ▶ 2020년부터 원천징수세 공제율은 80%로 인상함
- 대기업에 한해 1년 이상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capital gain)에 0.412%로 과세하던 규정을 폐지함

- ▶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은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나, 경영참가주의 양도소득은 별도의 세율로 과세함(〈표 II-3〉 참조)<sup>77)</sup>
- ▶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참가주 양도소득에 비과세하던 것을 대기업에도 허용하는 것임

〈표 II-3〉 현행 벨기에의 기업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구분	현행 세율	개정 세율
일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좌동
경영참가 목적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25.75%(추가과세율 3% 포함)	좌동
경영참가 목적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대기업: 0.412%(추가과세율 3% 포함) <sup>1)</sup> 중소기업 : 비과세	대기업: 비과세 중소기업: 비과세

주: 1)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시행함  
 자료: G. Cruysmans, Belgium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검색일자: 2018. 1. 16.)

## 2)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sup>78)</sup>

- 2020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인세율 재인하,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도입, 고정사업장 정의 BEPS 규정에 따라 확대, 회사용 차량 비용공제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공제가 있음
  - ▶ 법인세율을 현행 33%에서 2018년에 29%, 2020년에는 25%로 인하할 예정임
    - 법인세율에 부과되는 부가세율은 현행 3%에서 2018년 2%로 인하되며, 2020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임
  -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1, 2)을 이행하여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금액과 3백만달러 중 큰 금액의 공제를 제한함
  - ▶ 고정사업장 범위에 BEPS Action 1, 7에서 제시하는 대리인(commissionaire)도 포함함
  - ▶ 회사 차량 관련 비용 공제범위는 50~100%이며, 전기차의 경우 100% 비용공제함

77) G. Cruysmans, Belgium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검색일자: 2018. 1. 16.)

78) KPMG(<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8/01/tmf-belgium-corporate-tax-measures-effective-beginning-2020.html>, 검색일자: 2018. 1. 16.)

## 나. 증권계좌세(securities account tax) 도입안 의회 승인

[조세동향 18-02호]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2월 1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권 보유금액에 과세하는 ‘증권 계좌세(securities account tax)’ 도입안(draft bill)을 최종 승인함<sup>79)</sup>

  - ▶ 벨기에 재무부는 2017년 11월 14일 증권계좌세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번 의회의 승인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 이번에 새로 도입한 증권계좌세는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부유세로 고소득 개인납세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sup>80)81)</sup>
  
- 증권계좌세는 증권계좌의 연간 평균잔액이 5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평균잔액의 0.15%를 과세하는 것임

  - ▶ 과세대상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투자회사 지분, 장기에금증서(savings certificates), 워런트(warrant) 등이 포함됨
  - ▶ 생명보험계약, 연금저축과 관련된 금융상품과 옵션,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 연간 평균잔액은 분기별로 계산된 잔액의 평균값으로 함
  
- 벨기에 거주자는 국내·외 증권계좌 잔액에 대해, 비거주자는 벨기에 증권계좌 잔액을 대상으로 과세되며, 개인이 보유한 증권계좌의 평균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

  - ▶ 평균잔액의 기산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함
    - 2018년은 예외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함
  
- 국내계좌의 경우 은행,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증권계좌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해외계좌의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79) Belgium - Draft bill on annual securities account tax adopted by parliament(2. Feb. 2018), News IBFD.

80) 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81) Deloitte, "Belgian tax on securities account: Draft law adopted," 2018. 2. 2.

- ▶ 납세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합산잔액이 5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각 금융기관에 본인이 증권계좌세 납부대상임을 공지하고, 각 금융기관은 납세자 증권계좌 잔액의 0.15%를 징수하여 납부함(〈사례 참조〉)
- ▶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증권계좌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사례〉**

벨기에 거주자 X가 벨기에 은행의 2개의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A은행: 30만유로
- B은행: 25만유로
- 총 55만유로

**〈납부방법〉**

납세자 X의 총증권계좌 잔액이 50만유로를 초과하므로 증권계좌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 X는 두 가지의 증권계좌세 납부방법 중 선택이 가능함

- 1) 납세자 X는 A은행, B은행에 각각 증권계좌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공지하고, 은행 A는 450유로(30만유로 × 0.15%)를, 은행 B는 375유로(25만유로 × 0.15%)를 원천징수함
- 2) 납세자가 은행에 증권계좌세 납부대상자임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X가 직접 증권계좌세 825유로(55만유로 × 0.15%)를 신고하고 납부함

자료: Deloitte, "Belgian tax on securities account: Draft law adopted," 2018. 2. 2.

▣ 이번 증권계좌세 도입안에 대한 최종 법안은 향후 발표될 예정임

**다. 공정세 과세 위험 판결 및 폐지**

[조세동향 18-03호]

- ▣ 벨기에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2018년 3월 1일 공정세 과세는 위헌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공정세(Fairness Tax) 과세를 폐지하도록 규정함<sup>82)</sup>
- ▶ 공정세는 2013년부터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자비용 공제 및 이월결손금 공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지급한 배당금액의 5.15%만큼 과세하는 것임

82) Belgium - Constitutional Court: fairness tax nullified as of assessment year 2019(2, Mar, 2018), News IBFD.

- 단, 기업의 R&D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특허소득, 투자금액, 배당소득 공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는 공정세를 적용하지 않음

■ 2017년 5월 17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벨기에의 공정세 과세는 위헌이라 판결한 바 있으며, 벨기에 헌법재판소도 공평세는 헌법 규정상 공평성 요건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정세 과세제도를 폐지함<sup>83)</sup>

- ▶ 공정세 과세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를 소득 공제하는 EU의 ‘모회사-자회사 지침’ 제4조를 위반함
  -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재배당하는 경우 배당지급액에 대해 공평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모회사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5% 이상의 세율로 과세됨
- ▶ 공정세 과세는 특허소득, 투자금액, 또는 배당소득 공제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특허소득 또는 투자금액이 적은 기업의 공정세 부담이 더 커지는 불평등이 발생함

■ 이번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공평세 과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벨기에 모회사가 지급받은 배당금을 재배당한 경우에 한해 환급을 허용함

- ▶ 벨기에 기업이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재배당한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을 허용함

## 라. 선납세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납부요율 인상

[조세동향 18-04호]

■ 벨기에 국세청은 2018년 4월 9일 법인세 선납세금 부족분에 대한 인상된 추가납부(surcharge)요율 관련 규정을 관보에 게재함<sup>84)</sup>

- ▶ 벨기에에는 분기별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납세액이 확정세액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납부의무가 발생함

83)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belgian-constitutional-court-annuls-fairness-tax-limits-recovery-of-unduly-paid-tax>, (검색일자: 2018. 3. 30.)

84)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4-11\\_be\\_1.html&WT.z\\_nav=rssfee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4-11_be_1.html&WT.z_nav=rssfeed), (검색일자: 2018. 4. 23.)

- ▶ 선납금액에 대해서는 시점별로 일정률의 공제금액(Credit)을 부여하며, 납부할 세액에 추가납부요율을 곱한 금액이 선납시점별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함
  - 선납시점이 빠를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음
- ▶ 만약 선납에 따른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에 추가납부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월 또는 환급이 가능함
- ▶ 2017년까지 추가납부요율은 2.25%였으나, 2018년부터 6.75%로 인상됨
  - 추가납부요율 인상으로 선납시점별 공제율도 인상됨
- ▶ 분기별 선납일정은 납세자의 회계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12월 20일임

〈표 II-4〉 선납시점별 공제율

(단위: %)

선납시점	개정 전 공제율	개정 후 공제율
1분기(2018. 4. 10.)	3	9
2분기(2018. 7. 10.)	2.5	7.5
3분기(2018. 10. 10.)	2	6
4분기(2018. 12. 20.)	1.5	4.5

자료: IBFD, Belgiu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sec. 1, 11. 4.

- 선납세액의 부족액이 80유로 미만이거나 확정세액의 0.5%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추가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과세최저한은 폐지됨
  - ▶ 과세최저한과 낮은 추가납부요율로 인하여 선납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므로 금번 개정은 선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임
  - ▶ 개정 규정은 2018년 분기별 선납부터 적용되며, 2018년 4월 10일 선납분부터 인상된 추가납부요율의 적용대상임

## 7 스웨덴

### 가.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 발행

[조세동향 18-02호]

- 스웨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작성 의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지침(No.202 521135-17/111)을 2018년 1월 15일자로 발행함<sup>85)</sup>

  - ▶ 동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 중, 매출액 기준 및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발행됨
  
- 스웨덴 모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 판단에 있어 활용되는 매출액 기준은 과세연도의 길이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고정된 금액임을 확인함

  - ▶ 기본적으로 해당 다국적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70억스웨덴크로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음
  - ▶ 단, 매출액 70억스웨덴크로나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가 12개월보다 길거나 짧더라도 이를 월할 조정하지 아니함
    - 즉, 해당 매출액 기준은 과세연도의 길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금액임
  
- 직전연도에는 최종 모회사가 아니었으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분할된 기업그룹의 모회사가 된 경우에도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 다국적기업그룹 내 일부 부문을 분사하여 새로운 기업그룹을 형성한 경우, 신규 기업그룹의 모회사는 비록 직전 과세연도에는 최종 모회사가 아니었더라도 당해연도에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음
    - OECD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변경 시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스웨덴 과세당국은

85)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30\\_se\\_2.html&WT.z\\_nav=Pagin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30_se_2.html&WT.z_nav=Pagination), 검색일자: 2018. 2. 26.)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367374.html?date=2018-01-15>, 검색일자: 2018. 2. 26.)

신규 기업그룹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

## 나. 항공세 과세 예정

[조세동향 18-03호]

- 스웨덴에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항공세(flight tax)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sup>86)</sup>

  - ▶ 2017년 11월 30일자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항공세 시행 예정일이 2018년 4월 1일에 도래함
  - ▶ 항공기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됨
- 항공세는 스웨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운항에 대해 승객당 일정 금액으로 산출됨

  - ▶ 스웨덴 소재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 운항에 대하여 운행거리에 따라 승객 1인당 60, 250 또는 450스웨덴크로네에 달하는 항공세가 차등 적용됨
  - ▶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에 모두 적용되며 항공사를 납세의무자로 함
    - 단, 10명 이상 승객 운송용으로 허가된 항공기에 대하여 적용됨
- 승객의 연령이나 구성, 운항 취소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항공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탑승객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2세 미만의 유아 또는 운항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
    - 스웨덴 내 공항에 중간 기착(transit)하거나 24시간 이내에 다른 비행기로 경유(transfer)하는 승객일 경우
  - ▶ 항공기 결함,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항공세가 적용되지 않음

86)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3-15\\_se\\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3-15_se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3. 30.)

**다. 이자비용 및 법인세율 관련 세법개정안 발의**

[조세동향 18-05호]

- 이자비용 공제제한 및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18년 5월 3일자로 국회에 제출됨<sup>87)</sup>

  - ▶ 이자비용에 대한 일반적 공제 한도 도입, 혼성불일치 차입거래 제한, 법인세율 일부 인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 관련 세법개정안 확정 시 2019년 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될 것임
  
- 법인의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전이익(EBITDA)의 30%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함

  - ▶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순이자비용을 적용대상으로 함
  - ▶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전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30%를 한도로 순이자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 ▶ 한도 초과로 미공제된 이자비용은 이후 6년간 이월 공제 가능함
  - ▶ 5백만스웨덴크로네 이하의 순이자비용까지는 EBITDA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모두 공제 가능함
  
- 관계사 간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차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도입함

  - ▶ 혼성불일치 거래에 대한 OECD BEPS Action 2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응 방안을 입법 화함
  -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타방국에서도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거나 과세대상 이자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스웨덴 과세목적상 공제하지 않음

87)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5-04\\_se\\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5-04_se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5. 28.)  
 로이터통신,  
<https://www.reuters.com/article/sweden-government-tax/update-1-sweden-to-cut-corporate-tax-rate-below-eu-average-idUSL8N1R33JT>, (검색일자: 2018. 5. 28.)

-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021년 20.6%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함
  - ▶ 기업의 사업활동을 진작하고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고용 증대 등을 목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함
    - 스웨덴은 2009년(당시 28%) 이래로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음
  - ▶ 현행 22% → 21.4%(2019년부터) → 20.6%(2021년부터)로 2단계에 걸쳐 인하할 계획임

## 8 스페인

### 가. 직·간접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 확정

[조세동향 18-01호]

- 스페인 정부는 법인 및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sup>88)</sup>을 2017년 12월 30일자로 확정, 공포함<sup>89)</sup>

#### 1) 개인소득세

- 납세자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수령 및 식대 지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증액함
  - ▶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고용주 이외의 당사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 현물급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고용주의 지원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 훈련

88) Royal Decree 1074/2017, 1075/2017

89)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08\\_es\\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08_es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1. 26.)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02\\_es\\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02_es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1. 26.)  
 TAXAND(<https://www.taxand.com/wp-content/uploads/2018/01/Tax-Commentary-1-2018-Taxand.pdf>, 검색일자: 2018. 1. 26.)

- 교육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동 물품 대금을 부담하고 지원할 경우에도 비과세 현물급여에 해당(단, 이에 대한 고용주의 승인 필요)
  - ▶ 학자금 및 부대비용 등 장학금 수령에 대한 연간 비과세 한도가 증가됨
    - 일반적 장학금: 기존 3,000유로에서 6,000유로로 증가
    - 숙박·교통비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기존 1만 5천유로에서 1만 8천유로로 증가(해외 유학 장학금, 박사학위 장학금 등의 경우 추가 증액)
  - ▶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대 지원의 비과세 한도를 1일당 9유로에서 11유로로 증액
-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도입하고 가족 소득공제 대상 피부양자 범위를 일부 확대함
- ▶ 신주인수권(preemptive subscription right)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됨
    - 수탁기관이나 거래중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 가족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성년아동에 대한 보호관찰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아동을 공제대상 피부양자로 추가할 수 있음

## 2) 법인세

- 이전가격에 대한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작성 및 정보 제공 주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
- ▶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EU 규정<sup>90)</sup>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인세법령을 수정함
  - ▶ 기본적으로 스페인 법인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음
  - ▶ 동 개정 시행령에서는 외국거주자의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에 관한 의무사항을 추가적으로 명확히 함
- 스페인 거주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국가별 정보 제공 의무 및 예외 사항을 명시함

90) EU Directive 2016/881

- ▶ 기본적으로 최종 외국 모회사가 국가별 정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외국 회사의 스페인 자회사 또는 고정영업장도 국가별 정보 제공 의무가 있음
- ▶ 다만, 아래와 같이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회사가 해당 정보를 대신 제공할 경우 동 스페인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의 정보 제출 의무는 면제됨
  -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EU 소재 관계회사가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스페인 이외 타국 소재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한 경우<sup>91)</sup>

### 3) 부가가치세

- 전자적 방식으로 VAT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정보 제공의 간소화 및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함
- ▶ 스페인은 2017년 하반기부터 VAT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의 웹사이트로 전송하여 보관토록 하는 제도(Immediate Supply of Information, "SII")를 시행하고 있음
  - 월별 VAT 납세의무가 있는 대기업 등은 의무사항이며, 그 외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기본적인 VAT 신고 사항 및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전송해야 함
- ▶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세부 내역 대신 요약 거래정보(summary entries of invoices)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 분기별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SII 시스템 적용을 신청한 경우 VAT 납부 의무는 여전히 분기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VAT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여행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를 기본 감면 조건으로 요구함

91) 만약 대리 제출 회사가 EU 멤버국가 이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정보 교환 등 별도 조건이 부가됨

나. 2018년 예산안 발의

[조세동향 18-04호]

- 스페인 정부는 2018년 4월 3일자로 2018 예산안(Budget Bill for 2018)을 의회에 제출함<sup>92)</sup>

  - ▶ 특허박스 관련 법인세 개정, 개인소득세 경감, 간접세율 일부 수정 등의 세법개정안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 통과 시 2018년 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됨
  
- 특허박스 제도에 대한 OECD 지침을 따르기 위하여 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종류를 변경함

  - ▶ 현행 특허박스 제도는 기본적으로 특정 무형자산 사용권의 양도로 인한 법인 소득의 60%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함
  - ▶ OECD BEPS Action 5에서는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에 근거하여 실질적 연구개발 활동이 확인된 납세자만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함
    - 특허권, 소프트웨어, 기타 유용성 및 창의성이 높은 무형자산 등이 연계접근법의 취지에 부합함
  - ▶ 동 개정안에서는 OECD의 연계접근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대상 무형자산을 변경함
    - 기존에 적용대상이던 도면(plan), 비밀공식(secret formulas) 및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 등은 제외함
    - 고급 소프트웨어, 의약품 및 식물 제제에 대한 보충적 보호 인증(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은 특허박스 적용대상 무형자산으로 추가함
  
- 소득세 과세 기준금액 인상 및 가족 세액공제 확대,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 공제 인상 등을 통해 개인소득세 부담을 경감함

  - ▶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금액(threshold)이 기존에는 연간 총소득 기준 1만2천유로였으나 이를 1만4천유로로 인상함으로써 면제 범위가 확대됨

92)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4-13\\_es\\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4-13_es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4. 27.)

- ▶ 대가족에 해당하는 최저 요건<sup>93)</sup>을 초과하는 숫자의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추가 자녀 1인당 600유로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 ▶ 3세 미만 아이를 두고 있는 근로자 여성에 대해 해당 자녀당 세액공제 금액을 연간 1천유로만큼 인상함
  -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자녀당 연간 최대 1,200유로를 세액에서 공제함
  -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소정의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자녀당 연간 최대 2,200유로를 세액공제함
- ▶ 기타 과세소득이 연간 6,500유로 미만이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금액을 아래에서와 같이 최고 3,700유로에서 5,565유로까지 인상함
  - 기존에는 연간 근로소득 14,450유로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함

〈표 II-5〉 현행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액

(단위: 유로)

근로소득 구간	소득공제액
근로소득이 11,250 미만인 경우	3,700
근로소득이 11,250 이상 14,450 미만인 경우	$3,700 - 1.15625 \times (\text{근로소득} - 11,250)$
근로소득이 14,450 이상인 경우	0

- ▣ 개정안에서는 연간 근로소득 16,825유로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함

〈표 II-6〉 개정안의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액

(단위: 유로)

근로소득 구간	소득공제액
근로소득이 13,115 미만인 경우	5,565
근로소득이 13,115 이상 16,825 미만인 경우	$5,565 - 1.5 \times (\text{근로소득} - 13,115)$
근로소득이 16,825 이상인 경우	0

93) 일반적으로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자녀 3명 이상이면 대가족에 해당함

□ 극장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및 온실가스배출 과세세율을 일부 인하함

- ▶ 영화극장 입장권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21%에서 10%로 경감함
- ▶ 불화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배출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단위당 적용세율을 현행 0.020에서 0.015로 인하함

9 아일랜드

가. 애플 조세혜택금액 환수절차 진행

[조세동향 18-05회]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4월 24일 애플과 130억유로의 법인세를 환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발표함<sup>94)</sup>

- ▶ 상기 법인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6년 8월 결정한 것으로,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부당한 조세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명령함
- ▶ 상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아일랜드 정부를 압박함
- ▶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과 2017년 12월 4일 조세혜택금액의 환수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한 바 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납세일정과 방식을 합의함

□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의 합의에 따르면 세금 납부는 에스스로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애플은 체납 세금을 6월 말 이전부터 예치하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 ▶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명령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항소하였으며 승소할 경우 에스스로 계좌에

94)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4-24/apple-takes-next-step-toward-paying-eu13-billion-tax-demand>, (검색일자: 2018. 5. 25.)

예치된 금액을 돌려받게 됨

-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항소 절차가 올해 가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체납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최종납부가 완료된 시점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지난 5월 17일 미국 정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애플 측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을 근거로 이를 기각함<sup>95)</sup>

## 나. 설탕세 과세 승인

[조세동향 18-05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4월 24일 아일랜드의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는 설탕세를 승인함<sup>96)97)</sup>

- ▶ 아일랜드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예산안에서 설탕세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설탕세가 EU의 부당지원규정(State Aid Rule)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 확인을 위하여 지난 2월 설탕세 도입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지함

- 부당지원규정이란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7조에 따라 회원국의 지원으로 특정 회사나 특정 물품의 생산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과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임<sup>98)</sup>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설탕세가 부당지원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 과세범위와 체계가 비만 및 기타 설탕 관련 질병에 대하여 건강증진 목표에 부합한다고 밝힘
- ▶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6년 10월 건강증진 목적을 위하여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할 것을 공식 권고한 바 있음<sup>99)</sup>

95)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5-17/u-s-loses-bid-to-intervene-in-apple-s-eu-court-fight-over-tax>, (검색일자: 2018. 5. 25.)

96)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4-25\\_e2\\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4-25_e2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5. 25.)

97)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3521\\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3521_en.htm), (검색일자: 2018. 5. 25.)

98)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competition/state\\_aid/overview/index\\_en.html](http://ec.europa.eu/competition/state_aid/overview/index_en.html), (검색일자: 2018. 5. 25.)

-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5월 1일부터 설탕세를 부과하며, 순수 과일 주스와 유제품 및 주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 설탕세는 100ml당 설탕함량이 5그램을 초과하는 음료에 대하여 과세되며 설탕함량별 세율은 다음과 같음

〈표 II-7〉 설탕세율

(단위: g, 유로)

설탕함량(100ml당)	적용세율(1L당)
8 초과	0.2439 (VAT 포함 시 0.3)
5 초과 8 이하	0.1626 (VAT 포함 시 0.2)

자료: IBFD, Ireland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4.5. Excise duty

- 한편, 연간 최대 생산량이 1만3천리터 미만으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제조장소와 100km 이내에 있는 지역 소매점에 직접 공급하는 등의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규모생산자는 설탕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10 아이슬란드 -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시행시기 연기

[조세동향 18-01호]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12월 30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승인함<sup>99)</sup>
  -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6월 1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승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음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개정으로 아이슬란드 기업은 내국인 간 차입거래 시에도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99)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news-room/detail/11-10-2016-who-urges-global-action-to-curtailed-consumption-and-health-impacts-of-sugary-drinks>, (검색일자: 2018. 5. 25.)

100) EY(<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15-january-2018>, 검색일자: 2018. 1. 26.)

## 11 영국

### 가. 세무대리인 준수 의무에 대한 지침 발행

[조세동향 18-01호]

- 영국 국세청(HMRC)은 세무대리인의 의무에 대한 지침(the standard for agents)을 2017년 1월 4일자로 발행함<sup>101)</sup>

  - ▶ 동 지침은 2016년 8월 3일자로 발표된 초안을 근간으로, 세무전문가 집단의 자체적 윤리규정(Professional Conduct in Relation to Taxation)의 내용을 반영하여 갱신한 것임
  - ▶ 특정 전문가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세무대리인에게 공통으로 통용되는 윤리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발표함
  - ▶ 모든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자문 서비스 및 국세청과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사항들을 제시함
  
- 동 지침에서는 신의성실 및 전문가적 주의 의무 등 대리인이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요건들을 명시함

  - ▶ 신의성실성(Integrity)
    - 세무대리인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숨김없이 정직하게 과세관청을 대할 것이 요구됨
  - ▶ 전문가적 능력 및 주의관리 의무(Professional competence and due care)
    -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지식 보유
    - 납세자의 과세신고 또는 환급청구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
    - 납세자의 오류 확인 시 이를 수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납세 대리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그럼에도 계속 대리할 경우 조세회피행위로 조세법칙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101) Tax Notes International, Vol. 89, No. 2, January 8, 2018, pp. 156~157.

HMRC(<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the-standard-for-agents/hmrc-the-standard-for-agents>, 검색일자: 2018. 1. 25.)

- ▶ 전문가적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Professional behavior)
  - 전문가로서의 각종 행위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 자기 자신의 납세 의무 이행 등
- 세무계획(tax planning)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사항을 열거함으로써 보다 세심하게 유의할 것을 요구함
  - ▶ 준법성(Lawful)
    - 세무계획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관련 법률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해석에 근거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이나 국세청의 입장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관련 과세처분이나 조세쟁송 가능성 및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함
  - ▶ 정보 공개 및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
    - 세무대리인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모든 관련 사실을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 세무계획 수립 시 유의점(Advising on tax planning arrangements)
    - 입법 의도에 명백히 반하거나 관련 법규의 허점을 이용한 세무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됨
  - ▶ 전문가적 판단 및 문서화(Professional judgement and appropriate documentation)
    - 세무대리인은 동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그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수시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은 동 의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시함
  - ▶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일상적 세무신고 과정에서 의무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함
  - ▶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행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의 행위를 해당 전문가집단에 통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및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부정직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과의 협의를 중단하고 조세범칙 사안으로 전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을 불허할 수 있음

## 나.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과세당국 지침 발행

[조세동향 18-03호]

- 영국 국세청(HMRC)은 조세조약 체결 국가와의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에 대한 지침(statement of practice)을 2018년 2월 20일자로 발행함<sup>102)</sup>
  - ▶ 영국은 BEPS프로젝트<sup>103)</sup>에서와 같이 국제적조세분쟁 해결 및 이중과세 방지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 영국 국세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국제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목적과 추진 과정 및 합의결과 적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1) 상호합의절차 신청

- 조세조약 체결 일방 국가의 과세처분이 조약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 ▶ 과거 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납세자 거주지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최근의 조세조약에서는 어느 일방 국가에서든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상호합의절차 신청은 영국의 국내법상 조세분쟁해결 절차에 의해 제약받지 않음
  - ▶ 일반적인 조세불복 사안에서 과세처분 금액의 납부의무는 상호합의절차 종결 시까지 유예될 수 있음
- 납세자는 영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 영국 국세청은 별도의 지침<sup>104)</sup>을 통해 상호합의절차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내역을 예시하고 있음

102) 영국 정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tement-of-practice-1-2018/statement-of-practice-1-2018>, 검색일자: 2018. 3. 30.)

103) Action 14 'Making Dispute Resolution more Effective' of the Base Erosion Profit Shifting(BEPS) project

104) Appendix B of INTM 423056

- ▶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음
- 영국 세법상 상호합의절차는 과세대상기간 종료 후 6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기한을 적용함
  - ▶ 영국 세법 규정상 상호합의절차는 과세대상기간 종료 이후 6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것을 원칙으로 함
  - ▶ 그러나 영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최초 통지가 있는 뒤 3년 이내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당초 과세대상기간 종료 이후 6년이 지난 뒤 과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 신청기한은 국내법상의 기한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옴

## 2) 상호합의절차 이행 및 후속 조치

- 영국 과세당국은 상호합의절차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자국의 일방적 조치 또는 양국 합의 절차 이행 여부를 결정함
  - ▶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자국의 일방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 만약 영국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 경우에는 조약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합의절차로 이행하여 관련 논의를 개시함
-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합의 및 이에 대한 납세자 확인을 거쳐 상호합의결과가 확정되며, 상호합의 결렬 시 납세자는 중재(arbitration)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 ▶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합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
    - 납세자가 이에 동의하면 양국의 당국 간에 서면 합의문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자에게도 송부함
  - ▶ 만약 상호합의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세조약상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영국은 조세조약에 중재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함

- 상호합의확정 시 과세처분 취소 등의 후속 조치(relief)가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별도의 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음
  - ▶ 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에 의해 확정된 사안은 기타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함
  - ▶ 상호합의확정에 따른 조치는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세금 환급, 기타 과세변경 처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를 위해 영국 납세자들의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
  - ▶ 쟁점 사안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호합의결과 통지 이후 1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일례로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 또는 연결그룹 결손 공제 기한 도과 시 적용 가능

**다. 해외 이익분할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정책안 발표**

[조세동향 18-04호]

- 영국 국세청(HMRC)은 해외 이익분할(profit fragmentation)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안을 2018년 4월 10일자로 발표함<sup>105)</sup>
  - ▶ 단일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 국가 등 여러 곳에 분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
    - 주로 대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 tax), 혼성불일치(hybrids mismatch) 대응 규정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 왔음
  - ▶ 이번 정책안은 주로 영국의 소상공인 및 전문직사업자들이 해외 저세율 국가에 사업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 ▶ 영국 정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2018/19 재정법안(Finance Bill)으로 상정할 계획임
- 영국 거주자의 기술이나 사업적 역량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었음에도 해외에 소득을 과대 배분함으로써 영국 내 소득을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함

105)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ax-avoidance-involving-profit-fragmentation>, (검색 일자: 2018. 4. 27.); Tax Notes International, Vol. 90, No. 7 April 16, 2018, pp. 497~498.

- ▶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영국 거주자가 전문적 또는 사업상 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소득일 것
    - 해당 소득의 전체 또는 일부가 타국 소재 기업(파트너십 또는 신탁 등을 포함)에 배분됨으로써 조세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해당 영국 거주자 본인 또는 그와 관계된 당사자가 이러한 거래구조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경우
  - ▶ 이에 해당하는 예로 아래와 같이 타국에 이익을 과대 배분하거나 영국에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사례를 들 수 있음
    - 영국 거주자인 경영 컨설턴트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동 거주자의 명목상 고용인인 외국 기업이 지급받으며, 이 중 일부만을 영국 거주자가 급여로 받을 경우
    - 영국 납세자가 건축 서비스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을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외국 기업에 다시 지급할 경우
- 규제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사전 통보 및 쟁점 세액 선납의무를 부여할 계획임
- ▶ 현행 법령에서도 이전가격세제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이익분할 거래를 제재할 수는 있음
  - ▶ 다만 납세자의 협조 없이는 세무 조사를 통해 과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세금 납부가 사실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이에 본 과세 정책안에서는 납세자가 쟁점 거래를 수행할 경우 이를 사전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 확정 이전에도 쟁점 세액을 미리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해당 거래를 수행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기한 전까지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조사를 통해 과세 사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세될 금액이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국세청은 일정한 기한을 정해 해당 세액에 대한 과세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2016/17 조세격차(Tax Gap) 보고서 발간**

[조세동향 18-06호]

■ 영국 국세청(HMRC)은 영국의 세목별 조세격차를 분석한 보고서를 2018년 6월 14일자로 발행함<sup>106)</sup>

- ▶ 동 보고서는 2016~2017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세목별로 납세의무 불이행의 규모 및 추세 등을 분석함

1) 개요

■ 조세격차는 이론적으로 국세청이 거두어들일 조세수입 대비 실제 납세액과의 차액을 의미함

- ▶ 납세의무 미이행의 수준 및 상대적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과세정책 개발에 참고할 수 있음
- ▶ 납세의무 이행 수준이 낮은 분야 및 이유를 확인하고 국가 간 비교 등의 분석을 통해 과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 조세격차는 세목별 특성에 따라 하향식(top-down) 또는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추정함

- ▶ 하향식 방법: VAT 및 소비세의 경우에 주로 적용함
  - 전반적인 소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세수입을 추정
  - 실제 조세수입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조세격차 추정
- ▶ 상향식 방법: 소득세 등 기타 주요 조세 항목 관련 추정에 사용
  - 국세청의 내부 자료 및 기타 정보를 활용하여 세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확인
  - 각 분야별로 관련된 통계자료 및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조세격차를 추정

■ 조세채무(tax liability) 대비 조세격차 비율은 과거 10여년 동안 점진적으로 낮아짐

106) HMRC, Measuring tax gaps 2018 edition: Tax gap estimates for 2016~2017

- ▶ 2005~2006 과세연도에 조세격차 비율은 7.3%에 달하였으나 2016~2017년도에는 5.7%까지 낮아짐
  - 다만 전반적인 경제규모 증가로 인해 조세격차의 절대적인 금액은 2005~2006년도 약 320억파운드에서 2016~2017년도 330억파운드로 다소 증가함
- ▶ 법인세 및 소득세는 장기적으로 조세격차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 2013~2014년 이후의 조세격차 감소에는 소득세, 자본이득세 및 국민보험기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관련 부문이 주된 영향을 미쳤음

〈표 11-8〉 조세격차 연도별 추이

(단위: %, 십억파운드)

조세격차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비율	7.3	6.6	6.1	6.5	6.1	5.9	5.6	6.3	6.6	6.0	5.7	5.7
금액	32	30	30	30	27	28	28	32	35	33	32	33

## 2) 세목별 조세격차

- ▣ 조세격차를 세목별로 나누어 보면 VAT와 소득세 관련 금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 2016~2017년도 330억파운드의 조세격차 중 약 40%에 해당하는 135억파운드가 소득세, 국민보험기여금 및 자본이득세에서 발생함
  - ▶ VAT의 경우도 전체 조세격차의 약 35%에 달하는 117억파운드로서 조세격차 규모가 상당함
- ▣ 조세격차 비율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VAT가 가장 높고 법인세 및 소비세도 전체 조세격차 비율 5.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 VAT의 조세격차 비율은 8.9%로서 다른 세목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음
    -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세수입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 법인세 및 소비세의 조세격차 비율은 각각 7.4%, 5.8%로서 다소 높은 편이나 과거 연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법인세는 2005~2006년도에는 조세격차 비율이 약 12%였으나 2010년대부터 10% 아래 수준을 유지함

- 소비세는 2005~2006년도에 약 8.1%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이후에는 약 6% 수준을 유지함

〈표 11-9〉 주요 세목별 조세격차 규모 및 조세채무 대비 비율

(단위: 십억파운드, %)

세목	조세격차 규모		조세채무 대비 비율
	금액	구성비율	
소득세·국민보험기여금·자본이득세	13.5	40	4.2
VAT	11.7	35	8.9
법인세	3.5	11	7.4
소비세	3.1	9	5.8
기타	1.6	5	4.5
전체	33	100	5.7

### 3) 귀속 주체 및 행위별 조세격차

□ 조세격차의 귀속 주체(customer group)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세격차는 주로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남

- ▶ 2016~2017 과세연도 및 직전연도의 통계상 조세격차의 약 40% 이상이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es)에서 나타남
- ▶ 대규모 사업체(large businesses) 및 조세범칙이 각각 약 20%를 전후한 수준이며 일반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내로 가장 낮음

〈표 11-10〉 주요 귀속주체별 조세격차 규모

(단위: 십억파운드, %)

귀속주체	조세격차 규모			
	2015~2016년도		2016~2017년도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소규모 사업체	14.1	44	13.7	41
대규모 사업체	6.5	20	7.0	21
조세범칙	5.0	15	5.4	16
중간규모 사업체	3.7	11	3.9	12
개인	2.9	9	3.4	10
합계	32	100	33	100

- 조세격차가 발생하는 원인행위별로 보면 부주의나 법적해석 차이로 인한 것 이외에도 조세범칙이나 탈루 행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납세자의 부주의, 법적해석 차이 및 기타 오류(error)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함
  - ▶ 조세범칙행위(criminal), 탈루(evasion), 지하경제(hidden economy), 조세회피(avoidance)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조세회피로 인한 조세격차의 경우 전체 약 17억파운드 중 법인세(8억파운드) 및 소득세·국민보험기여금·자본이득세(7억 파운드)의 비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12 오스트리아

### 가. 부가가치세 일부 경감 및 유자녀 세액공제 법안 발의

[조세동향 18-03호]

- 오스트리아 정부는 숙박업종에 부가가치세 일부 경감 및 유자녀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함
  - ▶ 오스트리아 정부는 숙박업종(accommodation services)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에 관한 개정안을 2018년 2월 28일자로 국회에 제출함<sup>107)</sup>
  - ▶ 오스트리아 정부는 유자녀 가족을 위한 세액공제방안을 2018년 1월에 발표하였으며, 2018년 3월 2일자로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 착수함<sup>108)</sup>
- 부가가치세 개정안에 따라 숙박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이 기존의 13%에서 10%로 낮아질 예정임

107)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at\\_20180312\\_1042.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at_20180312_1042.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3. 30.)

108)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at\\_20180306\\_1357.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at_20180306_1357.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3. 30.)  
 Kleinezeitung([http://www.kleinezeitung.at/politik/innenpolitik/5380295/Tuerkisblauer-Familienbonus\\_1500-Euro-pro-Kind-vorausgesetzt-man?offset=125&page=4](http://www.kleinezeitung.at/politik/innenpolitik/5380295/Tuerkisblauer-Familienbonus_1500-Euro-pro-Kind-vorausgesetzt-man?offset=125&page=4), 검색일자: 2018. 3. 30.)

- ▶ 오스트리아의 관광업 경기 진작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로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개정 전에는 숙박업종에 대하여 13%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음
    - 오스트리아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20%임<sup>109)</sup>
    - 다만 숙박업체가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 개정안에 따라 조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숙박업 전체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함
- 유자녀 가족을 위한 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개인납세자는 18세 미만 자녀당 연간 1,500유로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동 제도는 오스트리아를 보다 가족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개인납세자는 연간 최대 1,500유로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1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연간 500유로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 동일 자녀에 대한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세액공제액을 부모 사이에 나누어 신청할 수는 있음
    - 납세자의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함
    - 납세자와 그 자녀는 오스트리아에 생활근거지 및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함
  - ▶ 동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감면이 반영된 이후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며, 공제부족액을 이월하거나 세액을 환급하지는 않음
    - 따라서 산출세액이 충분히 많지 않을 경우 동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가능치보다 줄어들 수 있음

109)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at\\_s\\_007.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at_s_007.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3. 30.)

**나. 2018 세법개정안(Annual Tax Act 2018) 발의**

[조세동향 18-04호]

- 오스트리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8 세법개정안(draft bill of Annual Tax Act 2018)을 2018년 4월 9일자로 발표함<sup>110)</sup>

  - ▶ 유럽연합의 조세회피 방지 조치(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국세법을 개정함
    - 국제거래 및 저세율국을 활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발의됨
  - ▶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규정은 201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개정안에서는 출국세(exit tax)의 분할 납부 단계를 줄이고 즉시 납부해야 할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출국세 과세를 강화함

  - ▶ 현행 세법상 출국세는 7단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5단계로 축소하여 분할 납부토록 함
  - ▶ 납세자의 신상 변동이나 의무 위반 등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분할 납부 혜택을 배제하고 즉시 출국세를 납부하도록 개정함
    - 납세자의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제3국으로 매각·이전될 경우
    - 법인의 법적 소재지 또는 실질적관리장소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경우
    - 납세자가 파산 또는 청산에 이르게 된 경우
    - 납세자가 분할 납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후 3개월 내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다국적기업 그룹사들 간 이자 및 사용료의 비용 공제 가능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

  - ▶ 현행 규정상 이자 및 사용료를 수취하는 상대방이 해당 소득에 대해 10% 미만의 저율로

110)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at\\_20180411\\_1349.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at_20180411_1349.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4. 27.)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8/04/tnf-austria-ministerial-draft-to-introduce-cfc-rules.html>, (검색일자: 2018. 4. 27.)

과세될 경우 동 소득 지급자의 비용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 개정안에서는 상기 10% 유효세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비용 공제제한을 강화함
  - 소득 수취자나 그 주주가 받는 세액 환급이나 공제금액까지 포함하여 10% 유효세율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동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저세율국에 소득 유보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CFC)규정을 도입함

- ▶ 오스트리아 회사가 지배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저세율국에 소재하여 수동적 소득을 유보한 경우 이를 오스트리아 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의제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도입함
  - 당해 외국법인에 대해 오스트리아 모회사가 의결권 또는 배당수령권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질 경우 동 오스트리아 회사가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당해 외국법인 소재지국의 유효법인세율이 12.5% 이하일 경우 저세율국에 소재한 것으로 간주함
  - 수동적 소득은 배당, 이자, 사용료, 금융리스료, 지분매각이익, 금융이익 등을 포함함. 단,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 중 수동적 소득으로 지정된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이하인 경우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CFC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해외 저세율국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제한하기 위해 경영참여소득면제(international participation exemption) 혜택을 배제하는 경우를 확대함

- ▶ 현행 경영참여소득면제 규정상 오스트리아 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 또는 자본이득을 수취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함
  - 단, 10% 미만 지분율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외국법인이 유럽경제지역(EEA) 해당 국가이면서 오스트리아와 조세징수 상호협조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할 경우, 포트폴리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
- ▶ 다만 현행 규정상 수동적 소득 비중이 큰 저세율국 소재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조항(switch-over clause)을 두고 있음
  - 이는 1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일반적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소득면제 제한 규정(switch-over clause)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0% 미만 지분율을 가진 외국법인의 포트폴리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함

## 13 이탈리아 - 2018 예산법 발표

[조세동향 18-01호]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 예산법(Budget Law)을 발표함<sup>111)</sup>
  - ▶ 동 예산법은 2017년 12월 23일 국회 승인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특례 등 개정세법을 포함함

### 가. 개인소득세

- 인적공제대상 자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친환경 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을 확대함
  - ▶ 24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기존의 2,840유로 이하에서 4,000유로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공제요건을 완화함
  - ▶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해보험 보험료의 19%를 세액공제로 허용함
  - ▶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친환경 프로젝트 비용의 36%에 대해 5,000유로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함
  - ▶ 2017년 말로 종료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8년까지 연장함
- 개인 투자자의 배당 및 양도소득과 일부 이자소득에 대해 26%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함
  - ▶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 및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었으나, 본 세법개정으로 종합과세 대신 26%의 원천징수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111) Italy - Budget Law for 2018 - summary(12 Jan, 2018), News IBFD.

- ▶ 적격 플랫폼 기반 피어투피어(peer-to-peer) 대여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26%의 원천징수세를 적용하며, 이 경우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단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함
- 특정 자산에 대해 대체세(substitute tax)를 납부하고 해당 자산의 가치증액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 2018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또는 적격 부동산에 대해 8%의 대체세를 납부함으로써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납세자는 대체세 납부를 통해 자산가액을 증액함으로써 향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음

## 나. 법인세

- 투자활성화를 위해 특정 신규 취득 자산 및 디지털 및 기술혁신 관련 취득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함
  -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는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해당 자산 취득가액의 30%를 실제 취득가액에 더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 디지털 및 기술 혁신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고도기술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해당 자산 취득가액의 150%를 취득가액에 더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대주주인 비거주자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26%의 대체세를 적용함
  - ▶ 이탈리아 비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수취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26%의 대체세를 적용함
    - 기존에는 해당 소득의 49.72%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여 일반 세율을 적용하였음<sup>112)</sup>
- 종업원 훈련비용, 중소기업의 자문료, 문화예술 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함

112) C.(Cesare) Silvani, Italy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accessed 22 Jan. 2018)

- ▶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과 관련한 적격 종업원 훈련비용에 대하여 30만유로를 한도로 훈련비용의 40%를 세액공제로 허용함
  -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상장 또는 다국적 무역 관련 자문료의 50%를 50만유로를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 문화사업 영위 법인은 문화 서비스와 상품의 개발, 생산, 홍보와 관련한 비용의 3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서점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개별 서점당 최대 2만유로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 관광사업 영위 법인의 기존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세액공제에 열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포함함
    - 관련 비용의 65%를 세액공제함
- 이탈리아 올림픽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아마추어 스포츠 법인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 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
- ▶ 계약분할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방지 조항을 도입함
  - ▶ 예비적·보조적 활동 요건을 강화함
  - ▶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의 범위를 확대함

#### 다. 부가가치세

- 현행 22%의 표준세율과 10%의 경감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함
- ▶ 표준세율은 2019년 24.2%, 2020년 24.9%, 2021년부터는 25%로 인상함
  - ▶ 경감세율은 2019년 11.5%, 2020년부터는 13%로 인상함
-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병행하여 경감세율대상 거래를 확대함
- ▶ 부동산의 개조와 관련한 자재의 공급, 공연과 관련한 집필계약, 이탈리아 올림픽 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아마추어 스포츠 법인의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연료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함

- ▶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사용되는 연료 구입비용과 기타 관련 비용은 신용카드 등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함

■ 2019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 ▶ 다만, 자동차 연료 공급, 공공기관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라. 기타 세목**

■ 2019년부터 온라인 서비스 등에 3%의 디지털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함

-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3%를 디지털거래세로 부과하되, 납세의무자는 연간 3,000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제한함
  - 과세대상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말함
- ▶ 관련 세부규정이 확정된 다음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경감함

- ▶ 신규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용인의 연령(30세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인의 고용인부담 사회보장세를 연간 3,000유로를 한도로 최장 36개월간 면제함

## 14 프랑스

### 가. 홍콩과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체결

[조세동향 18-02호]

- 프랑스와 홍콩은 2018년 1월 15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sup>113)</sup>
  - ▶ 홍콩이 현재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OECD의 다자간협약(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 간 조세조약에 기반하여 국가별 보고서 교환협정을 체결함
- 동 협정은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최초 교환 대상으로 함<sup>114)</sup>
  - ▶ 국가별보고서의 교환 시기 등 이행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임
- 동 협정은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권고에 따라 교환된 국가별보고서의 사용을 규제함
  - ▶ 교환된 국가별보고서는 이전가격 관련 사전 위험평가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양국 과세당국은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다국적기업의 이전 가격 관련 소득조정을 하여서는 안 됨

### 나. 조세 포탈 방지를 위한 법안 발표

[조세동향 18-04호]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3월 28일 조세 포탈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표함<sup>115)</sup>

113) Hong Kong - France - Arrangement on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 between France and Hong Kong signed(16 Jan, 2018), News IBFD.

114) Hong Kong Inland Revenue Department([https://www.ird.gov.hk/eng/tax/dta\\_cbc.htm](https://www.ird.gov.hk/eng/tax/dta_cbc.htm), 검색일자: 2018. 2. 19.)

- ▶ 동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의 납세의무 관련 플랫폼의 고지의무 강화, 조세 포탈에 대한 정보 공개, 조세 포탈 관련 자문 및 지원 행위에 대한 처벌, EU의 조세 피난처 리스트 준용 등의 조치가 포함됨
- P2P(peer-to-peer) 플랫폼의 해당 사용자의 납세협력의무 관련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관련 플랫폼이 해당 사용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고지하는 않는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1만유로에서 5만유로로 상향 조정함
- 과세당국은 조세포탈액이 5만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과세당국이 해당 납세자의 조세포탈 금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조세포탈 관련 자문 또는 지원업무를 제공하는 세무자문가에게 1만유로 또는 관련 자문 수수료의 50%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EU의 조세피난처국가(non-cooperative states or territories)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를 프랑스의 조세피난처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함

## 15 핀란드

### 가. 납세의무 이행 절차 법규 개정

[조세동향 18-02호]

- 핀란드는 조세 납부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개정법안(Law 15/2018)을 확정하여 2018년 1월 15일자로 공포함<sup>116)</sup>
  - ▶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15) France - Bill on fight against tax fraud - presented by government(5. Apr. 2018), News IBFD.

116)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24\\_fi\\_1.html&WT.z\\_nav=Pagin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24_fi_1.html&WT.z_nav=Pagination), 검색일자: 2018. 2. 23.)  
FINLEX Data Bank by Finland's Ministry of Justice(<https://www.finlex.fi/fi/laki/alkup/2018/20180015>, 검색일자: 2018. 2. 23.)

-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5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임

■ 납세자의 소득신고 기한에 여유를 부여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함

- ▶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예비신고서(pre-filed tax return)<sup>117)</sup>를 수정함에 있어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함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서 또는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기한 연장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불복할 수 없음
- ▶ 과세당국은 납세자에 대한 세금 부과 결정에 앞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포함한 과세 예고통지를 교부하여야 함
  - 과세대상 소득은 납세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한 현황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함

■ 소득신고 누락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증액징정(tax increase)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 이행을 강화함

- ▶ 증액징정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신고 누락 등 아래와 같은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함
  - 소득신고서 또는 기타 자료 제출 내용이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신고내용이 전체적으로 누락된 경우
  - 납세자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보충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자료 내용에 심각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를 지정 기한 내(통상 과세연도 다음 12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에 심각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 ▶ 증액징정에 대한 가산세율은 추가과세소득의 2%로 하되, 세부 사안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반복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무 미이행의 경우에는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 해당 추가과세소득이 국외로부터 수취한 것일 경우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117) 핀란드는 일부 개인납세자들의 경우 세무당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에 대한 예비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납세자가 확인·수정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제도를 운영함

**나. 이진가격 문서화에 대한 신규 지침 발행**

[조세동향 18-02호]

- 핀란드 과세당국은 이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대한 지침(No. A129/200/2017)을 2018년 1월 29일자로 발행함<sup>118)</sup>

  - ▶ OECD BEPS Project Action Plan 13(이진가격 문서화)의 취지에 따라, 주로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지침을 발행한 것임
  
- 국외특수관계자와 수행한 거래에 대하여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작성 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 의무가 있음

  - ▶ 기본적으로 국외특수관계자와 수행한 거래는 이진가격 문서화 대상임
    - 외국회사와 핀란드 고정사업장과의 거래 또한 작성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 이진가격 문서는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로 구성되며, 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당 이진가격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진가격 문서 작성 의무가 면제됨
    - 종업원 수가 250명 미만인 경우
    - 매출액이 5천만유로 미만이거나 총자산이 4천 3백만유로 미만인 경우
    - EU 위원회 권고안(2003/361/EC)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성격에 부합하는 경우
  
-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은 다국적기업의 전반적 사업·조직·소유 구조 및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야 함

  - ▶ 마스터파일은 다국적기업의 전반적 사업 내용 및 조직구조, 소속 기업들에 대한 법적 소유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118)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2-05\\_fi\\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2-05_fi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2. 26.)  
 E&Y([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The\\_Latest\\_on\\_BEPS\\_-\\_12\\_February\\_2018/\\$FILE/2018G\\_008\\_28-181Gbl\\_The%20Latest%20on%20BEPS%20-%2012%20February%202018.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The_Latest_on_BEPS_-_12_February_2018/$FILE/2018G_008_28-181Gbl_The%20Latest%20on%20BEPS%20-%2012%20February%202018.pdf), 검색일자: 2018. 2. 26.)

- 다국적기업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 사업전략, 시장 상황,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 주요 무형자산 및 사업 위험 등에 대한 기술
- 다국적기업 그룹의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설명
- 전 세계 주요 시장에 대한 설명 및 주요 서비스 계약에 대한 기술
- 기업 그룹 차원에서의 무형자산 개발, 소유 및 활용 등에 대한 내용 기술
- 주요 투자활동에 대한 기능분석 및 사업 구조조정 기업인수 등에 대한 내용 등
- ▶ 로컬파일은 국외특수관계자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함
  - 특수관계자 및 관련 거래 내용에 대한 기술
  - 관계사 간 거래 당사자의 사업활동 및 관련 기능, 위험 등에 대한 분석
  - 납세자의 무형자산 개발과 관련된 주요 기능 분석
  - 사업에 활용된 자산 및 관련 위험에 대한 설명
  - 주요 거래에 대한 객관적 비교대상 자료
  - 채택된 이전가격방법에 대한 설명 및 관련 평가 자료 등
- ▶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 ▶ 보고서를 지연 제출할 경우 최소 1천유로에서 5천유로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됨
- ▶ 제출한 자료에 상당한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최소 5천유로에서 1만유로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됨
- ▶ 관련 이전가격 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소 1만유로에서 2만5천유로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됨

#### 다. 디지털 고정사업장 관련 법령 발의

[조세동향 18-05호]

- 핀란드 정부는 디지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대한 EU의 제안(European Commission, 2018. 3. 21)에 따라 해당 과세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2018년 5월 3일자로 핀란드 의회에 제출함<sup>119)</sup>

- ▶ EU의 제안을 따라 디지털 고정사업장 해당 요건을 규정함
- EU의 제안 및 핀란드의 발의안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과세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 ▶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경제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사업체를 과세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음
  - ▶ 디지털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공정한 수준의 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하에 고정사업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핀란드의 개정법안에서는 EU 제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EU 멤버국 내에 과세대상 실체(presence) 또는 가상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 특정 EU 회원국에서 연간 매출액이 7백만유로를 초과할 것
  - ▶ 특정 EU 회원국에서 해당 디지털플랫폼 이용자가 연간 십만명을 초과할 것
  - ▶ 특정 EU 회원국에서 디지털기업이 체결하는 디지털서비스 관련 사업계약이 연간 3천 건을 초과할 것

## 16 EU

### 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한 조세피난처 지정 철회

[조세동향 18-01호]

119)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5-09\\_fi\\_4.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5-09_fi_4.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5. 28.)  
 핀란드 의회, [https://www.eduskunta.fi/FI/vaski/Kirjelma/Sivut/U\\_21+2018.aspx](https://www.eduskunta.fi/FI/vaski/Kirjelma/Sivut/U_21+2018.aspx), (검색일자: 2018. 5. 28.)  
 European 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fair-taxation-digital-economy\\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fair-taxation-digital-economy_en), (검색일자: 2018. 5. 28.)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1월 23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조세피난처 지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함<sup>120)</sup>

  - ▶ 이에 앞서 EU는 2017년 12월 5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피난처(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바 있음
  
- EU의 조세피난처 지정은 ① 조세투명성, ② 공평과세, ③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지며<sup>121)</sup> 우리나라는 유해 조세특례 제도를 이유(공평과세 위배)로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바 있음<sup>122)</sup>

  - ▶ 유럽위원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해 조세특례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를 갖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동 유해제도 폐지이행을 약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sup>123)</sup>
    - 다만, EU가 문제 삼은 유해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발견되지 않음
  - ▶ EU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국가 중 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하였음
  - ▶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EU 회원국의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공제, CFC적용, 원천징수,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적용, 입증책임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조세피난처 지정 이후 EU는 일부 국가들의 개선 약속을 받아들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조세피난처에서 “조건부 협력적 국가<sup>124)</sup>”로 지정하였으며, 문제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임<sup>125)</sup>

  - ▶ 관련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해 조세특례제도를 2018년 말까지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함<sup>126)127)</sup>

120) European Council(<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01/23/taxation-eight-jurisdictions-removed-from-eu-list/>, 검색일자: 2018. 1. 30.)

121) European Council(<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086-2018-INIT/en/pdf>, 검색일자: 2018. 1. 31.)

122) European Council(<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429-2017-INIT/en/pdf>, 검색일자: 2018. 1. 31.)

123) Ibid., p. 9.

124) State of play of the cooperation with the EU with respect to commitments taken to implement tax good governance principles

125) European Council(<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086-2018-INIT/en/pdf>, 검색일자: 2018. 1. 31.)

126) Ibid., p. 4.

127) European Council(<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429-2017-INIT/en/pdf>, 검색일자: 2018. 1. 31.), p. 15.

- ▶ EU는 매해 최소 1회 이상 조세피난처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계획임<sup>128)</sup>

## 나.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 리스트 업데이트

[조세동향 18-03호]

- EU는 2018년 3월 13일 EU의 조세피난처 국가(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sup>129)</sup>
  - ▶ EU는 조세투명성, 공평과세,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조치 이행 등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조세피난처 국가를 지정하며, 매해 최소 1회 이상 조세피난처 국가 리스트를 업데이트함<sup>130)</sup>
- EU는 이번 발표에서 바레인, 마셜제도, 세인트루시아 등 3개 조세관할지역에 대하여 조세피난처 지정을 철회함<sup>131)</sup>
  - ▶ 이들 국가는 EU에 개선이행 약속을 하였으며, EU가 이를 받아들여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조건부 협력적 국가”로 지정함
- 금번 조치로 EU의 조세피난처 리스트에는 미국령 사모아(American Samoa), 바하마, 괌, 나미비아, 팔라우, 사모아, 세인트키츠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9개의 조세피난처 국가가 남게 됨

## 다.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EU 지침 제안서 발표

[조세동향 18-04호]

- EU는 2018년 3월 21일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새로운 EU 지침과 관련하여 두 개의 제안서를 공개함<sup>132)</sup>

128) Ibid., p. 6.

129) European Council(<http://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검색일자: 2018. 3. 30.)

130) European Council(<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429-2017-INT/en/pdf>, 검색일자: 2018. 3. 30.), p. 15.

131) European Council(<http://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검색일자: 2018. 3. 30.)

- ▶ 첫 제안서는 “디지털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에 대한 EU 차원의 법인세 과세 규정을 제안함
- ▶ 두 번째 제안서는 특정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제안함
- 디지털사업장 관련 제안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능한 디지털 프레전스(또는 가상 고정사업장)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물리적 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원천지국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제안함
  - ▶ 특정 EU 회원국에서의 연간 매출액이 7백만 유로를 초과할 것
  - ▶ 특정 EU 회원국에서 해당 디지털플랫폼 이용자가 연간 십만명을 초과할 것
  - ▶ 특정 EU 회원에서 디지털기업이 체결하는 디지털서비스 관련 사업계약이 연간 3천건을 초과할 것
- 디지털서비스세 제안서는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고 EU 내 발생 매출액이 연간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세할 것을 제안함
  - ▶ 과세대상 디지털서비스로 ① 사용자(user)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와 ② 사용자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피어 투 피어 플랫폼) 등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안함
- 두 제안서는 EU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며, EU 위원회에서 채택되는 경우 EU 회원국은 2019년 말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종료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2018 EU의 조세 추이” 보고서 발간**

[조세동향 18-06호]

- EU는 2018년 6월 13일 2018 EU의 조세 추이(Taxation Trends in the EU) 보고서를 발간함<sup>132)</sup>

132)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fair-taxation-digital-economy\\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fair-taxation-digital-economy_en), (검색일자: 2018. 4. 25.)

- ▶ 본 보고서는 28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30개국의 총세부담과 주요 세목별 세수 추이를 분석함
- EU의 GDP 대비 총조세부담(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GDP 대비 38.9%로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EU의 평균 조세부담은 미국(26.0%), 캐나다(31.7%), 일본(30.7%), 호주(28.2%), 한국(26.3%), 뉴질랜드(32.1%), 중국(27.7%) 등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많게는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sup>134)</sup>
- 주요 세목의 전체 세수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taxes on labour)가 전체 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소비세(taxes on consumption)와 자본소득세(taxes on capital)가 뒤를 이음
  - ▶ 근로소득세(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및 급여지불세 포함)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 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각종 개별소비세)와 자본에 대한 조세(법인세, 개인의 사업소득세, 개인의 자본이득세 등)는 재정위기 이후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상승함
- 주요 세목별 법정 최고 세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최고세율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법인세 세율은 낮아지는 추이를 보임

〈표 II-11〉 EU 회원국의 GDP 대비 총조세부담

(단위: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조세부담	37.8	37.1	37.2	37.7	38.3	38.7	38.7	38.5	38.9

자료: EC, Tax main aggregates,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conomic-analysis-taxation/data-taxation\\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conomic-analysis-taxation/data-taxation_en), (검색일자: 2018. 6. 29.)

133)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conomic-analysis-taxation/taxation-trends-eu-union\\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conomic-analysis-taxation/taxation-trends-eu-union_en), (검색일자: 2018. 6. 29.)

134) EC(2018), p. 14.

〈표 11-12〉 EU 회원국의 주요 세목별 세수 비중 추이(주요 세목의 상대적 비중)

(단위: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근로소득세	49.8	51.9	51.2	50.8	50.6	50.5	50.3	49.7	49.8
소비세	27.6	27.7	28.7	28.8	28.5	28.4	28.5	28.6	28.5
자본소득세	22.6	20.4	20.0	20.3	20.8	21.0	21.2	21.7	21.7

자료: EU(2018), p. 20.

〈표 11-13〉 EU 회원국의 주요 세목별 최고세율 추이(주요 세목의 상대적 비중)

(단위: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개인소득세	38.4	38.0	38.5	38.4	38.7	39.2	39.2	39.0	38.9
부가가치세	19.5	19.9	20.5	20.8	21.1	21.5	21.5	21.6	21.5
법인세	23.8	23.8	23.2	23.0	22.9	23.2	22.9	22.8	22.5

자료: EU(2018), pp. 24~27, p. 36.

#### 마. 강제보고의무 관련 지침 채택

[조세동향 18-06호]

■ 유럽재무장관이사회(ECOFIN)는 2018년 5월 25일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 방지를 위한 강제보고의무지침을 승인하였으며, 최종 채택을 위해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전달함<sup>135)</sup>

- ▶ 본 지침에 앞서 OECD는 BEPS프로젝트 “Action 12 강제보고규정”을 선택도입 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음<sup>136)</sup>

135)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reland/news/commission-proposes-new-transparency-rules-for-tax-planning-intermediaires\\_en](https://ec.europa.eu/ireland/news/commission-proposes-new-transparency-rules-for-tax-planning-intermediaires_en), (검색일자: 2018. 6. 29.)

136) OECD, <http://www.oecd.org/tax/mandatory-disclosure-rules-action-12-2015-final-report-9789264241442-en.htm>, (검색일자: 2018. 6. 29.)

- ▶ 또한, OECD는 2018년 3월 “공통보고기준(CRS) 의무회피 방지를 위한 모델 강제의무 보고규정”을 발표하였음<sup>137)</sup>
- 본 지침은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의 주요 특징(hallmarks)을 갖는 국제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하며, 보고의무자, 보고대상 국제거래, 신고방법, 시행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sup>138)</sup>
- 강제보고의무의 보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중개인(intermediaries)으로 하되, 조세자문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경우 또는 중개인이 비EU 거주자인 경우 납세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함
  - ▶ 중개인은 법인 또는 개인 모두 될 수 있으며, 해당 거래를 설계하는 컨설턴트, 은행, 변호사, 회계사, 세무 및 재무 자문가 등을 포함함
- 보고대상 국제거래는 잠재적으로 조세회피 위험이 있는 거래로, 다음의 특징(hallmarks)을 갖는 국제거래로 함
  - ▶ 소득을 이전하는 국가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동 소득이 이전되는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조세부담을 갖는 거래
  - ▶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매우 약한 국가로 소득이 이전되는 거래
  - ▶ 소득수취에 대한 보고를 회피할 수 있는 거래
  - ▶ 조세예규(tax ruling) 교환을 회피할 수 있는 거래
  - ▶ 중개인의 자문수수료가 절세금액과 연계되는 거래
  - ▶ 같은 자산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감가상각을 인식할 수 있는 거래
  - ▶ 같은 소득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
  - ▶ EU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전가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래
- 보고의무자는 보고대상 거래 내용, 중개인, 납세자와 납세자번호, 납세자의 거주지국 등을 보고 대상 거래가 이행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의무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137) OECD,

<http://www.oecd.org/tax/exchange-of-tax-information/game-over-for-crs-avoidance-oecd-adopts-tax-disclosure-rules-for-advisors.htm>, (검색일자:2018. 6. 29.)

138) European Commission([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1677\\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1677_en.htm), 검색일자: 2018. 6. 29.)

- 본 지침이 최종 의결되는 경우 본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며, 강제보고 대상 거래의 첫 EU 회원국 간 교환은 2020년 10월 말까지 이루어지게 됨

## 17 OECD

### 가. Action 14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8-01호]

- OECD는 2017년 12월 15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7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sup>139)</sup>
  - ▶ Action 14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에 해당함
    - Action 14 외에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Action으로는 Action 5(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이전 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등이 있음
  - ▶ OECD는 2017년 9월 영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 보고서임
  - ▶ 본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는 Action 14의 네 가지 최소기준인 ① 분쟁방지 노력, ② 상호합의절차(MAP)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 보장, ③ MAP 사건의 해결, ④ MAP 합의

139)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second-round-of-peer-reviews-on-implementation-of-beps-minimum-standards-on-improving-tax-dispute-resolution-mechanism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second%20round%20of%20peer%20reviews%20on%20implementation%20of%20BEPS%20minimum%20standards%20on%20improving%20&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5-12-2017&utm\\_term=demo](http://www.oecd.org/tax/oecd-releases-second-round-of-peer-reviews-on-implementation-of-beps-minimum-standards-on-improving-tax-dispute-resolution-mechanism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second%20round%20of%20peer%20reviews%20on%20implementation%20of%20BEPS%20minimum%20standards%20on%20improving%20&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5-12-2017&utm_term=demo), (검색일자: 2018. 1. 23.)

이행 등에 대한 이행 현황을 평가함

- 상호검토 결과 검토대상국들은 Action 14의 최소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국가별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호검토 보고서에 상세한 개선방안을 기술함
  - ▶ 검토대상국은 대체로 Action 14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나, 24개월 이내에 MAP사건 해결 준수, MAP 이용가능성, MAP에 대한 보다 명료한 안내, 일부 조세조약 개정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sup>140)</sup>
  - ▶ OECD는 2020년까지 1단계 상호검토를 완료하고, 1단계 검토 이후 1년 이내에 2단계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 나. 2017 OECD 모델조세조약 공개

[조세동향 18-01호]

- OECD는 2017년 12월 18일 2017 OECD 모델조세조약을 공개함<sup>141)</sup>
  - ▶ OECD 모델조세조약은 1963년 처음 출판되어 현재 3,000개 이상의 조세조약의 모델 조약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 OECD 모델조세조약은 2014년 개정 이후 첫 개정본임
- 2017 OECD 모델조세조약은 주로 BEPS프로젝트의 조세조약 관련 실행과제(Action)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이 반영되어 개정됨<sup>142)</sup>
  - ▶ 조세조약 관련 실행과제로는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 부여의 방지”,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등이 있음

140) EY,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OECD\\_releases\\_second\\_batch\\_of\\_peer\\_review\\_reports\\_on\\_Action\\_14/\\$FILE/2017G\\_07108-171Gbl\\_OECD%20releases%20second%20batch%20of%20peer%20review%20reports%20on%20Action%2014.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OECD_releases_second_batch_of_peer_review_reports_on_Action_14/$FILE/2017G_07108-171Gbl_OECD%20releases%20second%20batch%20of%20peer%20review%20reports%20on%20Action%2014.pdf), (검색일자: 2018. 1. 23.)

141) OECD,  
[http://www.oecd.org/tax/treaties/tax-treaties-2017-update-to-oecd-model-tax-convention-released.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the%20press%20release&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8-12-2017&utm\\_term=demo](http://www.oecd.org/tax/treaties/tax-treaties-2017-update-to-oecd-model-tax-convention-released.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the%20press%20release&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8-12-2017&utm_term=demo), (검색일자: 2018. 1. 23.)

142) OECD(<http://www.oecd.org/ctp/treaties/2017-update-model-tax-convention.pdf>, 검색일자: 2018. 1. 23.)

- Action 6(조약남용)과 관련하여 모델조약의 제목(Title) 및 서문(Preamble)을 개정하고 “제29조 혜택의 자격(Entitlement to benefits)” 조항을 신설함

  - ▶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 제거뿐 아니라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에 있음을 모델 조약 제목과 서문에 명시함
  - ▶ 신설된 “제29조 혜택의 자격”에 혜택의 제한(Limitation-on-Benefits) 및 주요목적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규정을 포함하여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 Action 7(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모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및 관련 주석(Commentary)을 개정함

  - ▶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비적·보조적 활동 등 고정사업장 배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강화함
    - 기업의 사업활동을 고려하여 특정 활동이 실질적으로 예비적·보조적 성격인지 판단하며, 계약분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인위적으로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함
  
- Action 14(분쟁해결장치)와 관련하여 모델조약 “제25조 상호합의절차” 및 관련 주석을 개정함

  - ▶ 기존에는 해당 납세자의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에만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조세조약 체결 양국의 과세당국 모두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
  
- BEPS프로젝트에 따른 개정 항목 외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제4조 거주자”의 “일상적居所”의 정의와 관련하여 해당 주석을 개정함
  - ▶ “제8조 국제 선박 및 항공 운송”과 관련하여 “국제 운송”의 정의 및 “승무원 등에 대한 과세” 조항 및 해당 주석을 개정함
  - ▶ “제10조 배당” 관련 제한세율(5%)의 적용 요건,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에 대한 조약 적용 등에 대한 주석을 개정함
  - ▶ “제13조 자본이득”의 해당 주석을 개정하여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함

**다. BEPS프로젝트 Action 15 다자간협약 추가 서명**

[조세동향 18-02호]

- OECD는 2018년 1월 24일 BEPS프로젝트 Action 15의 다자간협정에 말레이시아, 바베이도스,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파나마, 튀니지 등 6개국이 추가 서명했음을 발표함<sup>143)</sup>

  - ▶ 다자간협약은 BEPS프로젝트의 이행사항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가 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번 추가 서명으로 현재 다자간협정 서명국은 총 78개국에 이릅니다<sup>144)</sup>
  
- 다자간협약 체결국은 다자간협약 조항 중 BEPS프로젝트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해당하는 항목은 채택할 의무가 있으나,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 유보(reserve)를 선택할 수 있음

  - ▶ 다자간협약상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조세조약 남용방지(Action 6) 관련 조세조약 서문 개정과 조약남용방지 규정 도입, 상호합의 절차(Action 14) 관련 납세자의 이의제기 신청 범위 확대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다자간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다자간협약 조항 중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조항과 조세조약 분쟁 해결 시 양국 간의 대응조정 조항을 적용하고,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를 선택한 바 있음<sup>145)</sup>

143) OECD,  
[http://www.oecd.org/tax/beps/major-step-forward-in-international-tax-cooperation-as-additional-countries-sign-landmark-agreement-to-strengthen-tax-treatie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Major%20step%20forward%20in%20international%20tax%20co-operation%20as%20additional%20countries%20sign%20landmark%20agreemen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24-01-2018&utm\\_term=demo](http://www.oecd.org/tax/beps/major-step-forward-in-international-tax-cooperation-as-additional-countries-sign-landmark-agreement-to-strengthen-tax-treatie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Major%20step%20forward%20in%20international%20tax%20co-operation%20as%20additional%20countries%20sign%20landmark%20agreemen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24-01-2018&utm_term=demo), (검색일자: 2018. 2. 19.)

144) 다자간협정 서명국은 OECD(<http://www.oecd.org/tax/treaties/beps-mli-signatories-and-parties.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1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 6. 8,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K7-mi7tRg3m9TEmQPghHspBj,node30?searchBbsId=MOSFBBS\\_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9379&menuNo=4010100](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K7-mi7tRg3m9TEmQPghHspBj,node30?searchBbsId=MOSFBBS_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9379&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 6. 19.)

**라. BEPS프로젝트 국가별보고서 이행 관련 추가 지침 발표**

[조세동향 18-02호]

- OECD는 2018년 2월 8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추가 이행지침을 발표함<sup>146)</sup>

  -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이행과 관련해서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 및 납세의무의 확실성 제고를 위해 제시됨
  - ▶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관련 일곱 번째 이행지침으로 국가별보고서 신고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결재무제표상 그룹 매출액의 계산과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 등 적절한 사용의 위반 발생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 다국적기업 거주지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 그룹도 해당 거주지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라 연결기준 매출액을 계산하여 국가별보고서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다국적기업그룹의 계열사의 지분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거주지국의 회계원칙에 따라 연결기준 매출액을 계산하여 국가별보고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특정 국가의 과세당국이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상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와 적절한 사용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상대국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음

  - ▶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와 적절한 사용은 양자협약 또는 다자간협약에 기술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항의 중대한 위반 시 해당 국가는 사전 서면 통지를 통해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 교환된 국가별보고서는 이전가격 관련 사전 위험평가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양국 과세당국은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소득조정을 해서는 안 됨

<sup>146)</sup> OECD, <http://www.oecd.org/tax/beps/guidance-on-country-by-country-reporting-beps-action-13.htm>, (검색일자: 2018. 2. 19.)

마.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경과보고서 업데이트

[조세동향 18-02호]

- OECD는 2018년 2월 8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 캐나다와 바베이도스의 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2017 경과보고서<sup>147)</sup>를 업데이트함<sup>148)</sup>

  -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OECD는 2017년 10월 첫 경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OECD는 유해조세포럼(Forum on Harmful Tax Competition)을 통해 BEPS참여국의 유해조세제도를 모니터링 및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4개의 조세특례제도와 해당 제도의 유해 여부 및 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 캐나다는 기존 관련 검토<sup>149)</sup>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potentially but not actually harmful)” 제도로 평가된 국제은행센터(International Banking Centre) 제도를 폐지하여 동 시정 사항을 2017 경과보고서에 반영함<sup>150)</sup>
  
- 바베이도스는 2017 경과보고서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potentially harmful)”으로 판정된 두 가지 특례제도에 대해 개정을 약속함에 따라 경과보고서의 관련 현황이 “개정 중”으로 변경됨<sup>151)</sup>

  - ▶ “국제금융서비스(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와 “외환이익 및 해외 프로젝트 공제(Credit for foreign currency earnings/Credit for overseas project or services)” 등 두 가지

147) OECD(2017), *Harmful Tax Practices - 2017 Progress Report on Preferential Regimes: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 5*,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148) OECD,  
[http://www.oecd.org/tax/oecd-announces-further-developments-in-beps-implementation-february-2018.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announces%20further%20developments%20in%20BEPS%20implementation&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08-02-2018&utm\\_term=demo](http://www.oecd.org/tax/oecd-announces-further-developments-in-beps-implementation-february-2018.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announces%20further%20developments%20in%20BEPS%20implementation&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08-02-2018&utm_term=demo), (검색일자: 2018. 2. 19.)

149)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harmful-tax-practices-project-2004-progress-report.pdf>, (검색일자: 2018. 2. 26.)

150) OECD,  
<http://www.oecd.org/tax/beps/update-harmful-tax-practices-2017-progress-report-on-preferential-regimes.pdf>, (검색일자: 2019. 2. 19.)

151) Ibid.

제도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제도로 판정된 바 있음

- OECD는 2018년에도 유해 조세특례제도의 시정 이행 여부, 잠재적 유해제도(potentially harmful), 신규 BEPS참여국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속할 계획임

**바.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결과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8-03호]

- OECD는 2018년 3월 12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체코, 덴마크, 핀란드, 우리나라,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등 8개국에 대한 제1단계 상호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함<sup>152)</sup>
  - ▶ Action 14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대상에 해당함
    - Action 14 외에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Action으로는 Action 5(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이전 가격 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등이 있음
  - ▶ OECD는 2017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3개국에 대한 제1차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 보고서임
  - ▶ 본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는 Action 14의 네 가지 최소기준인 ① 분쟁방지 노력, ② 상호합의절차(MAP)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 보장, ③ MAP 사건의 해결, ④ MAP 합의 이행 등에 대한 이행 현황을 평가함

152)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third-round-of-peer-reviews-on-implementation-of-beps-minimum-standards-and-calls-for-taxpayer-input-for-the-fifth-round.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third%20round%20of%20peer%20reviews%20on%20implementation%20of%20BEPS%20minimum%20standards%20on%20improving%20&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2-03-2018&utm\\_term=demo](http://www.oecd.org/tax/oecd-releases-third-round-of-peer-reviews-on-implementation-of-beps-minimum-standards-and-calls-for-taxpayer-input-for-the-fifth-round.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third%20round%20of%20peer%20reviews%20on%20implementation%20of%20BEPS%20minimum%20standards%20on%20improving%20&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2-03-2018&utm_term=demo), (검색일자: 2018. 3. 29.)

- 상호검토 결과 검토대상국들은 Action 14의 최소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국가별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호검토 보고서에 상세한 개선방안을 기술함
  - ▶ 검토대상국은 대체로 Action 14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나, 24개월 이내에 MAP 사건 해결 준수, 분쟁방지 노력(폴란드, 체코), MAP 절차에 대한 보다 명료한 안내(체코)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sup>153)</sup>
- OECD는 2020년까지 1단계 상호검토를 완료하고, 1단계 검토 이후 1년 이내에 2단계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 사. 공통보고기준(CRS) 관련 모델 강제보고규정 발표

[조세동향 18-03호]

- OECD는 G7의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9일 “공통보고기준(CRS)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한 모델 강제외부보고규정(모델강제보고규정)<sup>154)</sup>”을 발표함<sup>155)</sup>
  - ▶ CRS는 OECD/G20 국가들의 자동정보교환의 실효성 증진과 금융기관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정한 표준화된 자동교환 모델로서 금융기관이 매년 과세당국 간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규칙 및 절차를 다룸<sup>156)</sup>
  - ▶ 동 모델 강제보고규정은 과세당국이 CRS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거래와 “불투명한 구조(Opaque structure)”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임
- 본 모델 강제보고규정은 ① 보고 대상 거래나 구조, ② 보고의무자, ③ 보고 대상 정보, ④ 보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 등에 대한 모델 조항과 관련 주석(commentary)을 제시함

153) EY,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OECD\\_releases\\_third\\_batch\\_of\\_peer\\_review\\_reports\\_on\\_Action\\_14/\\$FILE/2018G\\_01473-181Gbl\\_OECD%20releases%20third%20batch%20of%20peer%20review%20reports%20on%20Action%2014.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OECD_releases_third_batch_of_peer_review_reports_on_Action_14/$FILE/2018G_01473-181Gbl_OECD%20releases%20third%20batch%20of%20peer%20review%20reports%20on%20Action%2014.pdf), (검색일자: 2018. 3. 29.)

154) OECD, *Model Mandatory Disclosure Rules for CRS Avoidance Arrangements and Opaque Offshore Structures*, 2018.

155) OECD,

<http://www.oecd.org/tax/exchange-of-tax-information/game-over-for-crs-avoidance-oecd-adopts-tax-disclosure-rules-for-advisors.htm>, (검색일자: 2018. 3. 29.)

156) 이동규, 『자동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1. pp. 6~7.

- 보고대상 거래·구조는 “CRS 의무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래·구조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모든 거래·구조”로 함
- 보고의무자는 보고대상 거래·구조의 설계자 또는 판매자 그리고 그러한 거래·구조를 수립하는 데 있어 자문을 제공하는 모든 중개인을 포함하되, 특정 국가에서의 보고의무는 그 해당 국가와 연계(nexus)된 중개인으로 함
  - ▶ 특정 국가와 연계된 중개인(intermediaries)이라 함은 그 국가의 법률에 따른 거주자, 설립법인뿐 아니라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
- 보고대상 정보는 보고대상 거래·정보와 관련한 상세내역, 고객 또는 사용자, 그리고 관련 중개인을 포함함
- 강제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보고의무 이행을 권장하고 불이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할 것을 권고함

**아. BEPS프로젝트 Action 1 관련 중간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8-04호]

- OECD는 2018년 3월 16일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발표함<sup>157)</sup>
  - ▶ 2015년 Action 1 보고서는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모니터링을 2020년까지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최종보고서 합의 전 2018년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한 바 있음
- 본 중간보고서는 디지털경제에서의 비즈니스모델과 가치창조, BEPS프로젝트 이행 관련 조세정책 개발 현황, BEPS프로젝트 포괄적체계(inclusive framework) 합의에 기초한 해결방안 도출, 한시적 정책 대안, 후속과제 등을 논의함

157) OECD,

[http://www.oecd.org/tax/tax-challenges-arising-from-digitalisation-interim-report-9789264293083-en.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Access%20the%20repor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6-03-2018&utm\\_term=demo](http://www.oecd.org/tax/tax-challenges-arising-from-digitalisation-interim-report-9789264293083-en.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Access%20the%20repor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6-03-2018&utm_term=demo), (검색일자: 2018. 4. 25.)

- ▶ 제1장에서는 중간보고서의 개요를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디지털경제의 비즈니스모델과 가치창조(value creation)에 대해 살펴봄
  - ▶ 제3장에서는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BEPS프로젝트의 이행 현황을, 제4장에서 제6장까지는 이에 대한 디지털경제 대응과 관련한 주요 조세정책 변화와 한시적 대응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일반 원칙 등을 논의함
  - ▶ 제7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경제 문제를 다루고, 제8장에서는 후속 작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함
- 디지털경제하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세 가지 주요 특징으로 ① 분산화된 국제적 규모의 경제(Cross-jurisdictional scale without mass), ②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 ③ 데이터 활용과 사용자 참여 등을 제시함
- 상기 디지털경제에서의 비즈니스모델 변화와 관련하여 본 중간보고서는 여러 국가가 취하고 있는 관련 조세 대응 정책을 ①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안적 기준 적용, ② 원천징수 적용 강화, ③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매출액 기준 과세, ④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함
-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안적 기준 적용(alternative applications of the PE threshold)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사업장(digital presence)” 또는 “서비스 고정사업장(service PE)”의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디지털사업장(또는 “온라인 사업장”) 개념은 물리적 관리장소 없이도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해외 기업이 특정 국가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창조·유지할 때 그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현재 이스라엘, 인도, 슬로바키아에서 관련 제도가 도입됨
  - ▶ “서비스 고정사업장”은 UN모델조세협약에서 제시된 것으로 물리적 실체는 고정사업장의 유무 판단에 고려되지 않으며 디지털 수단 등을 통해 실제 원천지국의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고정사업장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관련 정의가 적용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를 통해 원천지국에서 창출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함

- ▶ 사업소득, 자문수수료, 온라인 광고 대가 등 기존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하여 내국세법상 해당 소득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원천지국 과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부 국가에서 나타남
  - ▶ 다만, 이러한 대응은 내국세법에 반영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소득세 개념에서 벗어나 온라인 광고 등 온라인 서비스 소득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 과세(turnover tax)” 제도를 도입함
- ▶ “매출액 기준 과세”는 기존의 소득세 계산과는 달리 해외 기업이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를 물리적 장소 없이 특정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천지국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임
  - ▶ 현재까지 인도,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확인됨
- 디지털서비스 기반 대규모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제도가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영국과 호주의 우회소득세(diverted profits tax)와 미국의 세원잠식 및 남용방지 규정 등이 있음
- 한편, 본 중간보고서는 2020년 최종 합의될 디지털경제 관련 국제 조세 규범 채택 이전 각 국가들이 한시적 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 조세조약과 WTO 규정 및 EU 지침 등 기존의 국제조세규범에 부합할 것
  - ▶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추후 국제차원에서 합의될 제도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 ▶ 디지털 비즈니스 중 고위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적용할 것
  - ▶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나친 조세부과를 지양할 것
  - ▶ 적용기준(threshold)을 설정하여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에 과도한 납세협력 부담을 주지 않을 것
  - ▶ 납세행정비용 및 제도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것
- OECD는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해결과 관련하여 2019년 경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BEPS 포괄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원국의 합의 하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

## 자. BEPS프로젝트 Action 7 관련 추가 지침 발표

[조세동향 18-04호]

- OECD는 2018년 3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계산에 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함<sup>158)</sup>

  - ▶ 본 추가 지침은 OECD가 2016년과 2017년에 각 한 차례씩 관련 협의문서(discussion paper)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됨
- 본 추가 지침은 Action 7을 통해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의 제5조(고정사업장) 관련 조항에 대한 일반적 적용 원칙을 제시함

  - ▶ OECD 모델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관련 조항 중 Action 7을 통해 변경된 내용으로는 “보조적·예비적 활동의 고정사업장 적용 예외(제5조 제4항)”와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제5조 제5항 및 제6항)” 등이 있음
- 본 지침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별도의 독립적(separate and independent enterprise) 법인”을 가정하여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을 판단하도록 권고함

  - ▶ 계약분할을 통해 인위적으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포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경우와 위탁판매계약, 온라인 광고판매, 조달 행위 등 종속대리인을 통한 고정사업장 회피 등 고정사업장 과세 회피 사례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적 원칙으로 “별도의 독립적 기업” 개념을 제시함

## 차. BEPS프로젝트 Action 15 다자협약 발효

[조세동향 18-04호]

- OECD는 2018년 3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 15 양자 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협약 개발”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이 발효됨을 발표함<sup>159)</sup>

158) OECD,

[http://www.oecd.org/tax/beps/additional-guidance-attribution-of-profits-to-a-permanent-establishment-under-beps-action7.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22-03-2018&utm\\_term=demo](http://www.oecd.org/tax/beps/additional-guidance-attribution-of-profits-to-a-permanent-establishment-under-beps-action7.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22-03-2018&utm_term=demo), (검색일자: 2018. 4. 23.)

- ▶ 동 다자협약은 다자협약에 대한 다섯 번째 비준서가 제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로 발효되는 것임
  - ▶ 오스트리아, 맨섬(Isle of Man), 저지(Jersey), 폴란드에 이어 슬로베니아가 3월 22일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이 발효되게 됨
- 다자협약은 2018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나,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각 국가의 “적용대상 조약(Covered Tax Agreements)”은 해당 조약의 모든 체결국이 다자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제출해야 다자협약상의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 ▶ 2018년 3월 현재 기준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의 조항이 적용되는 조세조약은 오스트리아 - 폴란드 조약,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조약, 폴란드-슬로베니아 조약 등 3개의 조세 조약이 존재함
- 2018년 3월 현재 다자협약 서명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8개국에 이르며, 다자협약으로 개정이 예상되는 조세조약은 총 1,2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카. Taxing Wages 2018 보고서 출간

[조세동향 18-05회]

- OECD는 2018년 4월 26일 『임금소득과세 2018(Taxing Wages 2018) 보고서』를 출간함<sup>160)</sup>
- ▶ 동 보고서는 OECD 35개 회원국들의 임금에 대한 조세의 산출과 조세가 개별 가구의 순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
-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가구형태별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음
- ▶ 임금소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근로자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159) OECD,

<http://www.oecd.org/tax/beps/multilateral-convention-to-implement-tax-treaty-related-measures-to-prevent-beps.htm>, (검색일자: 2018. 4. 23.)

160) OECD,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ing-wages-20725124.htm>, (검색일자: 2018. 5. 28.)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Payroll Taxes), 그 밖에 가계현금 급여(Cash Family Benefits) 등이 있음

- ▶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독신가구, 2자녀 편부모 가구, 2자녀 외벌이 가구, 2자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 OECD 회원국의 2017년 독신가구의 평균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포함)은 평균 35.9%로 나타남

- ▶ 2017년 조세부담률은 2016년 대비 0.13%p 감소함
- ▶ OECD 35개국 중 18개국에서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였고, 16개국에서 하락하였으며, 1개국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의 독신가구의 평균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22.6%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7년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0.24%p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조세부담 상승은 소득세 부담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자녀 편부모 가구(각 국가 평균임금의 67% 소득 기준)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15.3%로 조사 대상 가구 형태 중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임

- ▶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조세부담률이 독신 가구의 조세부담률보다 낮음
- ▶ 우리나라의 2자녀 편부모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17.3%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자녀 외벌이 가구(평균임금의 100% 소득 기준)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1%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버는 독신가구(35.9%)보다 낮은 조세를 부담함

- ▶ 이는 2자녀 기혼 가구에 대한 유리한 소득세제도와 현금급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 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4%로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조세부담률(22.6%)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자녀 맞벌이 가구(평균 임금소득의 167% 기준)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30.7%로 2자녀 외벌이 가구(26.1%)보다 더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임

- ▶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2차 근로자(second earner)에 대한 배우자 및 부양자 공제 등 인적공제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우리나라의 2자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로 2자녀 외벌이 가구(20.4%)의 평균 조세부담률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타.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검토결과 발표

[조세동향 18-05호]

- 2018년 5월 17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하여 11개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함<sup>161)</sup>
  -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BEPS참여국의 유해조세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175개의 조세특례제도와 해당 제도의 유해 여부 및 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 11개의 검토 대상 조세특례제도 중 4개는 무해한 것으로, 다른 4개의 제도는 유해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한 것으로, 마지막 3개 제도는 소득이전 위험이 없어 Action 5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 무해한 제도로 검토된 4개의 조세특례제도로는 리투아니아와 룩셈부르크 지적재산권 제도, 싱가포르의 지적재산권 개발 특례제도, 슬로바키아의 특허박스(Patent-box) 등이 있음
  - ▶ 법개정 또는 해당 제도 폐지로 유해요소를 제거한 특례제도로는 칠레의 비즈니스 플랫폼 제도,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임대차 제도, 터키의 기술개발 특구, 우루과이의 서비스센터 제도 등이 있음
  - ▶ 소득의 이전 위험이 없거나 사업소득과 무관하여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위험이 없다고 검토된 제도로는 케냐의 수출 가공 특구와 베트남의 수출 가공 특구 및 산업 특구 등이 있음

161)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decisions-on-11-preferential-regimes-of-BEPS-inclusive-framework-member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decisions%20of%2011%20preferential%20regimes%20of%20BEPS%20Inclusive%20Framework%20Members&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16-05-2018&utm\\_term=demo](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decisions-on-11-preferential-regimes-of-BEPS-inclusive-framework-member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decisions%20of%2011%20preferential%20regimes%20of%20BEPS%20Inclusive%20Framework%20Members&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16-05-2018&utm_term=demo), (검색일자: 2018. 5. 29.)

## 파.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 BEPS프로젝트 추가 참여

[조세동향 18-05호]

- 2018년 5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세인트루시아 등 3개국이 BEPS프로젝트에 추가로 참여함<sup>162)</sup>
  - ▶ BEPS프로젝트는 포괄적체계(inclusive framework)를 통해 BEPS프로젝트의 전 세계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3개국이 추가적으로 BEPS프로젝트에 참여함에 따라 2018년 5월 현재 총 116개국<sup>163)</sup>이 BEPS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됨
  - ▶ OECD 및 G20의 모든 회원국과 80여개의 개발도상국이 BEPS프로젝트에 참여함
    - EU의 경우 사이프러스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이 BEPS프로젝트에 참여함

## 하. 국가별보고서 관련 제1차 상호검토 결과 발표

[조세동향 18-06호]

- OECD는 2018년 5월 23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관련 제1차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sup>164)</sup>
  -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는 모든 BEPS참여국이 이행 의무를 지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임
- 국가별보고서 관련 상호검토는 (i) 내국 입법 현황, (ii)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체계, (iii)

162)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decisions-on-11-preferential-regimes-of-BEPS-inclusive-framework-member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decisions%20on%2011%20preferential%20regimes%20of%20BEPS%20Inclusive%20Framework%20Members&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6-05-2018&utm\\_term=demo](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decisions-on-11-preferential-regimes-of-BEPS-inclusive-framework-member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decisions%20on%2011%20preferential%20regimes%20of%20BEPS%20Inclusive%20Framework%20Members&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6-05-2018&utm_term=demo), (검색일자: 2018. 5. 29.)

163) OECD, <http://www.oecd.org/tax/beps/inclusive-framework-on-beps-composition.pdf>, (검색일자: 2018. 5. 29.)

164) OECD,

<http://www.oecd.org/tax/beps/country-by-country-reporting-compilation-of-peer-review-reports-phase-1-9789264300057-en.htm>, (검색일자: 2018. 6. 29.)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 및 적절한 사용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이번 제1차 상호검토는 95개 국가를 대상으로 내국 입법 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입법 현황 외에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체제와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됨
- 검토 결과, 2018년 1월 현재 60개국에서 국가별보고서 신고를 위한 입법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여러 국가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 OECD 국가 중 관련 입법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는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터키가 유일함
- 국가별보고서 교환과 관련해서는 검토대상 국가 중 58개국이 2016년 또는 2017년 개시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협약 또는 양자협약 등의 교환체제를 갖춘 것으로 나타남

  - ▶ 2018년 6월 현재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에 서명한 국가는 총 70개국에 달함<sup>165)</sup>
- 검토대상 국가 중 39개국에서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 및 적절한 사용 관련 검토를 위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함
- 우리나라는 세 가지 검토 항목 모두 OECD의 기준을 충족하여 별도의 권고사항을 받지 않음
- OECD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체제와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 및 적절한 사용에 대한 상호검토를 시행할 예정임

165) OECD,  
<https://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about-automatic-exchange/CbC-MCAA-Signatories.pdf>, (검색 일자: 2018. 6. 29.)

##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 뉴질랜드

#### 가. 소액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발표

[조세동향 18-05호]

- 2018년 5월 1일 뉴질랜드 정부는 수입되는 소액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개인 거주자에게 소액 재화를 공급하는 해외 사업자에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납하는 법안을 소개함<sup>166)</sup>

  -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400뉴질랜드달러 이하인 소액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 뉴질랜드 소기업만 추가적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공정한 경쟁과 공평 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뉴질랜드 정부가 수입 소액 재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함
  - ▶ 해외 사업자가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12개월 동안 공급한 재화의 총액이 6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의무가 발생하며, 건당 400뉴질랜드달러 미만인 소액 재화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 ▶ 법안이 도입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입되는 재화부터 적용됨
- 이번 법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도입한 온라인 서비스<sup>167)</sup>에 대한 해외 사업자의 간편 사업자 등록제도의 적용 품목을 소액 재화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해됨

166) 뉴질랜드 국세청, "GST on imported low-value goods proposals launched," 2018. 5. 1, <http://taxpolicy.ird.govt.nz/news/2018-05-01-gst-imported-low-value-goods-proposals-launched>, (검색일자: 2018. 5. 21.)

167) 온라인 도서, 동영상, 음원, 온라인 뉴스, 게임, 앱, 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 과정, 보험, 도박, 웹디자인이나 법률, 회계나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소비자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출처: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industry-guidelines/non-res-bus-gst/online-services/gst-supplying-remote-services.html>, 검색일자: 2018. 5. 28.)

- ▶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 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간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의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

#### 나. 가상화폐 세무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18-06호]

- 2018년 4월 뉴질랜드 국세청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세무처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함<sup>168)</sup>
  - ▶ 가상화폐는 디지털상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재산으로, 가상화폐의 채굴과 거래를 규제하고 확인하기 위해 암호해독과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고 은행과 같은 중간단계 기관이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특징이 있음
  - ▶ 가상화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현재 호주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하고 이더리움, 리플과 라이트코인도 활발하게 거래됨
- 가상화폐는 세무상 자산(property)으로 간주되어, 자산에 관한 기존 세법규정을 적용하며 가상화폐에 별도 부과되는 세목은 없음
  - ▶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 화폐로 거래한 경우도 외화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으면 교환거래로 인식하며, 가상화폐를 받은 날 시가로 인식함
- 가상화폐를 처분하면 자본이득<sup>169)</sup>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가상화폐에 대한 자본이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함
  - ▶ 뉴질랜드 세법상 판매나 교환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하고 자본

168)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campaigns/2018/cryptocurrency-tax.html>, (검색일자: 2018. 6. 21.)

169) 뉴질랜드는 자본이득에 대해 별도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판매나 교환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부담함

이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뉴질랜드 국세청은 가상화폐의 보유가 판매나 교환이익 외 다른 목적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상화폐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함

- ▶ 납세자는 가상화폐 관련 수입과 비용에 관한 기록을 7년간 보관해야 함
- 가상화폐 채굴자가 채굴을 통해 얻은 수수료수익이나 가상화폐 처분이익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 가상화폐 채굴자의 활동은 사업목적을 갖는 것으로 간주됨
  - ▶ 가상화폐 채굴자는 채굴 등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
  - ▶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투자하고 업체로부터 보상받은 자는 채굴업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에 받은 대가를 소득세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 ▶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하는 컴퓨터와 장비는 컴퓨터에 대한 감가상각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됨

## 2 대만 - 세법개정안 확정

[조세동향 18-03회]

- 대만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확정함<sup>170)</sup>
  - ▶ 2017년 9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이번에 확정된 것임
- 2018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7%에서 20%로 3%p 인상함
  - ▶ 단, 과세표준이 50만대만달러 미만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2018년 18%, 2019년 19%, 2020년부터 20%로 점진적으로 인상함

170) EY, "Taiwan enacts tax reform proposals," 2018.1.25,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aiwan-enacts-tax-reform-proposals>, (검색일자: 2018. 3. 19.) 및 KPMG,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tw/pdf/2018/02/tw-etax-alert-issue103-eng.pdf>, (검색일자: 2018. 3. 30.)

- 그 밖에 법인세 측면에서는 개인소유 기업에 대한 도관간주규정이 도입되고, 미배당 유보소득에 적용되는 부가세율(surtax)이 인하됨

  - ▶ 개인소유기업(sole-proprietorship)과 동업기업(partnership)을 법인세법상 도관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개인소유기업의 주주와 동업기업의 파트너에 소득세를 과세함
  - ▶ 2018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미배당 유보소득에 적용되는 부가세(surtax)가 10%에서 5%로 5%p 인하됨
  
-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0%에서 21%로 1%p 인상하고, 배당원천징수세에서 차감하던 미배당 유보소득에 대한 부가세(surtax) 공제를 불허함

  - ▶ 현재 미배당 유보소득에 부과된 부가세(surtax)를 배당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고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배당부터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원천징수세액에서 과거 납부한 미배당 유보소득에 대한 부가세(surtax)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개인소득세 측면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의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기본소득공제와 유치원에 대한 교육비소득공제 금액을 인상함

  - ▶ 현행 5%, 12%, 20%, 30%, 40%, 45%의 6단계 누진세율에서 45% 최고세율을 폐지하고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개정함
  - ▶ 기본소득공제 금액을 9만대만달러에서 12만대만달러로 인상함
  - ▶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만5천대만달러에서 12만대만달러로 9만5천대만달러 인상함
  - ▶ 개정 규정은 2018년부터 적용됨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개인단계의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해주는 배당세액공제(imputation tax)를 폐지함

### 3 싱가포르

#### 가. 2018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8-03호]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18년 2월 19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개정안이 포함된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함<sup>171)</sup>

  - ▶ 특히 부가가치세법 측면에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됨
  
- 법인세법상 연구개발소득공제율 인상, 지적재산권 등록비용 및 취득·투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sup>172)</sup>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150%에서 250%로 인상함
    - 개정안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등록비용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비율을 100%에서 200%로 인상함
  - ▶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취득이나 투자비용 중 10만싱가포르달러까지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00%에서 200%로 인상함
  - ▶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기존 10만싱가포르달러까지의 과세소득에 적용되던 감면비율을 100%에서 75%로 인하함
    - 기존 10만싱가포르달러부터 20만싱가포르달러까지 과세소득에 적용되던 감면비율은 50%로 동일하게 유지됨

171) 싱가포르 국세청, "Budget 2018 - Overview of Tax Changes," <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Singapore-Budget/Budget-2018---Overview-of-Tax-Changes/>, (검색일자: 2018. 3. 30.) 및 IBFD, "Budget for 2018 - summary," 2018. 2. 21.

172)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싱가포르 내 설립된 기업이 설립 후 3년 동안 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받는 제도이며, 지주회사 등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주주가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됨

- 법인세법상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비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법인세환급제도(tax rebate)의 일몰을 2019년까지 연장하면서 환급비율은 현행보다 인하함

  - ▶ 싱가포르의 법인세부담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인세환급제도를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함
  - ▶ 2017년 법인세부담액의 50%에 대해 2만5천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공제<sup>173)</sup>하였으나, 2018년 공제비율 40%에 대해 1만5천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공제하고 2019년 공제비율 20%에 대해 1만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공제가 허용됨
  
- 부가가치세율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 7%에서 9%로 2%p 인상함

  - ▶ 싱가포르는 1994년 4월 1일 3%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그 후 2003년 4%, 2004년 5%, 2007년 7%로 3차례 인상함
  
-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목적에서 대리납부제도와 해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함

  - ▶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방안이 포함됨
  - ▶ 한편, 해외사업자가 국내 개인에게 디지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외사업자가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당국에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안이 포함됨

## 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고시

[조세동향 18-03회]

- 2018년 2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는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고시함<sup>174)</sup>

173) 싱가포르 국세청, "Corporate Tax Rates, Corporate Income Tax Rebates, Tax Exemption Schemes and SME Cash Grant,"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Tax-Rates-Corporate-Income-Tax-Rebates-Tax-Exemption-Schemes-and-SME-Cash-Grant/#title3>, (검색일자: 2018. 3. 30.)

174) 싱가포르 국세청, "Introduction to Transfer Pricing,"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Specific-topics/>

- ▶ 고시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은 2019년부터 적용됨
- 매출액이 1천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한 싱가포르 기업은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
  - ▶ OECD BEPS Action 13에서 권고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 ▶ 납세자가 속한 기업그룹의 사업 개관과 싱가포르 내 사업 현황, 기능분석과 이전가격정책 분석을 포함해 관계회사와의 거래와 납세자의 사업내역 등을 보고함
  - ▶ 세무신고기한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 이전가격 문서를 구비하면 되나, 싱가포르 국세청이 요청 시 3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 납세자는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이전가격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 4 인도

### 가. 도메인 등록비용 로열티소득으로 판결

[조세동향 18-04호]

- 2018년 3월 3일 인도 소득세 재판소(Tribunal)는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 도메인 등록업체인 GoDaddy가 도메인 등록대가로 받은 인도 원천소득을 로열티소득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함<sup>175)</sup>
  - ▶ GoDaddy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로부터 도메인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임
  - ▶ 2013년 및 2014년도 도메인 등록과 관련된 GoDaddy의 수입은 174.15백만루피임

Transfer-Pricing/Introduction-to-Transfer-Pricing/, (검색일자: 2018. 3. 30.)

175) Tax Notes, "Domain Registration Fees are Royalties, Tribunal Rules," TAX NOTES INTERNATIONAL Vol. 90, No. 3, 2018. 4. 9, pp. 355-356.

- ▣ 쟁점은 도메인 등록비용이 로열티소득에 해당하는가와 미국과 인도의 양자 간 조세조약상 로열티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적용대상인가의 두 가지로 구분됨
- ▣ 도메인 이름은 상표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등 기존 로열티대상 자산이나 권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GoDaddy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도메인 등록비용을 로열티소득으로 판단함

  - ▶ 법원은 도메인 등록비용이 인도 소득세법 제9조에서 로열티소득으로 열거한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설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 ▶ 도메인 이름은 상표권과 유사한 성격으로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도메인 등록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는 측면을 고려함
- ▣ 법원은 GoDaddy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세조약상 로열티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배재함

  - ▶ GoDaddy 측은 설사 도메인 등록비용이 로열티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미국과 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다고 주장함
    - GoDaddy는 인도 내 직원이나 서버를 두지 않으며 모든 서비스 운영을 해외에서 수행한 점을 강조함
  - ▶ 법원은 도메인 등록비용이 인도 내에서 지급된 점과 GoDaddy가 미국 거주자도 아닌 점을 들어 인도와 미국 간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허용하지 않음
    - GoDaddy가 어느 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기업도 다른 조세조약상 혜택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음

**나. 「2018년 재정법」 승인**

[조세동향 18-04호]

- ▣ 2018년 3월 29일 법인의 거주지 판단을 위한 ‘경제적 실질’ 기준 마련,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양도차익의 과세 범위 확대 등을 담은 2018년 인도의 「재정법」이 승인됨<sup>176)</sup>

176) Income Tax Department, <https://www.incometaxindia.gov.in/budgets%20and%20bills/2018/finance-bill-2018.pdf>, The Finance Bill 2018, (검색일자: 2018. 4. 23.)

- ▶ 대부분 개정된 법률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고정사업장 요건 중 하나인 계약체결대리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실질'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함
  - ▶ 계약체결대리인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대리인이 "(i) 비거주자의 이름으로 (ii) 비거주자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비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하거나, 비거주자의 사용권을 이전한 경우 (iii) 비거주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인 경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상시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함
  - ▶ 인도 내 중요한 경제적 실질이 있으면 인도 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제적 실질을 "(i) 디지털 수단을 통해 인도의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거나 사업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ii) 인도에서 다운로드를 통해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해 인도에서 비거주자가 수행하는 재화, 서비스와 자산의 거래 행위"로 정의함
- 2016~2017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2,500백만루피 미만인 기업은 현행 30%의 법인세율을 5%p 인하한 25%의 특례세율로 과세하며, 이번 개정으로 특례세율 대상이 된 기업은 향후 총매출액이 인상되더라도 특례세율을 계속 적용함
  - ▶ 2016~2017 사업연도는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이번 결정된 세율이 향후 계속 적용됨
  - ▶ 분석에 따르면 99%의 법인납세자가 25%의 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77)</sup>
  - ▶ 현행 인도의 법인세율은 30%이나 일정 기준에 부합한 소기업에 대해 25%나 29%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이번 「2018 재정법」에서는 특례세율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함
    - 현행 세법상 매출액이 2015~2016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500백만루피 미만인 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2014~2015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50백만루피 미만이면서 제조, 무역,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 29%의 세율로 과세하였음

177) 블룸버그, "Union Budget 2018: Corporate Tax Rate Cut To 25% For Medium-Sized Corporations," <https://www.bloomberquint.com/union-budget-2018/2018/02/01/union-budget-2018-corporate-tax-rate-cut-to-25-for-medium-sized-corporations>, (검색일자: 2018. 4. 23.)

-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인도 계열사를 포함하고 제출시기를 개정함

  - ▶ 모기업의 거주국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은 경우, 인도 계열사가 인도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최상위 모회사가 인도 내국법인이거나 인도 계열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인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시기를 최상위 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개정함
  
- 기존 비과세하던 장기보유 주식,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양도차익 중 양도차익 규모가 10만루피를 초과한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10% 세율을 적용함

  - ▶ 다만, 물가나 환율에 연동하여 양도차익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됨

#### 다. 균등세 세수입 발표

[조세동향 18-05호]

- 인도 정부는 2017~2018 사업연도 동안 얻은 균등세(equalizaion levy) 세수입이 9천만 달러에 상당한다고 발표함<sup>178)</sup>

  - ▶ 인도의 균등세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10만루피(약 1,500미국달러)를 초과하여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인도 거주자나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총대금지급액의 6%를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제도임
    - 균등세 과세대상 디지털거래는 온라인 광고, 디지털광고 공간의 제공과 온라인 광고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온라인 광고에 한정하여 과세함
    - B2B거래(business to business)에만 적용됨
  - ▶ 인도는 2016~2017 사업연도 예산안에서 개별소비세 형태의 균등세를 소개한 후 2016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함

178) Tax Notes, "Equalization Levy Brings In Nearly \$90 Million," TAX NOTES INTERNATIONAL, Vol. 90, No. 7, 2018. 5. 7, p. 783.

## 5 인도네시아 - 과소자본세제 규정 도입

[조세동향 18-03호]

-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채가 자본<sup>179)</sup>의 4배를 초과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소득에 가산하는 내용의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도입하고, 해외 사채의 경우 관련 세부내역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함<sup>180)</sup>

  - ▶ 과소자본규정은 2016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으며, 불공제되는 이자비용의 계산내역과 관련 해외 부채의 세부내역은 2017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보고할 의무가 있음
  - ▶ 불공제된 이자비용은 실제 이자지급일이나 만기일에 배당으로 간주됨
  - ▶ 특히, 해외 사채 형태의 부채는 개별 신고서식을 통해 세부내역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전액 불공제됨

## 6 일본

### 가. 「2018년 세제개정대강」 각의결정<sup>181)</sup>

[조세동향 18-01호]

-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22일 「2018년 세제개정대강」을 각의결정하였으며, 1월 중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임

  - ▶ 주요 내용은 고소득 급여소득자 공제 축소, 임금인상·설비투자 기업의 법인세 인하, 담뱃세 증세, 세목(국제관광여객세, 산림환경세) 신설 등이며, 세제개정을 통해 연간 약 2,800억엔 증세를 예상함

179) 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회계상 자본으로 계상된 항목을 포함함

180) EY, "Indonesia issue debt-to-equity ratio implementing regulation," 2018. 3. 15.

181) 재정부,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30taikou\\_gaiyou.pdf](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30taikou_gaiyou.pdf),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20171222taikou.pdf](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20171222taikou.pdf), (검색일자: 2018. 1. 3.)

- ▶ 「2018년 세제개정대강」은 디플레이션을 종식하고 경제 회생을 위해 임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한 것임

1) 개인소득세

-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동 증세를 통한 세수는 약 900억엔 규모로 전망하며, 급여소득공제 축소, 기초공제 확대, 고소득 급여소득자 공제 축소가 있음

가) 급여소득공제

- 일률적으로 급여소득공제액을 10만엔 인하하고, 급여소득공제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급여 등의 수입금액을 연 850만엔 이상 급여생활자(육아, 간병가구 제외, 전체 급여생활자의 약 4%에 해당)를 대상으로 급여소득공제 상한액을 195만엔으로 인하하여 증세를 실시함
- 현행 급여소득공제는 급여수입금액에 따라서 최고 40%의 공제율로 개산 공제하는 방식이며, 급여수입금액 수준에 따라 40%, 30%, 20%, 10%의 4단계 공제율이 적용됨<sup>182)</sup>
  - ▶ 급여수입금액이 65만엔 이하인 경우 65만엔을 공제하고, 급여수입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220만엔을 한도로 공제함

〈표 III-1〉 일본의 급여소득공제 개정

(단위: 만엔)

급여수입금액(2017년도)	급여소득공제액
180 이하	수입금액×40% 65 미만인 경우 65
180 초과~360 이하	수입금액×30% + 18
360 초과~660 이하	수입금액×20% + 54
660 초과~1,000 이하	수입금액×10% + 120
1,000 초과	220(상한)

182) 일본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표 III-1〉 의 계속

급여수입금액(2018년도)	급여소득공제액
162.5 이하	55
163.5 초과~180 이하	수입금액×40% - 10
180 초과~360 이하	수입금액×30% + 8
360 초과~660 이하	수입금액×20% + 44
660 초과~850 이하	수입금액×10% + 110
850 초과	195(상한)

자료: 1.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9.htm](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9.htm)(검색일자: 2018. 1. 10.)  
 2.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410.htm>(검색일자: 2018. 1. 10.)

나) 기초공제

■ 기초공제는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의 계산을 위해 총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제 중 하나이며, 일정요건 없이 일률적으로 38만엔이 적용됨

- ▶ (소득세) 2018년 세제개정을 통해 현재 38만엔에서 10만엔을 인상하고, 2,400만엔 이상의 소득자는 기초공제금액이 체감되며, 2,500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는 공제대상에서 배제함
- ▶ (주민세) 공제액이 현행 33만엔에서 43만엔으로 일률적으로 10만엔 인상됨

〈표 III-2〉 일본의 기초공제 개정

(단위: 만엔)

소득금액합계액(2017년도)	기초공제금액(소득세)	기초공제금액(주민세)
-	38	33
소득금액합계액(2018년도)	기초공제금액(소득세)	기초공제금액(주민세)
2,400 이하	48	43
2,400 초과~2,450 이하	32	29
2,450 초과~2,500 이하	16	15
2,500 초과	-	-

자료: 1. 일본 「소득세법」 제86조  
 2.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410.htm>(검색일자: 2018. 1. 10.)

2) 법인소득세

- 대기업의 경우 평균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도 대비 3% 이상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급여 등 지급증가금액을 세액공제함
  -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균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도 대비 1.5% 이상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급여 등 지급증가금액을 세액공제함
  - ▶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3년) 사이 시작하는 각 사업연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공제를 허용함
  
-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3년 도입한 법인세 공제제도의 일부 조건과 공제율을 변경하여 개정함

**〈표 III-3〉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 개정**

		현행	개정 후
세액공제요건	대기업	고용주급여 등 지급증가액 기준고용주급여 등 지급금액 $\geq$ 5%	폐지
		고용주급여 등 지급액 $\geq$ 비교고용주급여 등 지급액 (전사업연도)	급여지급액 $\geq$ 비교고용주급여액지급액 (전사업연도)
		(평균급여 등 지급액-비교평균급여 등 지급액)/ 비교평균급여 등 지급금액 $\geq$ 2%	(평균급여 등 지급액-비교평균급여 등 지급액)/ 비교평균급여 등 지급금액 $\geq$ 3%
		국내설비투자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국내설비투자감가상각의 총액 $\geq$ 90%
	중소기업	고용주급여 등 지급증가액 기준고용주급여 등 지급금액 $\geq$ 3%	폐지
		고용주급여 등 지급액 $\geq$ 비교고용주급여 등 지급액 (전사업연도)	급여지급액 $\geq$ 비교고용주급여액지급액 (전사업연도)
		평균급여 등 지급금액)비교평균급여 등 지급금액	평균급여 등 지급액-비교평균급여 등 지급액 /비교평균급여 등 지급금액 $\geq$ 1.5%
		국내설비투자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국내설비투자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세액공제율	대기업	고용주급여 등 지급증가액의 10%	- 급여 등 지급증가액의 15% - (교육비-비교교육훈련비)/비교교육비 $\geq$ 20%인 경우, 급여 등 지급증가액의 20%
	공제 한도: 법인세액의 10%	공제 한도: 법인세액의 20%	

〈표 III-3〉 의 계속

		현행	개정 후
세 액 공 제 제 도	중 소 기 업	고용주급여 등 지급증가액의 10%	- 급여 등 지급증가액의 15% - 2개 요건 충족 시 급여 등 지급증가액의 25% i) (평균급여 등 지급액/비교평균급여 등 지급액)/ 비교평균급여 등 지급금액 ≥ 2.5% ii) (교육비-전기 교육비)/전기 교육비 ≥ 10%
		공제 한도: 법인세액의 20%	공제 한도: 법인세액의 20%

주: 3년 한시적인 우대조치이며, 표 내용 의미는 다음과 같음

1. 기준고용주급여 등 지급금액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 중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고용주급여 등 지급금액을 의미함(즉, 헤세이 25년 4월 1일 이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헤세이 24년도(개인사업자의 경우 2013년) 고용주급여 등 지급금액이 기준 고용주급여 등 지급액임)
2. 비교고용주급여 등 지급액은 적용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고용주급여 등 지급액을 의미함
3. 고용주급여 등 지급증가액은 적용 사업연도의 고용주급여 등 지급금액에서 기준고용주급여 등 지급금액을 뺀 금액임
4. 교육비는 국내 고용주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게 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교육, 훈련, 연수, 강습,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 IT 연계투자촉진 세액공제제도 신설

■ 「정보연계투자등의 촉진」에 관한 세제를 신설하고, 「혁신적 사업 활동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실현을 위한 임시조치법」(가칭)에 근거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 특별 상각 또는 세액공제 허용

- ▶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혁신적 사업 활동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실현을 위한 임시조치법(가칭)에 따라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적용함
  - 신설 또는 증설한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소프트웨어와 더불어 취득 또는 제작한 기계장치, 기구 비품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포함)이 5,000만엔 이상인 경우
- ▶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의 5%(평균급여 등 지급금액이 비교평균급여 등 지급금액 대비 3%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 선택 적용
- ▶ 법의 시행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 나) 중소기업 사업승계세제 확충

■ 10년 특례로서 유예대상 주식의 제한(총주식 수의 2/3)의 폐지, 납세유예비율의 인상

(80%에서 100%), 고용확보요건의 탄력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복수(최대 3명)의 후계자에 대한 상속·증여 대상을 확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면제도를 신설함

- ▶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사업승계 지원을 통한 감세 규모는 약 700억엔 정도로 전망함

#### 다) 고정사업장 정의의 재검토

■ 일본에 진출하는 외국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할 고정사업장 범위에 반복적으로 주요 역할을 하는 대리인도 포함하며, 동 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부터 적용됨

- ▶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해 그 사업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반복하여 주요 역할을 하는 자를 포함함

- ▶ 이러한 계약이 비거주자 등의 자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 해당됨
  - 대리인의 형식적 계약체결 행위 자체가 아닌 계약체결에 있어 항상 중요한 역할(대리인의 업무수행이 직접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포함

- ▶ 대리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기업만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독립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으로 봄
  - 독립대리인의 범위에서 전용 또는 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함

■ 현행법상 보관, 전시, 인도 기타 특정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 등은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았음

- ▶ 본 개정에 따라 그 활동이 비거주자 등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기능을 갖는 경우로 '준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시킴

### 3) 세목 신설

■ (국제관광여행객세) 납세의무자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해 출국 확인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출국하는 관광객 그 외의 사람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등을 제외) 국제관광객 등이며, 출국 1회당 1천엔을 부담

- ▶ 2020년 1월 7일부터 일본 출국 시 1인당(일본인도 포함) 1천엔을 부담하는 국제관광객세를 신설하여 약 400억 규모의 세수를 전망함

- (삼림환경세) 2024년부터 개인주민세 납세자는 주민세에 1인당 연간 1천엔을 추가하여 부담하는 삼림환경세를 신설하여 약 600억 규모의 세수를 전망

#### 4) 기타

- 일반 쉐련담배는 3회(2018년 10월, 2020년 10월, 2021년 10월)에 걸쳐 1개비당 1엔씩 총 3엔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표 III-4〉 일본의 쉐련담배 세율 개정

(단위: 엔, 천개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18년 10월 1일	2020년 10월 1일	2021년 10월 1일	
국세	5,302	5,802	6,302	6,802	
지방세	합계	6,122	6,622	7,122	7,622
	담배특별세	860	930	1,000	1,070
	담뱃세	5,262	5,692	6,122	6,552
합계	11,424	12,424	13,424	14,424	

- 가열식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세법에 정의 규정이 없었으나, 동 개정으로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그 제품 특성에 따른 과세방식으로 과세함

- 현행 가열식담배의 세율은 잎담배 포장 스틱 등의 중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일반 쉐련담배보다 세금부담수준이 낮고 담배 회사 제품마다 가열식담배의 중량 차이가 발생하므로 무게 이외에 소매가격도 감안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 쉐련담배의 70~90% 세율로 과세 결정

- 가열식담배의 흡연용구에 있어서, 가열을 통해 증기화되는 글리세린 및 기타 물품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충전된 것(일정한 사람이 제조한 것은 제외)은 제조담배라고 간주하여 담배세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제조담배는 가열식담배로 구분함 (간주 제조담배의 정비)

  - ▶ 종이로 말아피는 담배 개수 환산방법 개정: 가열식담배 과세표준은 다음 두 항에 따라 환산한 종이에 말아피는 담배 개수의 합계로 산정함<sup>183)</sup>
    - 가열식담배 중량에 근거한 환산방법에 사용하는 중량은 필터와 기타 일정 물품의 중량을 포함하지 않은 중량으로 하고, 당해 중량 0.4g을 가지고 종이에 말아피는 담배 0.5개로 환산함
    - 가열식담배의 소매정가에 근거한 환산방법을 도입하여 종이에 말아피는 담배 1개 당 평균소매가격을 가지고 가열식담배 소매가격을 종이에 말아피는 담배 0.5개로 환산함
- 일반 쉐련담배와 가열식 전자담배의 담뱃세를 인상하여 약 2,500억엔 규모의 세수 증대를 전망함

## 나.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 간소화 지침 발표

[조세동향 18-03호]

- 일본 국세청은 2018년 2월 23일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의 이전가격에 대한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sup>184)</sup>

  - ▶ BEPS Action 8-10의 권고에 따라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 제공 시 간소화 접근방법을 허용하고, 원가의 5% 이윤을 가산하여 거래하면 세무상 정상가격으로 인정함
  - ▶ 사례에 따르면 입증간소화제도는 무형자산 거래, 중요한 리스크를 포함한 거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광고, 금융, 보험이나 천연자원 채굴 등에는 적용할 수 없음

183) 현행 가열식담배의 세율은 잎담배 포장 스틱 등의 중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일반 쉐련담배 보다 세금부담수준이 낮고, 담배 회사 제품마다 가열식담배의 중량 차이가 발생하여 무게 이외에 소매 가격도 감안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 쉐련담배의 70~90% 세율로 과세함

184) Deloitte, "New release of the Transfer Pric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by the National Tax Agency," 2018. 3, <https://www2.deloitte.com/jp/en/pages/tax/articles/bt/japan-inbound-tax-legal-mar-2018-no27.html>, (검색일자: 2018. 3. 19.)

## 7 중국

### 가.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sup>185)</sup>

[조세동향 18-01호]

- 중국 재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고’를 2017년 12월 27일 발표함

  - ▶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의 연장 조치이며,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은 유지하면서 동 면제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함
  
- 취득세 면제대상은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임

  - ▶ 중국의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차량 가격이며, 세율은 10% 단일세율임<sup>186)</sup>
  - ▶ 2017년 한시적으로 배기량 1.6리터 이하 자동차의 취득세를 7.5%로 경감한 이후 2018년 1월 1일부터 10%를 징수하기로 함
  
-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차량 제품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점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sup>187)</sup>

  - ▶ 신에너지 차량의 생산과 수입 업체는 차량품질, 안전감시, 동력전지 재활용, A/S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전기주행거리 요구사항 충족, 30분간 승용차 최대속도 100km/h 이상 유지, 배터리 품질 일정 요건 이상 등

185) 재정부([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2/t20171227\\_2788817.html](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2/t20171227_2788817.html), 검색일자: 2018. 1. 11.)

186) 우리나라의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의 70(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의 40)으로 부과함

187) 국가세무총국(<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985330/content.html>, 검색일자: 2018. 1. 12.)

**나. 석유제품 소비세칙 개정<sup>188)</sup>**

[조세동향 18-02호]

-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소비세칙의 새로운 규정은 정유소와 석유제품 판매기업이 특별 세금계산 양식으로 거래를 보고하도록 개정됨

  - ▶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등을 거래하는 자 및 법인은 특정 세금양식으로 거래 보고를 함에 따라 세무당국이 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이르는 전체 거래를 감시할 수 있음<sup>189)</sup>
  - ▶ 재정부 등 정부기관은 동 소비세칙 개정으로 소비세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탈세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함
    - 개정 이전에는 정제소 등의 석유생산량 허위 신고, 혼합 배럴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을 통해 소비세를 회피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모든 정유판매 사업자는 새로운 증치세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되어야 함<sup>190)</sup>

  - ▶ 정유제품의 세금계산 양식에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코드를 제품별로 사용하며, 단위는 ‘톤’ 또는 ‘L’을 사용함
  - ▶ 기업은 세금계산 양식에 유종과 유량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증치세 인보이스에 기재된 용량은 석유 구매 및 수입 시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함

**다. 조세조약에 대한 해설 지침 발표**

[조세동향 18-03호]

- 중국 국가세무총국(State of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2018년 2월 9일 고정사업장 판정, 해외 파트너십과 파트너에 대한 혜택 적용, 국제선박 및 항공운송소득의 범위 등을 포함한 조세조약 해설 자료를 공시함<sup>191)</sup>

188) Tax notes, “SAT Updates Oil Product Consumption Tax Rules,” 2018. 1. 22.

189) 중국은 2009년 1월부터 석유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였음

190) 중국 국가세무총국(<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032924/content.html>, 검색일자: 2018. 2. 19.)

191) Tax Notes, “SAT Clarifies Foreign Partnerships’ Rights To Treaty Benefits,” TAX NOTES INTERNATIONAL

- ▶ 조세조약 해설자료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서비스 고정사업장의 판정 시 조세조약에 “12월 중 6월” 이상의 기간으로 기재된 경우도 “12월 중 18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해석함
  - ▶ 조세조약상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존재하면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규정에서 중국 과세당국은 6월을 183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 국제 선박 및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국제 선박 및 항공운송 소득에 포함되는 거래와 포함되지 않는 거래를 열거함
  - ▶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대하는 포괄임대,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국제운송소득으로 분류함
  - ▶ 반면, 나용선계약, 항공기나 선박만 임대하는 단순임대, 컨테이너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제운송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음
- 중국 내 설립된 파트너십의 비거주자인 파트너나 해외 파트너십에 투자한 비거주자인 파트너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 중국 내 설립된 파트너십의 비거주자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중국 원천소득에 대해 거주국과 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반면, 중국 거주자가 해외에 설립된 파트너십의 비거주자인 파트너와 거래 시 일정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해당 파트너는 중국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요건은 중국과 해당 파트너의 거주국 간 조세조약에서 파트너십이 도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파트너가 해당 파트너십과 동일 국가에 소재하고 조세조약상 거주자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중국-프랑스 조세조약을 포함한 소수의 조세조약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

**라. 2018년 조세부문 정책방향**

[조세동향 18-04호]

- 2018년 중국 양회<sup>192)</sup>에서 조세부문의 주요과제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를 통한 실물 경제 활성화라고 밝힘<sup>193)</sup>

  - ▶ 2018년 양회는 3월 5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됨
  - ▶ 조세부문의 정책방향을 포함한 정부업무보고(the Report on the Work of the Government)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 규모는 800십억위안 이상으로 예상됨
- 양회에서 구체적인 세법개정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문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는 세율과 체계의 점진적인 조정, 제조업과 운송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을 조정할 방침임
  - ▶ 소득세 부문에서는 특히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장비 등에 대한 사업 관련 비용의 공제액을 인상할 방침임
- 한편, 3월 25일 신규 임명된 재무부 장관은 향후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공제와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힘<sup>194)</sup>

  - ▶ 제조 및 운송부문의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포함해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조정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 개인소득세 부문에서는 중증질환이나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192) 중국의 양회는 입법과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3월 개최하는 회의로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출처: 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2018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시진핑 체제 전망』, 2018. 4. 16.)

193) Xinhua News Agency's the official Chinese version of the report, "the Report on the Work of the Government,"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NPC2018\\_GovtWorkReport\\_English.pdf](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NPC2018_GovtWorkReport_English.pdf), 및 PwC China, "The Chinese leadership gets ready to implement its grand plan for 2018 and beyond," 2018. 4, <https://www.pwccn.com/en/research-and-insights/chinese-leadership-grand-plan-2018-and-beyond.html>, (검색일자: 2018. 4. 23.)

194) Tax Notes, "New Finance Minister Stresses Tax Optimization, Reform," TAX NOTES INTERNATIONAL, Vol. 90, No. 2, 2018. 4. 2, p. 257.

- ▶ 그 밖에 중국 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와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 양회 직후 국가세무총국이나 재무부가 일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일부 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등을 결정함
  - ▶ 중국은 2016년 5월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 있음
- 4월 4일 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제조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1%p 인하한다고 밝힘<sup>195)</sup>
  - ▶ 유무형자산의 수입, 고도기술 제조업과 전기사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7%에서 16%로 인하됨
  - ▶ 농업 생산물, 운송, 우편, 텔레커뮤니케이션, 건설용역과 토지사용권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1%에서 10%로 인하됨
  - ▶ 개정된 부가가치세율은 5월 1일부터 적용됨
- 부가가치세 간이신고가 허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조정함
  - ▶ 현행 간이신고가 허용되는 매출액이 제조업의 경우 50만위안, 비제조업의 경우 80만 위안 이하에서 모든 업종에 대해 50만위안으로 조정함
  - ▶ 개정된 규정은 5월 1일부터 적용됨
- 3월 28일 직접회로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는 법안을 승인함<sup>196)</sup>
  - ▶ 중국에서 65나노미터 이하인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업은 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가 면세됨
    - 개정 법안은 2018년 3월 28일 승인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부터 적용됨

195) Tax Notes, "VAT Rates Drop for Several Sector," TAX NOTES INTERNATIONAL, Vol. 90, No. 4, 2018. 4, 16, pp. 478-479.

196) Tax Notes, "Tax Rates Drop for Integrated Circuit Manufacturers," TAX NOTES INTERNATIONAL, Vol. 90, No. 3, 2018. 4, 9, p. 350.

- ▶ 한편, 반도체 생산을 위해 130나노미터 이하인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기업은 7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함
  - 2년 동안 법인세를 면세하고 이후 5년 동안 법인세율을 50% 인하함
- ▶ 1월 1일 이후 설립된 직접회로를 생산하는 기업 중 집적회로의 라인 넓이가 0.8마이크론 이하인 경우 5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함
  - 이익이 발생한 2년 동안 법인세를 면세하고 이후 3년 동안 12.5%의 법인세율로 과세함
- 한편, 중국에서 고도기술을 수반한 일반약품(generic drug)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0%p 감면하여 15%의 세율<sup>197)</sup>로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함<sup>198)</sup>
  - ▶ 건강유지비용 지출액을 절감하고 일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 ▶ 다만, 납세자가 사전에 고도기술 기업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됨

#### 마. 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 시행

[조세동향 18-05호]

- 중국 정부는 양회 직후인 2018년 3월부터 다양한 조세감면제도를 소개<sup>199)</sup>하고 있으며,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은 4월 25일에는 기업혁신과 고용창출을 위해 소기업에 60백억위안(95억달러) 규모의 조세감면을 시행하기로 결정함<sup>200)</sup>
  - ▶ 저세율 등의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소기업에 대한 과세소득 기준점을 5십만위안에서 1백만위안으로 인상하여 소기업 대상 기업을 확대함
    - 중국은 소기업에 현행 25%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소기업 과세소득의 50%를 비과세하고 있음

197) 현행 법인세법상 중국의 법인세율은 25%임

198) Tax Notes, "Tax Rates Drop for Integrated Circuit Manufacturers," TAX NOTES INTERNATIONAL, Vol. 90, No. 3, 2018. 4. 9, p. 351.

199)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18-04, '중국 2018년 조세부문 정책방향', 2018. 5. 4,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중국-2018년-조세부문-정책방향/525385](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중국-2018년-조세부문-정책방향/525385), (검색일자: 2018. 5. 28.)

200) Tax Notes, "Small Businesses Win \$9.5 Billion in Tax Break," TAX NOTES INTERNATIONAL, Vol. 90, No. 6, 2018. 4. 30, p. 666.

- ▶ 연구개발용 기계와 장비의 취득가액을 취득시점에 즉시상각하여 비용으로 공제하는 한도를 현행 1백만위안에서 5백만위안으로 인상함
- ▶ 이번 결정된 감면제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그 밖에 해외 연구개발 지출액을 추가적인 세액공제와 고도기술 기업 등에 대한 자본손실의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시행할 예정임
- ▶ 중국은 연구개발 지출액의 15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제대상에 해외 연구개발 지출액을 추가함

#### 바. 보복관세 대상 품목 확정 및 부과 예정일 발표

[조세동향 18-06호]

- 2018년 6월 15일 미국 정부는 25%의 세율로 중국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품목을 확정하였으며, 보복관세는 중국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된 품목 등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부과될 예정임<sup>201)</sup>
- ▶ 미국은 중국산 기계, 자동차와 전자 등 818개 품목<sup>202)</sup>을 확정하고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25%의 세율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 관세부과가 확정된 수입물품의 규모는 34십억달러 규모임
- ▶ 한편, 미국은 추가 보복관세 부과대상에 반도체 생산장비, 전자제품, 차량과 의료기기 등 284개 품목<sup>203)</sup>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201) 백악관, "Statement by the President Regarding Trade with China,"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president-regarding-trade-china/?utm\\_source=link](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president-regarding-trade-china/?utm_source=link), (검색일자: 2018. 6. 18.);

미국 무역대표부, "USTR Issues Tariffs on Chinese Products in Response to Unfair Trade Practices,"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une/ustr-issues-tariffs-chinese-products>, (검색일자: 2018. 6. 18.);

CNN, <http://money.cnn.com/2018/05/30/news/economy/trump-china-us-tariffs-trade-timeline/index.html>, (검색일자: 2018. 6. 29.)

202) 2018년 4월 3일 발표한 품목에서 515개 품목을 제외함. 유기화합물(29류), 의료용품(30류), 각종화학공업생산물(38류), 철강(72류), 철강제품(73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76류), 각종비금속제품(83류), 시계(91류), 무기(93류)와 가구류와 조명기구(94류)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한 것임

203) 2018년 4월 3일 발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이며, 관련 품목은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27류), 비누,

- 검토 중인 품목의 수입 규모는 16십억달러에 상당하며, 미국은 2018년 7월 말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보복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와 수산물 등 545개 품목<sup>204)</sup>에 대해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25% 세율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동일하게 7월 6일부터 적용할 예정임<sup>205)</sup>

- ▶ 중국도 미국산 화학제품, 의료기기와 에너지제품 등 114개 품목을 보복관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 보복관세 부과가 확정된 미국산 수입품의 규모는 34십억달러이며, 현재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미국산 수입품의 규모는 16십억달러임

■ 미국과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논쟁은 2018년 3월 9일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됨

- ▶ 미국은 2018년 3월 9일 철강 수입에 25%의 세율로, 알루미늄 수입에 10%의 세율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중국이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반발함

■ 4월 2일 중국 정부는 미국산 과일, 견과류, 와인과 철제파이프와 같은 120가지 품목에 15%의 세율로, 재활용알루미늄과 돼지고기 등 여덟 가지 품목에 25%의 세율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 중국 정부는 보복관세 조치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대항한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은 4월 3일 중국산 항공우주, 기계와 제약 등 1,300개 품목<sup>206)</sup>에 대해 25%의 추가

계면활성제 및 왁스(34류), 각종화학공업생산품(38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39류), 유리(70류), 철강(73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76류), 보일러와 기계류(84류), 전기기기, TV, VTR(85류), 철도차량(86류), 일반차량(87류), 선박(89류)과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90류)에 속함

204) 중국이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수입 품목은 육과 식용설육(2류), 어패류(3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4류), 기타동물성생산물(5류), 채소(7류), 과일, 견과류(8류), 곡물(10류),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 전분(11류), 채유용종자, 인삼(12류), 기타식물성생산물(14류), 육류 및 어류 조제품(16류), 채소 및 과실의 조제품(20류), 음료, 주류와 식초(22류), 조제사료(23류), 담배(24류), 면 및 면사 면직물(52류), 일반차량(87류)에 속함

205) 중국 재무부,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 500亿美元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국무원 관세 관세위원회 50십억 달러 상당의 수입 상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발표),”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6/t20180616\\_2930325.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6/t20180616_2930325.html), (검색일자: 2018. 6. 29.)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다음날 중국 정부도 항공, 자동차뿐만 아니라 콩류와 화학약품 등을 포함한 106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 ▶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품목의 수입규모가 50십억달러에 상당하였음
- ▶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상대 국가의 행위, 정책, 법률 또는 관행이 무역협정의 조항에 위배되거나 불일치될 때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제301조 저축 여부를 판단하고 보복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국이 최근 기술이전,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취득과 혁신을 위해 시행한 행위와 정책과 법률이 불합리하고 미국에 차별적이라고 판단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미국은 5월 29일 보복관세 부과 외에도 중국 내 고도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8 호주

### 가. 중소기업 자본이득세 감면에 대한 개정 초안 발표<sup>207)</sup>

[조세동향 18-02호]

- 호주 재무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본이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개정 법안 초안을 2월 8일 발표함
  - ▶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총연간 매출액이 2백만호주달러 미만 또는 사업 자산이 6백만호주달러 미만 기업임
  - ▶ 매각 자산은 12개월 이상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함

206) 1,300가지 품목은 무기화합물(28류), 유기화합물(29류), 의약품(30류), 각종화학공업생산물(38류), 고무와 그 제품(40류), 철강(72류), 철강제품(73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76류), 각종비금속제품(83류), 보일러 및 기계류(84류), 전기기기, TV, VTR(85류), 철도차량(86류), 일반차량(87류), 항공기(88류), 선박(89류), 광학, 의료, 측정, 검사 및 정밀기기(90류), 시계(91류), 무기(93류), 가구류 및 조명기구(94류)에 속함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4/06/2018-07119/notice-of-determination-and-request-for-public-comment-concerning-proposed-determination-of-action>, (검색일자: 2018. 6. 29.)

207) 재무부(<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08-2018/>), 검색일자: 2018. 2. 12.)

- 새로 제안된 내용은 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통해 자본이득세 면제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 2017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자산에서 대기업 소유지분(ownership interests)을 자본이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나. 2018/19년의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8-05호]

- 2018년 5월 8일 호주 정부는 소득세 부담 경감, 공유경제활동 중 숙박공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개편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함<sup>208)</sup>
  - ▶ 소득세 측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됨
  - ▶ 법인세 측면에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개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해외 기반 온라인 숙박사이트를 통한 호주 내 숙박 예약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됨
  - ▶ 그 밖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TF팀에서 제안한 몇 가지 개선방안 등이 포함됨

### 1) 개인소득세

- 2018~2019 과세연도부터 2021~2022 과세연도까지 3년 동안 과세소득이 125,333호주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 세액공제(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 과세소득에 따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530달러까지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과세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액은 다음 표와 같음

208) 호주 정부, <https://www.budget.gov.au/>, (검색일자: 2018. 5. 21.)

〈표 III-5〉 호주의 저소득 및 중산층 세액공제

(단위: 호주달러)

과세소득	세액공제액
37,000 이하	200
37,000 ~ 48,000	$200 + 3\% \times (\text{과세소득} - 37,000)$
48,000 ~ 90,000	530
90,000 ~ 125,333	$530 - 1.5\% \times (\text{과세소득} - 90,000)$

- 2018년 7월 1일부터 2024년까지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함
  - ▶ 호주는 2018~2019 과세연도부터 4단계 누진세율(19.0%, 32.5%, 37.0%, 45.0%) 중 19.0%와 3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함
  - ▶ 이후 2024~2025 과세기간부터 37.0% 세율구간을 폐지하고 19.0%, 32.5%, 45.0%의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변경할 예정임

〈표 III-6〉 호주의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단위: 호주달러, %)

세율	현행 과세표준 구간	2018.7.1. 개시 과세기간부터	2022.7.1. 개시 과세기간부터	2024.7.1. 개시 과세기간 부터
비과세	0 ~ 18,200	0 ~ 18,200	0 ~ 18,200	0 ~ 18,200
19.0	18,201 ~ 37,000	18,201 ~ 37,000	18,201 ~ 41,000	18,201 ~ 41,000
32.5	37,001 ~ 87,000	37,001 ~ 90,000	41,001 ~ 120,000	41,001 ~ 200,000
37.0	87,001 ~ 180,000	90,001 ~ 180,000	120,001 ~ 180,000	-
45.0	180,000 ~	180,000 ~	180,000 ~	200,000 ~

- 2019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요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임
  - ▶ 정부는 장애인 의료지원(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을 위한 기금마련 목적에서 의료보험요율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2) 법인세

- 2026~2027 과세연도까지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27.5%에서 25.0%로 인하될 것임

  - ▶ 2018~2019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25백만호주달러에서 50백만호주달러로 인상하여 중소기업 대상을 확대함
  - ▶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27.5%의 세율을 2024~2025 과세연도부터 27.0%, 2025~2026 과세연도부터 26.0%, 2026~2027 과세연도부터 25.0%로 점차 인하할 방침임
    -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30.0%로 유지됨
  
- 연간 매출액이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소기업 지원을 위해 2만호주달러 이하 자산 구입에 대한 즉시상각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함

  - ▶ 일몰기한이 2018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장됨
  
- 연구개발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비율을 현행 38.5%와 43.5%의 고정비율에서 연구개발 활동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등 연구개발세액공제제도를 일부 수정함

  - ▶ 현행 세법상 연간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8.5%를, 연간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 이하인 기업은 43.5%를 세액공제 받음
    - 연간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 이하인 기업에 한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을 환급하며, 그 외 기업은 미공제된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이월하여 공제하고 환급은 허용되지 않음
  - ▶ 개정안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지출액/총지출액”의 비율을 4단계로 구분하고 세액공제율을 34.0%~42.5%까지 차등 적용함
    - 연구개발지출액의 공제가능 한도를 100백만호주달러에서 150백만호주달러로 인상함
  - ▶ 한편, 개정안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 이하인 기업이 환급받는 금액을 연간 4백만호주달러로 제한함

〈표 III-7〉 호주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개정안(2천만호주달러 초과 기업)

(단위: %)

연구개발지출액/총지출액 비율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0~2	34.0
2~5	36.5
5~10	39.0
10 초과	42.5

### 3) 국제조세

-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이자공제 제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 재평가를 허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자공제 제한금액을 계산하도록 제안함

  - ▶ 현행 세법상 호주는 부채와 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공제 제한금액을 계산하며, 이때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목적에서 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함
  
- 국가별보고서,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과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규정과 관련된 다국적기업그룹(significant global entity)의 범위를 확대함

  - ▶ 현행 세법상 다국적기업그룹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사기업이나 공기업 그룹에 속한 개별 기업을 의미하였으나, 펀드나 파트너십이 지배하는 기업그룹에 속한 개별 기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함
  - ▶ 개정안은 2018년 7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한편, 호주 재무부는 현재 호주 내 디지털상거래 기업의 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 중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 ▶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4) 부가가치세

- 해외 기반 온라인 숙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고객이 호주 내

숙박을 예약할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부여할 예정임

- ▶ 호주는 2017년 7월 1일부터 해외 사업자가 디지털재화나 용역을 호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연간 매출액이 75만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해외 사업자가 호주 내 간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함
- ▶ 이번 개정안은 간편사업자 등록대상에 온라인 숙박사이트를 통한 숙박 예약을 추가한 것으로 숙박공유 플랫폼 기업이 간편사업자 등록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 ▶ 2019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숙박 예약부터 적용될 것임

#### 5) 지하경제(black economy) 양성화

- 호주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에서 몇 가지 양성화방안을 제시함
  - ▶ 사업자에게 1만호주달러를 초과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전자적 결제 시스템이나 수표를 통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발표함
  - ▶ 2019년 7월 1일부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부터 적용됨
  - ▶ 다만,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자나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못한 하청업자 등에 지급한 대금을 과세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함
  - ▶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정부와 4백만호주달러(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함
  - ▶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기업이 부채를 갚지 않기 위해 회사를 부도처리한 후 새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phoenixing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환급을 제한하거나 이사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 ▶ 이사가 기업이 미납한 고급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나 일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포함함

-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세금환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권한을 강화함
- 불법 담배 수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담배에 관한 조세를 부담하는 시점을 담배가 호주 역내 수입되는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 현행 세법상 수입 담배에 대한 조세는 수입 담배가 보세창고 밖으로 이동되는 시점과 호주 담배 시장에 유입되는 시점임
  - ▶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그 밖에 국세청은 추가 예산을 받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원팀 구성, 세무 조사 강화, 데이터 분석 지원과 교육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임

## 9 홍콩

### 가. 2018/19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8-03호]

- 2018년 2월 28일 홍콩 정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sup>209)</sup>

#### 1)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4단계 누진세율에서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함
  - ▶ 현재 2%, 7%, 12%, 17%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2018/19 사업연도부터 2%, 6%, 10%, 14%, 17%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함

209) 홍콩 국세청, "2018~2019 Budget - Tax Measures," 2018. 2. 28, <https://www.ird.gov.hk/eng/tax/budget.htm#a01>, (검색일자: 2018. 3. 19.) 및 홍콩 정부, "Reducing Tax Burden on Individuals," 2018. 2. 28, <https://www.budget.gov.hk/2018/eng/rb.html>, (검색일자: 2018. 3. 19.)

- ▶ 현재 4만5천홍콩달러를 기준으로 세율이 변동하던 것을 2018/19 사업연도부터 5만 홍콩달러를 기준으로 세율이 변동하도록 세율구간을 확대함
- ▣ 소득공제 항목 중 자녀소득공제 금액과 노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장애인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 9세까지 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출생 시 20만홍콩달러에서 24만홍콩달러로 4만홍콩달러를 인상하였으며, 출생 이후부터 9세까지 현행 10만홍콩달러에서 12만홍콩달러로 2만홍콩달러 인상함
  - ▶ 노부모부양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9만2천홍콩달러에서 10만홍콩달러로 8천홍콩달러 인상함
    - 6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현행 4만6천홍콩달러에서 5만홍콩달러로 인상함
    - 6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나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소득공제액을 현행 4만6천홍콩달러에서 5만홍콩달러로 인상함
  - ▶ 납세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7만5천홍콩달러의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함

〈표 III-8〉 홍콩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홍콩달러, %)

개정 전		개정 후	
과세표준 구간	현행 세율	과세표준 구간	개정 세율
45,000 이하	2	50,000	2
45,000 ~ 90,000	7	50,000 ~ 100,000	6
90,000 ~ 135,000	12	100,000 ~ 150,000	10
135,000 초과	17	150,000 ~ 200,000	14
-	-	200,000 초과	17

## 2) 법인세

- ▣ 기업활동과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채무증권 중 면세대상 증권의 종류를 확대함

- ▶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할 목적에서 기업은 연구개발에 사용한 적격비용 중 2백만홍콩 달러의 비용은 300%까지 공제하고, 2백만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은 200%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됨
  - ▶ 면세대상 증권에 홍콩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채무증권을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면세 대상이 기존 만기가 7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에서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면세됨
- 환경보호 목적에서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일시 감가상각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전기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 규정의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함
- ▶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설비투자나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비용을 자산으로 계산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않고 지출한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공제함
  - ▶ 전기자동차, 전기삼륜자동차, 전기오토바이의 최초 취득 시 등록세를 면세하는 규정의 일몰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 나. 법인세율 인하

[조세동향 18-04호]

- 홍콩 정부는 16.5% 단일세율인 현행 법인세율을 8.25%와 16.5%의 2단계 누진 법인세율로 개정함<sup>210)</sup>
- ▶ 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이 200만홍콩달러 이하인 경우 8.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200만홍콩달러를 초과한 경우 현행과 동일한 16.5%로 과세함
  - ▶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성장 촉진과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임
- ▶ 소득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10) 홍콩 정부,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taxrates/profitsrates.htm> 및  
<https://www.legco.gov.hk/yr17-18/english/bills/b201712292.pdf>, (검색일자: 2018. 4. 23.)

- ▶ 기업의 기반시설, 직원 교육이나 신규 고용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 우수한 투자국으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 IV 기타

### 1 이스라엘 -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지침 마련

[조세동향 18-03호]

- 이스라엘 국세청은 2018년 2월 19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발표함<sup>211)212)</sup>

  - ▶ 가상통화를 현금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판단함
-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자본이득세로 과세되며, 사업목적용 갖고 거래한 가상통화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 ▶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자본이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 자본이득은 25%의 단일세율로, 사업소득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7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됨
- 사업목적상 거래되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sup>213)</sup>를 부과하며, 사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 특히 비트코인 채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중개인(dealer)으로, 가상통과 거래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으로 간주됨

211) Tax Notes, "Bitcoin Not a Currency for Purposes of Israeli Tax Law," TAX NOTES INTERNATIONAL, Vol. 89, No. 9, 2018. 2, 26, p. 851.

212) 이번 발표한 내용은 국세청의 해석이므로 법원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213) 17%의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임

## 2 아시아·태평양 국가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조세동향 18-04호]

- 일본,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한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서명함<sup>214)</sup>

  - ▶ 11개국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칠레,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캐나다임
  - 당초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2017년 초 불참 의사를 밝힘<sup>215)</sup>
  - ▶ 참여국은 GDP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13.5%(약 10조달러) 규모에 상당함
  
- CPTPP 다자간무역협정 참여국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95%까지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됨<sup>216)</sup>

  - ▶ 협정은 참여국의 환경보호, 반부패, 노동자 권익 등 주요 부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디지털거래와 중소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자동차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45% 역내가치함량 요건을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35%~45% 역내가치함량 요건을 적용하여 NAFTA보다 원산지 요건을 크게 완화함
  - NAFTA의 역내가치함량 요구량은 62.5%임
  - ▶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국은 협정 개시 후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할 예정이며, 대부분 국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전면 철폐할 예정임

214) OECD, "OECD welcomes CPTPP agreement," <http://www.oecd.org/trade/oecd-welcomes-cptpp-agreement.htm>, (검색일자: 2018. 4. 23.)

215) Reuters, "Asia-Pacific nations sign sweeping trade deal without U.S.," <https://www.reuters.com/article/us-trade-tpp/asia-pacific-nations-sign-sweeping-trade-deal-without-u-s-idUSKC N1GK0JM>, (검색일자: 2018. 4. 23.)

216) E&Y,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is signed,"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comprehensive-and-progressive-trans-pacific-partnership-agreement-is-signed>, (검색일자: 2018. 4. 23.)

-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데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함
- ▶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는 일정 기간 내 적게는 5%부터 50%까지의 관세만 철폐한다고 밝힘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1호

---

2018년 7월 23일 인쇄  
2018년 7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 유 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